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협약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주제별 해설서

환경

2025년 4월 15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5년 2월 28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X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Council of Europe/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5

목차

일러두기	8
제 1 조 인권 존중 의무	9
제 2 조 생명권.....	11
I. 산업 활동과 예견 가능한 자연재해	11
A. 적용 범위.....	11
B.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의 내용	14
1. 실체적 측면	15
a. 원칙	15
i. 예방 규정	15
ii. 구체적 조치와 판단재량.....	16
iii. 예견 가능한 자연재해.....	16
iv. 제 2 조 및 제 8 조.....	17
b. 사례	17
2. 절차적 측면	20
a. 실효적인 직권 조사 실시.....	21
b. 사법 절차	21
c. 사례	22
II. 간접 흡연	25
제 3 조 고문의 금지	26
제 5 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27
제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민사 영역)	28
I. 환경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절차	28
A. 제 6 조제 1 항(민사 영역)의 적용가능성	28
1. 제 6 조제 1 항 적용가능성에 관한 일반 원칙.....	29
a. 국내법상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	29
b. “실재하는 심각한” 분쟁	33

2. 청구인의 민사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분쟁	33
B. 환경 소송에서 제 6 조제 1 항 적용 사례	37
II. 환경소송에서 세력 균형	39
III. 환경보호조치에 대하여 개인이 제기한 소송	40
IV. 기타.....	40
제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 영역)	41
제 8 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41
I. 오염과 공해 또는 환경적 유해 요인에 노출됨.....	41
A. 적용가능성.....	43
1. 오염 및 공해 노출: 필수로 존재해야 하는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에 발생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	43
a. 직접적 영향.....	43
b. 심각성의 기준선	45
2. 환경위협 노출	48
3. 사례	49
4. 기후변화.....	52
5. 증명.....	53
a. 일반 원칙	53
b. 구체적 측면: 오염·생활상 방해 원인 간 인과관계의 증명 - 확률적 접근의 가능성	63
5.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기타 요소.....	63
B. 국가의 의무와 재판소의 감독	65
1.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65
2. 재판소의 감독	68
a. 일반적 고려사항.....	68
i. 실체적 측면	68
α. 소극적 의무: 공권력에 의한 제한	68
• 법으로 규정된 제한.....	69

• 정당한 목적.....	69
• 제한의 필요성.....	70
β. 적극적 의무: 보호 조치.....	71
• 일반 원칙.....	71
• “위해한 활동”에서 예방과 정보의 중요성.....	82
• 의사결정 과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우를 위한 정보.....	85
ii. 의사결정 과정.....	88
χ. 사전 조사와 연구.....	89
ii. 정보 접근권.....	90
iii. 재판 청구권.....	91
iv. 사례.....	91
b. 기후변화 관련 구체적 고려사항**.....	93
i. 판단재량.....	94
ii. 적극적 의무의 내용.....	94
α. 원칙.....	94
• 규정과 조치.....	94
• 의사결정 과정.....	95
β.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사건(§§ 555–573).....	95
II.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제 8 조상 권리의 제약.....	97
제 9 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99
제 10 조 표현의 자유.....	99
I. 환경운동 시위와 캠페인.....	100
II. 환경 주제에 관한 의견 표현: 강화된 보호 대상.....	100
III. 공공기관의 조치에 관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환경보호 단체의 특수한 역할 인정....	103
IV. 환경 사안에 관한 정보 접근권.....	103
A.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한정된 조건부 인정.....	103
B. 정보 제공의 내용과 품질을 심사할 수 있는 구제조치 접근권.....	105

V.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유는 표현의 자유 행사 제한의 적법한 근거인 정당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106
제 11 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107
I. 환경운동 시위	107
II. 결사의 자유와 환경	108
제 13 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110
제 14 조 차별 금지	111
제 1 의정서 제 1 조 재산의 보호.....	111
I. 환경적 사유에 따른 재산 존중권 제약.....	112
A. 환경 보전: 일반적 이익 또는 공익에 해당하는 사유	112
B. 확장된 판단재량	116
B. 재판소의 감독	116
II. 환경 피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	118
A. 직접적인 국가의 책임	119
1. 재산의 파괴 또는 훼손 - 사례	119
2. 가치 상실 - 사례	119
B. 재산 보호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불이행	121
1. 재산의 파괴 또는 훼손	122
a. 환경 재해로 인한 재산의 파괴 또는 훼손.....	122
i. 산업 유형의 환경 재해	122
ii. 예견 가능한 자연환경 재해	122
b. 민간 활동에 기인한 환경 훼손으로 발생한 재산 파괴 또는 훼손.....	124
2. 주변 환경 훼손으로 재산 가치 하락	124
협약 제 34 조 개인의 청구사건	125
I. 민중소송 / 피해자 지위	125
A. 일반 원칙	125
1. 직접피해자 - 환경보전단체의 청구인적격 사안	125

2. 잠재적 피해자: 환경 피해 위험 노출	128
B. 기후변화 맥락에서 적용되는 원칙	129
1. 개인	129
2. 단체: 피해자 지위 /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	131
II. 피해자 지위 상실	133
제 35 조 심리적격의 기준	136
A. 국내 구제절차 경로	137
B. 6개월 청구기간 - 계속되는 오염 상황	137
C. 인적 관할 - 다른 회원국의 법이 규율하는 기업이 가담한 환경 피해	138
D. 물적 관할 - 구체적인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 부재	138
E. 청구권의 남용	139
F. 중대한 피해 부재 - 주장된 위반의 심각성 기준선과 문제 된 상황의 환경적·공중보건적 영향	139
제 46 조 구속력 및 판결 집행	139
• 개인의 환경권을 언급한 판결	140
• 예방 원칙을 언급한 판결과 결정	141
• 환경문제에서 정보접근성, 대중의 의사결정참여, 사법접근성에 관한 협약(오르후스 협약)을 논거에 참조한 판결과 결정	141
인용 판례 목록	142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의 여러 조항에 따라 환경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조문별 판례 해설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청구된 개별 사건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년 1월 18일, § 154, Series A no. 25 및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o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2016년 7월 5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일반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2012,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더 최근 사건인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 15 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ęda v. Poland* [GC], no. 43572/18, § 324, 2022년 3월 15일).

*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가 선고한 판결과 결정 및 필요한 경우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과 보고서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재판소의 두 공용어)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결은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광의의 환경 보호와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원 지역과 산림, 멸종위기종, 생물 자원, 문화유산 또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은 ... 협약의 목적상 지금까지 ‘일반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여긴 목표에 포함된다. 협약 조항 중에서 특별히 환경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은 없지만, ... 이 분야에서 공공당국은 적기에 실제로 개입하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규정이 전적으로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인 지방자치단체 사냥꾼 협회 설립일에 이미 법적 지위가 인정된” 토지 소유자 협회와 그 이후에 설립된 토지 소유자 협회 간 대우 차별에 관한 권고적 의견 [GC], 요청 번호 P16-2021-002, § 80).

“... 재판소는 현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을 심리함에 있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존재한다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여러 징후가 있고, 기후 변화는 협약이 보장하는 인권의 향유에 현재에도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국가는 이 사실을 알고 실효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내로 제한하고 긴급히 조치하면 관련 위험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완화 노력으로는 후자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436).

제 1 조 인권 존중 의무

협약 제 1 조

“유럽인권협약당사국은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해 [본] 협약 제 1 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1. 협약 제 1 조에서 말하는 국가의 관할권은 주로 영토 관할권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재판소에 문제 삼은 사실관계는 피청구국의 영내에서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판소는 자국 영외에서 체약국이 행하거나 효과를 발생시킨 행위도 관할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1. 국가가 자국 영외의 일정 구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2. 자국 영외에서 국가 기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통제할 경우 3. 자국 영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 2 조상의 절차적 의무 불이행이 주장되는 상황에서, 해당 절차적 의무와 관련하여 그 국가와 관할권적 연계가 존재하는 경우 4. 사건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체약국이 자국 영외에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럽인권협약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를 참조한다.

2. 따라서, 개인의 협약상 권리나 자유가 환경훼손이나 환경 위협으로 침해되고, 그 원인이 거주국 영내가 아니라 타국 영내에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토성(領域性)의 원칙 적용에서 벗어나 제 2 의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 재판소는 여섯 명의 포르투갈 국적 청소년이, 기후변화로 이미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심각할 영향으로 인하여 협약 제 2 조, 제 3 조, 제 8 조 및 제 14 조가 보장하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포르투갈 외 32 개 당사국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사건에서 이 문제를 심리하였다(*Duarte Aghostinho and Others v. Portugal and 32 Others* (dec.) [GC], 2024). 재판소는 좀 더 국지적인 초국경적 환경 피해 상황에서 영외관할권 문제(§ 167)는 판단을 유보한 채, 청구인들이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도출한 청구인들이 포르투갈의 (영토) 관할권 안에 속한다는 점(§ 178; 또한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287 및 443 참조)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32 개 피청구국의 관할권에서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점에서, 재판소는 영토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청구인들의 상황이 상기 제 1 항에서 제시된 예외 유형에서 차례로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청구의 예외적인 사정에서, 피청구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또는 배출량 규제·제한 의무 불이행이 자국 영외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들 국가의 영외관할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이 맥락에서 강조한 기후 변화의 다음과 같은 측면을 인정하였다. 첫째, 국가는 자국 영내를 기반으로 한 공적·사적 활동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을 궁극적으로 통제한다. 둘째,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적이기는 하지만, 일국의 영내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적·사적 활동과 그 활동이 국경 밖, 즉 해당 국가의 민주적 절차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는 일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므로, 각국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전 지구적 과제에서 자기 몫의 책임을 지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에게 진정한 존재론적 성격을 갖는 사안으로, 다른 인과관계 상황과는 구별된다. 그럼에도 재판소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사법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영외관할권 근거를 창설하거나 기존 근거를 확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모든 주장을 검토한 끝에, 전반적으로 보아 협약에는 사법적 해석을 통해 피청구국들의 영외관할권을 청구인들이 요구한 방식으로 확장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Duarte Aghostinho and Others v. Portugal and 32 Others* (dec.) [GC], 2024, §§ 179–214).

제 2 조 생명권

협약 제 2 조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법에 의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을 행사한 결과인 때에는 본 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의 보호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주 방지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4. 제 2 조제 1 항 첫 번째 문장에서 도출되는,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생명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활동이라면 공적인 것이든 사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재판소는 환경 사건의 맥락, 즉, 1993년 4월 이스탄불 교외의 쓰레기장에서 메테인 가스가 폭발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저지대 빈민가 주택이 매몰되고 청구인의 가족 9 명을 포함하여 총 39 명이 목숨을 잃은 *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사건 § 71 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0;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58;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1; *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 170; *Istanbul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 31;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14;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376 참조).

I. 산업 활동과 예견 가능한 자연재해

A. 적용 범위

5.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는 본질적으로 위대한 산업 활동의 맥락에서 더욱더 적용된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71;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0);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58;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1).

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생활폐기물 매립장 운영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례가 유해 산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 문순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의 관리 방식(집중호우 시기 방류 포함)이 2001 년 8 월 광역도시 일부에 홍수를 야기한 경우(*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64)
- 1950 년대 말 크리스마스섬에서 영국 당국이 실시한 일련의 대기권 핵무기 실험 도중 군인들이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2, § 80 에 언급된 *L.C.B. v. United Kingdom*, 1998)
- 비료 공장에서 배출된 유독물질(*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80 에 언급된 *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 정부 소유·통제 공기업(*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81) 또는 민간 금속가공 회사(*Laterza and D'Errico v. Italy*, 2025, § 38)가 운영한 작업장에서 석면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경우
- 국가정보원의 비호 아래 복합 고체 로켓 연료를 비밀리에 생산한 경우(*Mučibabić v. Serbia*, 2016, §§ 126–127)
- 무기폐기 시설 관리(*Durdaj and Others v. Albania*, 2023, § 260).

생명 보호의 적극적 의무는 법률의 틀 밖에서 발생하는 오염 행위에도 적용된다. 그 대표적 사례로 캄파니아 지역의 사유지(일명 “불의 땅(Terra del Fuochi)”)에서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매립한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사건 §§ 384–392 에서 재판소는 특히, 이러한 행위가 인간의 생명에 위협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위대한 활동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국가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그 성격상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사건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인위적 기후변화로 무엇보다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열 관련 인명 피해가 늘어난다고 밝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패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였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08–510).

6. 생명권 보호 의무는 자연재해가 생명권을 위협하고 그 위해가 임박하며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7월 러시아에서 발생하여 사망자를 낸 산사태 사건(*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7 및 142)
-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즈밋(Izmit, 1999년) 및 반(Van, 2011년) 지역 지진 사건(*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 170–171; *Istanbu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 31;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14–115)

7.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에서도 제 2 조는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않았지만 분명 생명이 위협할 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51–155 및 191;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46).

다만, 생명의 위협은 정도가 “심각”하고(*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82), “현실적이고 즉각적”이며(*Fadeyeva v. Russia* (dec.), 2003; *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dec.), 2004),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작위 및/또는 부작위에 관한 주장인 경우라면 “현실적이고 임박”해야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1 및 513).

여기서 “현실적” 위협이란 생명에 대한 심각하고 실재하며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위협의 존재 요건에 대응한다. 이러한 위협의 “임박성”은 위협의 물리적 근접성(*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2) 및 시간적 근접성(*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377 및 390)을 모두 포함한다.

수년간 캄파니아 지역 사유지(일명 “불의 땅”)에 대규모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한 행위에 관한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사건 § 390 에서 심각하고 실재하며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재판소는 당국이 해당 오염 현상과 이를 야기한 행위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였다. 재판소는 국가 당국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며 불가피한 오염 현상의 영향권으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청구인들이 상당 기간 거주한 점을 이유로 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던 이상, 확인 가능한 특정 오염물질이나 심지어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것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질병의 발병 또는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결하였다.

8. 재판소는 청구인이 치명적인 위해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해당 시점에 당국이 알았거나 알아야 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101;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5–106;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378).
9. 위해한 활동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제 2 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이 영향을 받았다면 상황은 제 8 조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재판소는, 석면에 노출되었으나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개인들에 관한 사건에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84–85).

B.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의 내용

10. 특정 상황에서 국가 당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위협의 원인, 관련된 위협의 유형 및 해당 위협이 완화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394).
11. 제 2 조에서 도출되는 적극적 의무는 무엇보다도 형사법을 수단으로 삼아 생명권에 대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체계를 마련할 일차적 의무를 포함한다(*Öneryıldız and Others v. Turkey* [GC], 2004, §§ 89–90; *Istanbu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 32;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380; 다만, 이러한 일차적 의무는, 애초부터 특정한 예외적 상황에서 관련 법규가 없더라도 실무상 적극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소가 밝힌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사건 § 112 판결 참조).
12. 또한, 개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를 문책하며, 피해자를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법 제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Istanbu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 32;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26). 협약 제 2 조의 요건은 국내법상 마련된 보호 장치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해당 장치는 실무상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할 당국에 제기된 사건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심리하여야 한다(*Istanbu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 34;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51).

1. 실체적 측면

13. 재판소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의 생명이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L.C.B. v. United Kingdom*, 1998, § 36;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379).

a. 원칙

i. 예방 규정

14. 특히, 위대한 활동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생명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수준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해당 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야 한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90;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2;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58;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1).

이러한 예방 규정은 허가, 설치, 운용, 안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해야 하고, 내재적 위험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시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도록 구체적으로 조치하는 의무를 모든 관계자에게 부과해야 한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90;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2;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58;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1).

예방 규정은 특히, 공중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90 및 108;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2 및 §§ 152–155;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59, 177, 181–182 및 185;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1 및 113–114;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382), 자신이 노출된 위험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용된 여러 판결에 따르면, 유해 활동과 예견 가능한 자연재해 영역에서 이러한 정보 접근권은 치명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으므로 더욱 강화된다(*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454–48 참조; 또한, *L.C.B. v. United Kingdom*, 1998, §§ 38–41 참조).

15. 예방 규정에는 그 활동에 내재된 기술적 요인을 감안하여, 관련 과정 내 결함과 각급 책임자의 과오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도 있어야 한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90;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2;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59;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1).

16.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규정은 단순히 존재하고 적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 실제로 준수하여야 한다(*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 97).

ii. 구체적 조치와 판단재량

17. 구체적 조치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판단재량 범위에 속한다. 특히, 협약상 권리를 보장할 방법은 다양하므로, 국가가 국내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특정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적극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사회적·기술적으로 어려운 영역에서 넓은 판단재량을 누리므로, 특히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측면에서 당국이 내려야 하는 운용상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국에 불가능하거나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 107;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4-135;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60;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1;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381 및 396).

18. 피청구국이 제 2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평가할 때 재판소는, 특히 상충하는 협약상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 당국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국내법상 적법성, 국내 의사결정 과정(적절한 조사 및 연구 포함), 사안의 복잡성과 같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6;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61;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1).

iii. 예견 가능한 자연재해

19. 토사 붕괴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사건 § 137 에서 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여러 원칙이, 특정 사건의 상황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자연재해가 임박하였음을 알릴 때에 한해 특히 인간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개발한 특정 구역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관한 경우, 국가가 자연재해를 완화하여 인명 보호에 직접 관여하는 긴급구호 분야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상황에서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적극적 의무의 범위는 위협의 발생 원인과 각 위협이 어느 정도까지 완화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재판소는 기상현상과 관련된 긴급구호 분야에서 국가에 인정되는 판단재량의 범위를 특히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당국이 특히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측면에서 어떤 운영상의 결정을 내렸는지 여하를 막론하고 불가능하거나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논거는, 인위적인 성격의 위해한 활동 영역에서보다도 설득력이 커진다(*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5).

20. 지진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사건 § 128(또한, *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 173-174 참조)에서, 지진은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예견 가능한 자연의 위험에 대비하고 그 영향을 줄이도록 조치하여 재앙의 영향을 최소화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소는, 수단적 의무로 여전히 남아 있는 예방 의무의 범위는 지진 같은 자연현상의 예측 불가능하고 격렬한 성격에 대처하는 국가의 역량 강화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예방에는 적절한 국토 계획과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 포함되고, 건축허가를 발급하여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현지 당국은 위험 예방에서 최전선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예방과 내진 설계 규정 준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29-133). 이어 국가 당국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위해를 가능한 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감독과 점검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불만이 제기된 경우, 사법 당국은 관할 당국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민·현지 당국·전문가에게 지진 위험을 알리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진 대비 계획”을 비롯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때,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행해야 할 모든 사항을 규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과 위기관리 조치는 필요에 따라 각급 행정단위에서 사전에 마련된 재난 대응 및 구조 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iv. 제 2 조 및 제 8 조

21. 협약 제 2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의 범위는 제 8 조에 다른 적극적 의무의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사생활과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계획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 판례에서 발전된 여러 원칙은 생명권 보호에도 원용될 수 있다(*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3).

b. 사례

22. *L.C.B. v. United Kingdom*, 1998 사건에서 재판소는,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의 관점에서, 어린 시절 발병한 백혈병이 자신의 잉태 전 아버지가 영국의 핵실험으로 피폭된 사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여성의 주장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영국이 위원회의 청구 접수 권한을 인정한 1966년 1월 14일부터 청구인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1970년 10월 사이에 당국이 청구인의 부친이 방사선에 노출되었다고 우려할 만한 정보를 보유하고, 피폭으로 청구인의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였다면, 당국은 직권으로 청구인의 부모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건강을 점검해야 했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사건기록과 당시 당국이 보유한 관련 정보에 비추어, 당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청구인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해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2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3. *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사건 §§ 97-110 에서 재판소는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인 생활폐기물 매립지 운영과 무허가 거주 지역의 재개발·철거라는 두 가지 분야 모두 튀르키예에서 안전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튀르키예 당국은 쓰레기장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에게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다고 보았다. 특히 당국이 스스로 부지를 조성하고 그 운영을 승인하여 문제의 위험을 초래한 만큼, 협약 제 2 조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예방 및 운영상 조치를 할 적극적 의무가 당국에 있었다. 그러나 이스탄불 시의회는 위험을 인지한 후에도 필요한 만큼 긴급히 조치하지 않았고, 축적된 가스를 통제하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부지를 정상 기준에 맞게 조정하라는 총리실 환경국의 권고를 거부하였으며, 폐기물 수거장소의 임시 폐쇄 요청도 거절하였다. 당국은 또한 청구인과 그 가족이 수년간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도록 방치하였다. 재판소는 체약국에 판단재량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가스 추출 시스템을 적시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 자원을 과도하게 전용하거나 중대한 정책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튀르키예의 규정에도 해당 분야의 일반 관행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정부가 빈민가 주민에게 그들의 선택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었고, 생명에 가해지는 위험을 피하도록 실질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보 제공권을 존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폐기물 수거장의 개설·운영·감독과 관련된 규제 체계에 결함이 있고, 국가는 즉각적이며 알려진 위험에 노출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제 2 조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24.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사건 §§ 147-160 에서 재판소는 피해를 입은 마을이 산사태가 잦은 지역에 있었고,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전부터 지역 보호를 위한 방재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당국과 주민은 2000 년 여름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또, 전년도 여름에 관할 감시 기관이 강한 산사태로 손상된 방재 댐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통보하고 이류 발생 시 민간인을 신속히 대피시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등 당국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던 사실에서 2000 년의 진흙 사태가 평소보다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당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그런데도 당국은 안전·방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민에게 경고하지도 않았으며, 비상대피체계를 도입하거나 위험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재판소는 이렇게 유해한 지역에서 토지 계획 및 긴급구호 정책을 시행할 때, 주민이 치명적인 위험성에 노출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당국이 견지한 부작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재판소는, 정책 시행을 방해한 중대한 행정적 결함과 제 1 청구인의 남편 사망 및 제 1·제 2 청구인과 그 가족이 입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지하는 입법·행정 체계를 수립할 적극적 의무를 당국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25.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사건 § 161 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예방 조치 없이 수변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홍수 위험이 있는 도시 지역과 수변보호구역에 대한 용도지정을 금지하는 국내 법정 기준을 이행하지 않았고, 예방 및 비상조치를 채택하거나 물질을 유지·개수하거나 위험에 대해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당국이 청구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당국은 저수지 운영에 내재된 위험을 실효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저수지 인근 도시개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입법·행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둘째, 관계자가 해당 지역 주민을 적절히 보호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장려하는 일관된 감독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저수지에서 긴급 방류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질을 충분히 확보·유지하고, 비상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며, 저수지 운영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현지 주민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가 없었다. 셋째, 다양한 행정 당국의 주의를 환기한 위험이 인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정도로 당국끼리 서로 조정하고 협력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홍수 이후에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판결 선고일 시점까지도 저수지 인근 거주민의 생명은 계속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6.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사건 §§ 103-117 에서 재판소는 사건기록에 비추어, 문제 된 시점에 당국은 석면 노출로 발생한 피해를 이미 알았거나 알아야 했다고 보았다. 또한 제출된 정보에 따르면, 당시 법률이 석면 관련 활동의 운영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았고, 석면 노출의 본질적 위험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결함이 있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제한적이거나 법률이 보장하는 보호조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재판소는 국가가 고용주로서 취한 실질적 조치는 마스크 배포가 유일하였지만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고, 해당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일하는 동안 제공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수단 선택에 관한 판단재량은 국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입법 그 외 실질적으로 조치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중피종(中皮腫)으로 사망한 청구인과 관련하여 제 2 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7. 캄파니아 지역 사유지(일명 “불의 땅”)에 대규모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한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사건 §§ 394-468 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당국이 무엇보다 먼저 문제 된 오염 현상을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할 의무, 즉, 피해 지역과 해당 오염의 성질·정도 등을 확인한 뒤 평가에서 드러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당국이 이러한 오염 현상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동시에, 당국이 해당 오염 현상의 원인이 된 불법 투기·매립·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치하리라 기대하는 것도 당연하였다. 더 나아가, 당국은 오염 현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었다. 재판소는 실질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선택할 때 상당한 재량을 누릴 수 있다고 재확인하면서도, 문제 된 위협의 성격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당국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지 심사하는 것은 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당국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러한 위협의 성격과 심각성은 당국이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포괄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부연하였다. 재판소는 이같이 언급한 사항마다 국가의 결함을 지적하며 협약 제 2 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하였다.

2. 절차적 측면

28. 생명을 잃은 상황이 국가의 책임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 2 조는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사법적이든 그 외 무엇이든 적절한 대응을 보장할 의무를 수반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 및 행정 체계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권리 침해를 억제하며 침해하면 처벌하게 한다(*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 91;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38; *Smaltini v. Italy* (dec.), 2015, § 52; *Durdaj and Others v. Albania*, 2023, § 183).

29. **위해한 활동 및 예견 가능한 자연재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그러한 사건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복합적 현상을 규명하고 확정할 정도로 관련 지식이 있는 유일한 주체가 국가 당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법 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다만, 제 2 조 절차적 측면에 따른 청구와 관련하여 국내 구제절차 경로 요건을 심리하면서 공공당국만이 사망 경위를 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판소가 결정한 *Brincat and Others v. Malta* 판결, 2014, §§ 121-126 참조). 또한, 국가 당국이 부여받은 권한을 무시한 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해한 활동에

내재된 위험 방지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책임자가 형사범죄로 기소되거나 소추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구제조치와 무관하게, 제 2 조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93;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40 및 142;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90).

a. 실효적인 직권 조사 실시

30. 사법제도는 위대한 활동으로 생명을 잃은 경우, 그러한 결론이 조사 결과로 정당화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고 형사처벌을 확실히 부과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공식 조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관할 당국은 모범적인 성실성과 신속성을 발휘해야 하고,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첫째,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규제 체계의 운영상 결함을 규명하고, 둘째, 문제 된 일련의 사건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한 국가 공무원 또는 당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94;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42;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191;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21; *Smaltini v. Italy* (dec.), 2015, § 53; *Mučibabić v. Serbia*, 2016, § 125; *Durdaj and Others v. Albania*, 2023, § 187).

31. 이러한 조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생명권을 보호하는 국내법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 대리인이 관련된 사망 사건의 경우, 그 책임하에 발생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 188).

b. 사법 절차

32. 직권조사가 국내 법원에서의 소송 제기로 이어진 경우, 재판 단계를 포함한 소송 전체는 법을 통해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 의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95;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43; *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 190). 그렇다고 해서 제 2 조가 청구인에게 제 3 자를 형사범죄로 기소하거나 처벌하게 할 권리 또는 모든 기소가 유죄 판결이나 특정 형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96;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44; *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 187 및 190; *Istanbul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 41;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38). 반면, 국내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가 처벌되지 않은 채로 남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의 지배를 준수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관용이나 공모로 비칠 수 있는 어떠한 인상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 96;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45; *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 187). 따라서 재판소의 임무는 법원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제 2 조가 요구하는 면밀한 심사에 부쳤다고 볼 수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그렇게 했는지 검토하여 현행 사법제도의 억지력과 생명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맡은 역할의 중요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 96;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45; *Smaltini v. Italy* (dec.), 2015, § 54; *Durdaj and Others v. Albania*, 2023, § 212; 및 *Laterza and D’Errico v. Italy*, 2025, § 36).

33. 생명권 침해가 고의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실효적인 사법제도를 마련할 적극적 의무로 반드시 형사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체계가 피해자에게 민사법원에서의 구제조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단독으로 또는 형사법원에서의 구제조치와 병행하여 제공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인의 책임을 확정하고 손해배상 명령 같은 적절한 민사적 구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Istanbu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 33;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37 및 141; 및 *Laterza and D’Errico v. Italy*, 2025, § 39). 재판소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랐다(*Istanbu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 33;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37). 국가기관 소속된 자 또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가 관련된 경우, 징계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137).

c. 사례

34. *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사건 §§ 111–118 에서 재판소는 수사 당국이 사고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였고,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특정하였으며, 쓰레기장이 위치한 구의 구청장과 이스탄불 시장을 형사법원이 기소하였다고 하였다. 다만, 이들은 생명권 침해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상의 과실로 기소되었고, 그 결과 단지 9.70 유로에 해당하는 벌금형(집행유예)만 선고받아, 재판소는 이를 “터무니없이 적은(derisory)” 금액이라고 표현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비극에 대응하는 튀르키예 형사사법제도의 방식이 국가 공무원 또는 당국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 책임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형사법의 억지 기능을 포함하여 생명권 존중을 보장하는 국내법 규정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재판소는 위해한 활동의 운영으로 인한 치명적 사고와 관련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장래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유사한 행위를 억제하는 “법에 의한” 적절한 보호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협약 제 2 조의 절차적 측면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5.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사건 §§ 161-165 에서 재판소는 문제의 사고가 그 자체로 어떠한 사법 기관의 심리를 받거나 행정 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전무하였다는 이유로, 협약 제 2 조 절차적 측면의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6.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사건 §§ 194-203 에서 재판소는 예비 조사가 있었으나 관할 당국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하거나 책임자를 사법 절차에 회부하려는 특별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하천 유지관리 부실이 홍수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는데도 당국은 정식으로 노력하여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도시 계획과 관련한 현지 당국의 과실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37. 1999 년 이즈미트 지역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진에 관한 *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사건 §§ 192-200 에서, 붕괴된 건물 시공에 책임이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건설에 직접 관여한 일부 개인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청구인들은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총 다섯 명이 기소되었다. 그런데도 재판소는 재판 기간이 12 년으로, 사건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심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절차 진행 방식으로 인해 피고인 중 2 명만이 최종적으로 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3 명은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을 면하였다. 더 나아가, 국내법상 요구되는 사전 행정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붕괴 건물을 감독·점검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태만이 있을 수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동일한 지진과 관련된 *Istanbulu and Ayden v. Turkey* (dec.), 2015 사건 § 36-43 에서,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건물 잔해 속에서 친족들이 사망한 사건으로 개시된 형사절차의 진행 방식과 튀르키예 사법제도의 비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형사 절차는 건물 시공 책임이 있는 기술자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되었으나, 전자는 시공 결함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후자는 사법 당국의 신속성 결여로 인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장기간 아무런 절차적 조치를 하지 않아, 시행사의 범행 여부를, 형사절차를 통해 규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청구인 친족들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기존 민사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개시된 형사절차에 어떠한 결함이 있더라도, 국내법은 청구인들에게 친족들의 사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법제도를 제공하였고, 이는 협약 제 2 조가 요구하는 국가의 의무를 충족하므로, 이 청구는 명백히 근거 없다고 결론지었다.

2011 년 반 지역 지진에 관한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2023 사건 §§ 142-137 에서, 호텔 붕괴로 매몰된 일인의 가족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한 재판소는, 사건의 정황 아래 청구인 친척의 사망에 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보장하는 실효적인 사법제도를 마련할 피청구국의 의무에 맞는 구제조치가 국내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부여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해당하는 당국의 책임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게 해주는 구제조치를 청구인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튀르키예법상 이러한 구제조치는 완전한 관할권이 있는 행정법원에서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절차를 진행하였다. 행정법원은 환경·도시계획부와 반 지방자치당국이 호텔 건축사업과 시공을 적절하게 점검하지 않았고, 튀르키예 재난관리 공공기관도 필요한 만큼 재해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지난 지진 이후에도 시의적절하게 점검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은 청구인들에게 7 만 1,694 유로의 배상을 명하였고, 재판소는 이러한 구제가 사건 정황상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호텔 붕괴 며칠 뒤에 형사수사 개시 후 독립 전문가 보고서를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된 책임자가 호텔 운영자로 특정된 후 기소되어 사망을 초래한 고의적 과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형사법원은 특히 호텔 건물이 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호텔을 증축하여 건물 구조를 훼손하였으며, 1 차 지진으로 구조가 약해졌지만 호텔 운영자가 영업을 지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고의적 과실로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사법당국이 정식으로 심리하였고, 그 결과 형사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형사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어 여전히 계속 중이었지만, 수사과 재판을 신속·성실하게 진행할 국가의 의무를 감안하여도, 사실관계와 책임의 확정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형사법원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 없이 종결하려 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책임이 있다고 본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 실패가 사망 사건 관련 행정당국의 각자 책임 확정이나 이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8. *Smaltini v. Italy* (dec.), 2015 사건 §§ 56-61 에서 재판소 심리 도중 사망한 청구인은, 보건·환경에 미친 영향으로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유럽 최대 제철소가 위치한 타란토 (Taranto)에 거주하였다(또한,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참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게 된 청구인은 제철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원인이라고 보고, 대기 오염도 감시 및 공중보건·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실제 상해 혐의를 들어 해당 제철소 이사 중 한 명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오염과 청구인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협약 제 2 조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법원이 사건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그와 반대로, 제철소의 유해 배출물과 청구인의 질병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풀리아(Puglia)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와 사망원인에 관한 세 건의 보고서와 역학조사를 근거로 삼았고, 해당 자료에서 타란토의 백혈병 발병률이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당사자주의 절차의 이익을 누렸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향후 과학 연구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은 채, 당시의 과학적 지식 수준에 비추어, 피청구국이 협약 제 2 조의 절차적 측면에서 청구인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39. *Durdaj and Others v. Albania*, 2023 사건 §§ 183-238에서는 2008년 군사 무기 해체 시설에서 발생한 폭발로 26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다쳤다. 재판소는 폭발 직후 개시된 수사가 대체로 사건의 정황과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자 특정에 성공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으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접근이 허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결하였다. 이후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수사 종료 시 책임자로 특정된 개인들 중 아무도 최종적으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주된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가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그 판결에서 다수의 사망과 부상을 초래한 행위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이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자 협약 제 2 조에 따른 생명권 보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주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자유형과 실제 복역 기간(6년 7개월~10년 27일)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관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재판소는 첫째, 청구인들이 형사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이에 실효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점, 둘째,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형사절차가 사건 발생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일부 사안은 당국이 협약 제 2 조의 요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면책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절차적 측면에서 협약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II. 간접 흡연

40. *Botti v. Italy* (dec.),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2 조 및 제 8 조에 따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비흡연자인 청구인의 이익이 흡연을 계속하려는 타인의 이익과 충돌하였고, 국가 당국의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을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협약 제 2 조 및 제 8 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Aparicio Benito v. Spain (dec.), 2006 사건에서 한 수감자는 수용된 구치소의 공용 구역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내뿜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었다며 협약 제 2 조 위반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호흡기 질환과 담배 연기 흡입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독방에 수용되어 있었고, 청구가 제기된 지 7 개월 후 규정이 바뀌어 텔레비전 시청실만이 수감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유일한 공용 공간이 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건강 문제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협약 제 2 조 위반에 이를 만큼의 부정적인 영향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청구를 명백히 근거 없는 것으로 각하하였다.

제 3 조 고문의 금지

협약 제 3 조

“누구도 고문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41. 재판소는 개인이 노출된 오염이나 환경적 위해가 협약 제 3 조에 반하는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들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사건 중 다수에서 해당 조항 적용 요건인 심각성의 기준선(threshold of severity)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López Ostra v. Spain*, 1994, § 60; *Fadeyeva v. Russia* (dec.), 2003; *Ward v. United Kingdom* (dec.), 2004; *Ruano Morcuende v. Spain* (dec.), 2005;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30).

42. 다만, 이 맥락에서 수용 조건에 관한 판례는 검토해 볼만하다. 해당 판례에서 드러나는 바에 따르면, 수감자가 오염물질·환경적 위해 또는 오염된 교도소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협약 제 3 조의 관점에서 사건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요소이다.

43. 재판소는 다른 수감자들이 내뿜은 담배 연기에 노출된 수감자들과 관련하여 협약 제 3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된 거의 모든 사건에서 간접흡연은 과밀 수용, 비위생적 환경 등 다른 물리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었다(*Florea v. Romania*, 2010, § 50-65; *Pavalache*

v. Romania, 2011, §§ 87-101; *Vasilescu v. Belgium*, 2014, §§ 88-107; *Sylla and Nollomont v. Belgium*, 2017, §§ 35-42).

다만, *Elefteriadis v. Romania*, 2011 사건 §§ 46-55에서는, 폐섬유증을 앓고 있던 청구인이 다른 수감자들의 담배 연기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협약 제 3 조 위반이 인정되었다. 재판소는 특히, 국가는 교도소 제도를 수감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의학적 검사와 권고로 증명되는 건강 상태에 필요한 경우라면, 특정 수감자가 간접흡연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44. 나아가 *Plathey v. France*, 2011 사건 §§ 47-57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28일간 하루 23시간씩 수용된 징벌방은 수용 1주일 전 화재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심한 그을음 냄새가 났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협약 제 3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하였고 굴욕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제 5 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45. *Bryan and Others v. Russia*,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러시아 북극 지역에서 NGO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들이 석유 시추 플랫폼에 승선하려 하다 체포·구금되자 제 5 조제 1 항 위반(승인되지 않은 구금 후 불법 구금)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석탄 운송 화물선의 입항 차단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체포·구금된 *Friedrich and Others v. Poland*, 2024 사건에서 제 5 조제 1 항 위반 뿐만 아니라 제 5 조제 2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의 체포 이유 및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권리; 또한, 서커스 공연에서 동물 이용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체포된 활동가들이 경찰서에서 2~3 시간 구금된 사안을 두고 재판소가 제 5 조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한 *Bogay and Others v. Ukraine*, 2025 참조).

제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민사 영역)

I. 환경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절차

A. 제 6 조제 1 항(민사 영역)의 적용가능성

협약 제 6 조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소추의 결정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만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정의의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언론 또는 대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46.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분야에서도, 제 6 조제 1 항의 “민사” 영역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개연성 있는 근거에 따라, 국내법상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민사상 권리”(또는 “민사상 의무”)에 관한 분쟁(프랑스어 원문: “contestation”)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분쟁은 “실재하는 심각한” 분쟁이어야 하고, 권리의 실존뿐만 아니라 그 범위와 행사 방식과도 관련될 수 있다. 절차의 결과는 문제 된 권리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단순히 미약한 관련성이나 간접적 결과만으로는 제 6 조제 1 항을 적용할 수 없다(이러한 여러 원칙이 제시된 환경 관련 사건: *Zander v. Sweden*, 1993, § 22; *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 30;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 43; *Ünver v. Turkey* (dec.), 2000; *Lam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1; *Kyrtatou and Kyrtatos v. Greece* (dec.), 2001;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43;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30; *Okyay and Others v. Turkey*, 2005, § 64;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Folkman and Others v. Czech Republic* (dec.), 2006;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Czech Republic* (dec.), 2006; *Lorentzatou v. Greece* (dec.), 2010; *Zapletal v. Czech Republic* (dec.), 2010;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90;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 125; *Vecbaštika and Others v. Latvia* (dec.), 2019, § 65;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52; *Çoçelli and Others v. Türkiye*, 2022, § 42; *Cangı and Others v. Türkiye*, 2023, § 34;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95). 사건을 판단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의 성격과 해당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당국의 성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90).

47. 주된 귀결은 환경보호를 공익적 가치로서 목표하는 절차에는 제 6 조제 1 항 민사 영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판소는 다만, 환경단체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핵연료 공장 확장 허가령의 취소소송에 관한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사건에서, 이러한 기준은 협회가 해당 조항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 6 조제 1 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청구인 협회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접근은, 특히 환경보호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국내 당국이나 법원에 제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협회가 존재하는 오늘날의 시민사회 현실과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또한,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602 참조).

1. 제 6 조제 1 항 적용가능성에 관한 일반 원칙

a. 국내법상 인정되고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

48. 환경 관련 소송에 제 6 조제 1 항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로 국내법의 현황에 달려 있다.

49. 국내법은 개인에게 환경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31–133; *Okyay and Others v. Turkey*, 2005, § 65;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91; *Association Greenpeace France v. France* (dec.), 2011; *Cangı and Others v. Türkiye*, 2023, § 35), 그러한 권리의 한 측면(예: 건강·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다(*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57).

이러한 권리가 국내법상 존재하는 경우, 이는 제 6 조제 1 항의 목적상 “민사상” 권리일 가능성이 높다(*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33; *Okyay and Others v. Turkey*, 2005, §§ 66–67;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Folkman and Others v. Czech Republic* (dec.), 2006;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Czech Republic* (dec.), 2006;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91; *Association Greenpeace France v. France* (dec.), 2011;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57; *Efgan Çeti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33;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600).

사이안화 공정으로 운영하는 금광 인근 거주민들이 광산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법결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사건 § 133 에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면서 재판소는 문제 된 권리가 개인에게 채굴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자신의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튀르키예 헌법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권리가 튀르키예법상 인정된다고 추정하였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튀르키예법상 광산으로 인한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해당 권리의 민사적 성격에 관한 결론에서, 재판소는 광산 운영에서 사이안화 공정이 초래하는 위험의 정도를 국내 법원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증명하였다고 언급하고 청구인들의 신체적 온전성 보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Okay and Others v. Turkey*, 2005 사건 §§ 66–67 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노출된 개인들이 발전소 폐쇄를 명한 사법결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들은 튀르키예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균형 잡힌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근거로 삼았다. 재판소는 문제 된 권리에 민사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들의 신체의 온전성 보호가 문제 된 오염물질 노출로 인해 침해되었고, 또한 청구인들이 환경을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유리한 결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튀르키예 법원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환경단체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핵연료 공장 확장 허가령 취소소송에 관한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사건에서 문제 된 권리는 대중의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권이었다. 재판소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국내 법원에 이 권리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권리가 민사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50. 관련 권리가 생명, 신체적 온전성 또는 재산의 보호와 관련될 수도 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연방평의회가 발전소의 가동 허가기간을 연장한 결정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접근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사건 §§ 33-34 에서 재판소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근거로 삼은 권리는, 원자력에너지법 제 5 조제 1 항(원자력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대한 인가는 사람, 타인의 재산 및 중요한 권리 보호에 필요할 경우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헌법상 생명권에 근거하여, 원자력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에서 자신의 신체적 온전성을 적절하게 보호받을 권리라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비교할 만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국내 절차에서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생명권과 재산권을 존중받을 권리도 주장한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사건 § 44 에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판소는 헌법 및 이웃 간 권리를 규율하는 민법 조항을 포함하는 스위스 법제가 이러한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평하였다(또한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617 참조).

Zander v. Sweden, 1993 사건 § 27 에서, 가정·산업 폐기물 저장·처리 시설 인근 거주민들은 주거지에 위치한 우물이 사이안화물에 오염되자 국내법상 해당 시설의 운영허가 갱신 및 활동 확장을 승인하고 이미 명해진 예방조치를 기각한 행정결정을 법원에 회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요청이 우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우물이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의 한 측면과 직접 관련이 있었으며, 재산권은 제 6 조제 1 항의 의미상 명백히 “민사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댐 건설사업을 승인하는 장관령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사건 §§ 45-46 에서 재판소는 해당 절차가 공익의 방어뿐만 아니라 범람 예정지인 계곡에 거주하며 생활양식과 재산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구체적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절차에 “경제적”이고 민사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경제적 성격도 있는 권리 침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51. 사건은 청구인과 관련된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Kyrtatou and Kyrtatos v. Greece* (dec.), 2001). 특히, 민사권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를 자기 명의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46;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57); *TMMOB and Karakuş Candan v. Türkiye* (dec.), 2024, § 42).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또한,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참조) 사건에서 재판소는 환경 분야에서 국내법상 인정된 관련 정보 접근권과 의사결정 과정 참여권이라는 공적 권리를 환경단체가 자기 명의로 주장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비정부기구(NGO)는 법인격을 갖춘 시민사회 행위자로서 일반 대중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결론짓고, 프랑스가 당사국인 환경문제에서 정보접근성, 대중의 의사결정참여, 사법접근성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이 '일반 대중'의 정의에 '협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52. 재판소는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영향을 받는 회원과 현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단체가 제기한 절차에서, 문제 된 민사상 권리를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쟁점에 "유연하게" 접근하였다(*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실제로, 이러한 협회에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 된 절차가 해당 협회 회원이나 현지 주민의 민사상 권리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에서 도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사건 §§ 45-48 에서, 재판소가 심리한 국내 절차는 청구인 협회가 자기 명의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와도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국내 절차가 해당 협회 회원들(재판소 절차에서는 청구인이나 국내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아님)의 민사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실에서, 청구인 협회에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L'Erablière A.S.B.L. v. Belgium, 2009 사건 §§ 28-30 에서 청구인 협회는 기술 폐기물 매립지를 확장하는 도시·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협회 정관에 협회의 목적이 현지 차원의 환경 보호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모든 창립 회원과 임원이 문제 된 부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매립지 수용 능력 향상으로 일상생활의 질이 저해되고 재산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들어, 청구인협회가 제기한 분쟁이 협회가 자기 명의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 § 59 에서는 회원을 대신하여 실효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실현하려 설립된 고령 여성 협회와 네 명의 회원은, 해당 분야에서 스위스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연방행정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차례로 불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재판소는, 해당 협회의 소송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회원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위험을 근거로 하며, 기후변화 맥락에서 협회가 수행하는 특수한 역할을 고려할 때, 협회가 방어한 이익은 협회가 제기한 "분쟁"이 회원들의 문제 된 권리와 직접적으로 충분하게 관련된다고 하였다.

53. 환경 보호를 공익의 한 요소로만 다루는 분쟁은 협약 제 6 조제 1 항이 말하는 민사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TMMOB and Karakuş Candan v. Türkiye* (dec.), 2024, § 47). 다만, 환경에 관한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절차일지라도, 구체적인 민사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지을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45-47;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L'Erablière A.S.B.L. v. Belgium*, 2009, § 25; *Karin Andersson and Others v. Sweden*, 2014, § 46;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 128; *Stichting Landgoed Steenberghe and Others v. Netherlands*, 2021, § 30;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57;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615-616 및 633-634).

b. “실재하는 심각한” 분쟁

54. 원자력발전소 인근 거주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비추어 원전 운영 허가 기간 연장 결정의 합법성을 다투기 위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분쟁(프랑스어 원문: contestation)에 해당한다(*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 37;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 45-46).

55. 분쟁의 실재성과 심각성은, 예를 들어 관련 항소가 국내에서 심리적격으로 선언된 사실(*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 38;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 45; *Kyrtatou and Kyrtatos v. Greece* (dec.), 2001), 국내 법원에 제출된 청구 이유의 실질적 내용(*Association Greenpeace France v. France* (dec.), 2011;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59) 또는 항소를 각하하기 위하여 관할 당국이나 법관이 제시한 논거(*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 37-38;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 45;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59) 등에서 도출될 수 있다.

2. 청구인의 민사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분쟁

56. *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사건 §§ 39-40 에서 재판소는 연방평의회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연장 결정과,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신체적 온전성 보호권 간 관련성이 너무나 미약하고 간접적이어서 협약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발전소가동으로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무엇보다도 임박한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사건 §§ 49-55 에서도 유사하게 판단하였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청구인들이 소송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경제적 손실이나 그 외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고 평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협약 제 6 조제 1 항에서 원자력 이용의 원칙 자체를 다투기 위한 구제조치 또는 최소한 개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기술적 증거에 기초하여 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내리도록 책임을 이전하는 수단을 부당하게 도출하려 하였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원자력 이용을 가장 적절하게 규제하려면 체약국별로 자국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Folkman and Others v. Czech Republic* (dec.), 2006;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Czech Republic* (dec.), 2006 참조).

57. 재판소는 한 현지 주민이 공익적 차원에서 특히 해당 부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제기한 건축 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절차에 관한 *Ünver v. Turkey* (dec.), 2000 사건에서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소는 해당 절차에서 금전적 이해관계가 문제 된 적이 없고, 청구인이 국내 법원에서 문제 된 개발이 자신의 재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절차의 결과가 청구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지 않았다고 하였다.

58. *Zapletal v. Czech Republic* (dec.), 2010 사건에서, 금속 판을 압축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 인근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소음 공해가 발생하자 해당 공장 승인 결정의 합법성 심사를 구하는 국내 절차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를 통해 국내법상 인정된, 자신이 청구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보호하려 했음은 인정하였으나, 승인 절차가 이러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제 6 조제 1 항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공장의 건설과 운영 조건 및 소음 기준 준수 의무는 이미 이전 절차에서 확정되었고, 승인 절차는 그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은 승인 후 소음 공해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공식 승인 절차나 청구인이 제기한 절차 모두 문제 된 소음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59. 청구인의 주택에서 약 1 킬로미터 떨어진 구리광산에 속한 광미침전지(鑛尾沈澱池)로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운반하여 복토 작업의 일환으로 침전지를 메우게 한 허가 취소 소송에 관한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사건 §§ 89-96 및 주민들이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도시 계획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헌법재판소 상소에 관한 *Vecbaštika and*

Others v. Latvia (dec.), 2019 사건도 재판소가 “분쟁의 직접적인 결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여기서 언급해 불만하다.

60.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사건 § 59 에서, 여러 환경단체는 고준위 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을 심층 지질 처분시설에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시제오(Cigeo, 심지층 처분장)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국(ANDR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내법상 요구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해당 기관이 과실로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소는 이 절차가 여러 청구인 협회의 환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권 및 참여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61. *Cangı and Others v. Türkiye*, 2023 사건 §§ 36-37 에서, 청구인들은 행정법원에 금광에서 시안 침출법으로 금을 채굴하는 것과 관련된 환경 영향 연구를 승인한 장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그 절차의 결과가 금광 인근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소유한 청구인들에게 튀르키예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라는 “민사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것이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제 6 조제 1 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광산 인근에 거주하지 않고 광산 운영으로 직접적·개인적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리부적격으로 보아 각하하였다. 재판소는 제 6 조제 1 항의 적용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해당 지역 금광의 법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운동에 속해 환경을 보호하는 “공적 감시자(public watchdog)”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62. 따라서, 환경이 청구인의 권리에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 § 607 의 판결에서 보듯, 재판소는 해당 사안에 관한 분쟁이 제 6 조제 1 항의 적용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기후변화 맥락에서 제 6 조제 1 항 적용가능성

63. 재판소는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 § 608 에서, 위에서 실시한 여러 일반 원칙이 기후변화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사안의 특성에 따라 판례 적용 시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다.

64. 따라서 재판소는, 임박한 피해나 위해라는 개념을 기후변화 관련 위협의 특수성(돌이킬 수 없는 결과의 잠재성과 수반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중심으로 세 번째 기준(절차 결과가 청구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지” 여부)의 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한 후에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614). 향후 발생할 피해가 단순한 추측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현실적이고 매우 개연성이 높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피해가 엄격한 의미에서 임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절차 결과가 그 피해의 경감이나 방지에 결정적이지 않다고 결론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접근은 특히 협회가 제기하는 법적 소송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심각한 위험 중 상당수에 대해 법원에 접근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재판소는 또한, 기후변화 맥락에서 단체의 법적 소송은, 기후변화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특히 대표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사람들)의 협약상 권리를 수호하고, 이 분야에서 당국의 주장된 의무 불이행과 부작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이 사건에서, 회원을 대신하여 실효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실현하려 설립된 고령 여성 협회와 네 명의 회원은, 스위스가 이 분야에서 취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연방행정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차례로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재판소에서 청구인들은 법원에 접근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 협회가 제기한 범위 내에서 해당 청구에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된다고 결론지었다(§§ 621-623). 재판소는 해당 협회가 문제 된 사안과도 기후변화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보호를 모색하는 개인들과도 실제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였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구체적인 민사상 권리를 옹호하려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단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기존 법률에 따른 완화조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수단이 되는 활동을 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환경보호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의를 옹호하려 협회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과 재판소 판례에서 이미 확인된 점 및 기후변화의 결과가 특정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단행동이 특별히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재판소는 나아가, 분쟁이 이러한 집단적 성격을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결과라는 요건이 국내법상 회원들의 민사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당국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일종의 시정을 구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반면,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 협회의 회원이자 개별 청구인이기도 한 네 명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범위 내에서는, 당국이 요청한 대로 기존 국내법에 따른 완화조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기후변화 맥락에서 청구인들의 개인 권리에 대해 임박하고 확실한 효과를 냈으리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624).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분쟁이 국내법에 의거한 그들의 권리에 연관성이

미약하거나 결과가 간접적이므로 분쟁의 결과는 그들의 민사상 권리를 직접적으로 결정짓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B. 환경 소송에서 제 6 조제 1 항 적용 사례

65. 재판소가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청구의 본안 심리를 한 환경 사건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이웃 소음에 관한 소송 절차의 기간(*Ekholm v. Finland*, 2007, §§ 92–66)
- 쓰레기 매립장 운영 허가 또는 확장 허가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다룰 권리(*Zander v. Sweden*, 1993, § 29; *L’Erablière A.S.B.L. v. Belgium*, 2009, §§ 35–44), 철도 건설 허가(*Karin Andersson and Others v. Sweden*, 2014, §§ 68–70) 또는 지열발전소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행정결정(*Efgan Çetin and Others v. Türkiye*, 2023)
- 오염사업 설치를 부주의하게 허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현지 당국(*Lam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1),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사기업 고용주 및 보험기금(*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2014, §§ 70–80) 청구인의 재산에 해를 가한 폭발 사건 책임 주체인 정유공장(*Kurşun v. Turkey*, 2018, §§ 93–105)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권리
-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국내법상 요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단체의 재판청구권(*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64–72)
-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불충분성을 다루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핵무기 대기권 실험 중 방사선에 노출된 군인들이 재해보상연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사건 증명에 필요한 정부 보유 문서 접근권(*McGinley and Egan v. United Kingdom*, 1998, §§ 85–90 및 99)
- 이웃 소음에 관한 판결의 집행 의무 또는 집행 보장 의무(*Ekholm v. Finland*, 2007, §§ 72–75; *Apanasewicz v. Poland*, 2011, §§ 72–83)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결정의 집행 의무 또는 집행 보장 의무로, 예를 들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폐쇄를 명령한 결정(*Okyay and Others v. Turkey*, 2005, §§ 72–75), 전분 공장 건설·운영 허가 행정결정의 무효화(*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 133–145) 또는 사이안화 공정으로 운영되며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금광의 건설·운영을 허가한 행정결정 무효화(*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35-138; *Lemke v. Turkey*, 2007, §§ 51-53; *Genç and Demirgan v. Turkey*, 2017, §§ 45-46), 환경에 유해한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결정(*Kyrtatos v. Greece*, 2003, §§ 30-32) 또는 전자기파가 대중 노출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인근에 설치된 통신 안테나 철거 명령 결정(*Iera Moni Profitou Iliou Thiras v. Greece*, 2005, §§ 34-38)

- 체르노빌 원전사고 현장 긴급 구조 활동 참여 후 지급된 수당·추가 보상금을 인정한 확정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연장·기간 도과 항소 허용 사건의 맥락에서 법적 확실성 원칙 준수(*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2017, §§ 86-101)
- 시멘트 공장 두 곳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승인한 행정결정을 다투는 소송 절차의 맥락에서, 환경위험평가를 위해 임명된 전문가의 중립성(*Çöçelli and Others v. Türkiye*, 2022, §§ 57-64)
- 광산에서 시안침출법을 이용한 금 채굴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장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현지 주민들의 청구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보고서에 대한 당사자주의 심리 과정에 현지 주민 참여(*Cangi and Others v. Türkiye*, 2023, §§ 43-56).

66. 전자파 대중 노출 안전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인근에 설치된 전기통신 안테나의 철거를 명한 사법적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Iera Moni Profitou Iliou Thiras v. Greece* 2005 사건 § 38 에서 재판소는 사건의 환경적 측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자연·문화 환경 보존 관련 문제 된 쟁점”을 고려하여 협약 제 6 조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67.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 §§ 635-638 에서 재판소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문제의 긴급성을 고려하였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 법원은, 회원을 대신하여 실효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실현하려 설립된 고령 여성 협회가 일부 회원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스위스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심리부적격으로 각하하였다. 국내 법원은, 청구인들의 권리가 문제 된 부작위로 침해되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연방행정절차법 제 25a 조: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식 결정에 의하지 않는 연방 공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판단을 구할 자격 규정), 이들의 청구는 민중소송적 성격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지구 온난화가 임계치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국내 법원의 판단에 설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 결론이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가 아니며, 기후변화가 인권의 다양한 측면에 가하는 현재의 영향과 불가피한 미래의 영향은 긴급한 문제라는 일반적 인식 또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는 문제의 긴급성에 관한 기존의 증거와 과학적 연구 결과가, 그

불가피성과 비가역성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당국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 조치와 관련해 인권의 법적 보호를 보장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부연하였다. 나아가 국내 법원이 청구인 협회의 청구인 적격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그 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전혀 또는 진지하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청구권이 그러한 방식과 정도로 제한되어 권리의 본질적 내용 자체가 침해되었으므로 협약 제 6 조제 1 항이 위반되었다고 판결하였다.

II. 환경소송에서 세력 균형

68. *Steel and Morris v. United Kingdom*, 2005 사건 §§ 59-72 및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2007 사건 §§ 13-16 에서 재판소는 환경보호 단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민사” 소송 절차상의 불균형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이 한 패스트푸드 회사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농업 관행과 산림 파괴에 일조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하였다. 회사는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제소하였고, 장기간의 소송 끝에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환경운동가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어 국선변호 지원을 신청하였다. 신청이 각하되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구조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이 법정에서 사건을 실효적으로 다룰 기회를 박탈하였고, 원고 회사와의 용인될 수 없는 무기대응의 불균형에 일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환경단체와 생태주의 정당이 핵연료 공장 확장 허가령의 무효확인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였다. 협회는 공장을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도록 허용된 것에 대해 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두 명의 상대방(국가와 다국적 기업)을 동시에 상대하게 되어 당사자 간 공정한 균형이 무너졌고, 특히 회사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명령이 이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이처럼 “두 거대 세력(국가와 다국적 기업)을 동시에 상대”하게 된 점만으로도 공동의 주장을 제기하기에는 명백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결정하였다. 이어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재정적 자원이 제한된 청구인 협회에 부유한 다국적 기업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 공정하다고 본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재판소는 법원이 약자인 청구인 협회를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경 보호 같은 대의를 법정에서 옹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비정부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의 일환인데도 향후 이러한 법정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단념하게 하는 조치까지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협약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본 사안에서는 특히 청구인 협회가 비용 지급 명령에 대하여 다룰 수 있었고, 국내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협회의 제한된 재정 능력을 고려한 정황이 존재하며, 그 액수도 소액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그러한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III. 환경보호조치에 대하여 개인이 제기한 소송

69.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 같은 민사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협약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누릴 수 있다(*De Geouffre de la Pradelle v. France*, 1992, §§ 27-35; *Posti and Rahko v. Finland*, 2002, §§ 52-66; *Geffre v. France* (dec.), 2003; *Alatulkkila and Others v. Finland*, 2005, §§ 49-54; *De Mortemart v. France* (dec.), 2017; *Saksoburggotski and Chrobok v. Bulgaria*, 2021, §§ 271-275; 또한, 국립공원 설립과 관련하여, 협약은 일반적 정책결정을 다루기 위한 재판청구권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재판소가 지정한 *CRASH 2000 OOD and Others v. Bulgaria* (dec.), 2013 사건의 결정 참조).

IV. 기타

70. *Dimopoulos v. Turkey*, 2019 사건 § 39 에서 청구인은 “자연보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국내 법원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청구 이후 발효된 법률에 따라 자연보전구역은 더 이상 점유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는 계류 중인 절차에 새로운 법률의 소급 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반의 이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그럼에도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제 6 조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제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 영역)

71. *European Air Transport Leipzig GmbH v. Belgium*, 202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회사가 항공기 소음 규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과된 행정벌 관련 절차에 형사 영역에서 제 6 조제 1 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제 8 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협약 제 8 조약

-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공권력은 국가 안보,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위해, 무질서 또는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I. 오염과 공해 또는 환경적 유해 요인에 노출됨

72. 환경 관련 판례법은 상당 부분, *López Ostra v. Spain*, 1994 사건에서 재판소가 심각한 환경오염이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의 향유를 방해하여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판단에 근거하여 발전하였고(*López Ostra v. Spain*, 1994, § 51; 또한 *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 60; *Gronuś v. Poland* (dec.), 1999; *Băcilă v. Romania*, 2010, § 59; *Sciavilla v. Italy* (dec.), 2000; *Kyrtatos v. Greece*, 2003, § 52;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3; *Botti v. Italy* (dec.), 2004; *Fågerskiöld v. Sweden* (dec.), 2008; *Furlepa v. Poland* (dec.), 2008;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Frankowski and Others v. Poland* (dec.),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36;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04; *Dzemyuk v. Ukraine*, 2014, § 88;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57;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2;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2 참조), 환경오염이 건강을 위협하게 한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López Ostra v. Spain*, 1994,

§ 51; 또한 *Sciavilla v. Italy* (dec.), 2000; *Botti v. Italy* (dec.), 2004; *Kyrtatos v. Greece*, 2003, § 52;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3;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Furlepa v. Poland* (dec.), 2008;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Băcilă v. Romania*, 2010, §§ 63–64;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Frankowski and Others v. Poland* (dec.),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36; *Dzemyuk v. Ukraine*, 2014, § 88;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2;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2019, § 91;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2);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9;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0;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7 참조).

73. 따라서 협약은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소음이나 다른 형태의 오염 또는 공해로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제 8 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96;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Furlepa v. Poland* (dec.), 2008; *Tătar v. Romania*, 2009, § 86;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Oluić v. Croatia*, 2010, § 45; *Leon and Agnieszka Kania v. Poland*, 2009, § 98; *Apanasewicz v. Poland*, 2011, § 94;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Frankowski and Others v. Poland* (dec.),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36;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3; *Udovičić v. Croatia*, 2014, § 137;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 18;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2; *Kožul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 31;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2019, § 91; *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2020, § 22;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2); *Kapa and Others v. Poland*, § 149, 2021; *Thibaut v. France* (dec.), 2022, § 38).

특히 소음, 배출물, 악취 또는 기타 제한 요인처럼 구체적이거나 물리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과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단순히 실제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그 공간을 평온하게 향유할 권리까지 포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reno Gómez v. Spain*, 2004; *Luginbühl v. Switzerland* (dec.), 2006; *Wałkuska v. Poland* (dec.), 2008; *Oluić v. Croatia*, 2010, § 44; *Deés v. Hungary*, 2010, § 21; *Apanasewicz v. Poland*, 2011, § 93;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 40;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3); *Kapa and Others v. Poland*, § 148, 2021;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6).

A. 적용가능성

74.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환경사건(*Solyanik v. Russia*, 2022, §§ 39-45)에서도,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제 8 조의 적용가능성을 물적관할권의 심리적격 사안으로 대한다. -다만, 제 8 조 적용가능성 요건을 맞추지 못한 청구는 명백히 근거 없는 것으로 심리부적격이라 판단한 바도 있다(예를 들어, *Calancea and Others v. Republic of Moldova* (dec.), 2018, §§ 27-33 및 *Thibaut v. France* (dec.), 2022, §§ 38-48 참조).

75. 문제 된 오염원의 거리도 고려해야 할 관련 요소이지만, 청구인이 오염원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제 8 조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3-66).

1. 오염 및 공해 노출: 필수로 존재해야 하는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에 발생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

76. 제 8 조를 적용하려면 청구인이 ① 문제 된 환경적 상황으로 사적 영역이 실제로 제한되었고, ② 그 제한이 일정한 최소 수준의 심각성에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2020, § 29;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1;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01;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5).

a. 직접적 영향

77. 재판소는 오늘날 사회는 환경 보호를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제 8 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재판소는 협약에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96), 제 8 조뿐만 아니라 그 외 조항도 환경 그 자체를 전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 아니며(*Kyrtatos v. Greece*, 2003, § 52), 자연 보존에 관한 권리 역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Fadeyeva v. Russia*, 2005, § 68;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66). 이 문맥에서, 제 8 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문제 된 환경 공해와 청구인의 주거,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 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존재할 경우에만 작동한다(*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66). 다시 말해, 제 8 조상 문제를 제기하려면 환경 피해가 청구인의 주거, 가족생활 또는 사생활 존중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 57; *Luginbühl v. Switzerland* (dec.), 2006); (*Fadeyeva v. Russia*, 2005, § 68;

Thibaut v. France (dec.), 2022, § 38); (*Borysiewicz v. Poland*, 2008, § 51; *Fågerskiöld v. Sweden* (dec.), 2008; *Leon and Agnieszka Kania v. Poland*, 2009, § 100;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187; *Dzemyuk v. Ukraine*, 2014, § 77; *Kožul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 34; *Solyanik v. Russia*, 2022, § 40), 청구인의 사생활·가족생활 또는 주거의 향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해야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4–515).

78. 즉, 일반적인 환경 악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나 가족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Kyrtatos v. Greece*, 2003, § 52;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 42), 그러한 영향이 제한으로 규정될 수 있어야 한다(*Fadeyeva v. Russia*, 2005, § 70;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5).

Kyrtatos v. Greece, 2003 사건 § 53 에서 청구인들은 도시 개발로 자택 인근 습지가 파괴되어 주거가 있는 구역의 경관이 아름다움을 잃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구역 환경이 도시 개발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습지에 서식하는 조류 및 다른 보호종의 피해가 협약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그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청구인들이 제시하지 못하였다. 재판소는 예컨대 문제 삼은 환경 훼손이 청구인들의 주택 인근 숲이 파괴되는 등 청구인들의 안녕에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습지의 동물 생태 조건이 제한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사생활이나 가족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다.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사건 §§ 76–79 에서 청구인은 자택에서 1 킬로미터 떨어진 구리광산 잔류물이 포함된 광미침전지를 정화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침전지에 살포하는 계획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절차가 주변에 불쾌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그로 인한 오염이 청구인의 사적 영역에 제 8 조 적용을 촉발할 만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첫째, 청구인의 주택과 토지는 오염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었다. 둘째, 침전지에서 발생한 오염은 다량의 독성 가스나 물질이 급격히 방출될 수 있는 적극적인 생산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서 상황이 갑작스럽게 악화할 위험이 적었다. 셋째, 해당 지역 거주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었다는 징후도 없었다. 재판소는 또한 하수 슬러지로 인한 오염이 청구인이나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들이 자택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석회 생산 공장에서 배출된 연기에 문제를 제기한 *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2020 사건 §§ 30–32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나 그들의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생활을 제한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8 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79. 오염이나 기타 공해가 발생하는 사적 영업활동이 위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 8 조가 보장하는 권리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불법 설치된 자동차 정비소에서 발생한 소음과 공기오염에 관한 *Furlepa v. Poland* (dec.), 2008, 청구인들의 아파트 단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치과 진료소에서 발생한 소음에 관한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2009 및 청구인의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컴퓨터 게임방에서 발생한 소음에 관한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 91 참조; 또한 *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2020, § 29 참조).

b. 심각성의 기준선

80. 환경오염의 부정적 영향이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려면, 일정한 최소 한도의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여야 한다(*Kyrtatos v. Greece*, 2003, § 54; *Fadeyeva v. Russia*, 2005, § 69; *Borysiewicz v. Poland*, 2008, § 51;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Furlepa v. Poland* (dec.), 2008;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 90; *Leon and Agnieszka Kania v. Poland*, 2009, § 100;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37; *Apanasewicz v. Poland*, 2011, § 96;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05; *Grimkovskaya v. Ukraine*, 2011, § 58; *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 46;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188; *Udovičić v. Croatia*, 2014, § 139; *Dzemyuk v. Ukraine*, 2014, § 77; *Pł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 80;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 19;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2; *Calancea and Others v. Moldova* (dec.), 2018; *Kožul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 34;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57; *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2020, § 22;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2; *Kapa and Others v. Poland*, § 153, 2021; *Solyanik v. Russia*, 2022, § 40;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1).

문제 된 환경 공해가 청구인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또는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정도로 심각했다고 증명해야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4).

81. 최소 기준의 평가는 상대적이며, 사안의 모든 상황(예: 공해의 강도와 지속 기간, 청구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미친 신체적·정신적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Fadeyeva v. Russia*, 2005, § 69; *Borysiewicz v. Poland*, 2008, § 51;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Oluić v. Croatia*, 2010, § 49;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 90; *Leon and Agnieszka Kania v. Poland*, 2009, § 100;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05; *Apanasewicz v. Poland*, 2011, § 96;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Grimkovskaya v. Ukraine*, 2011, § 58;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37;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188; *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 46; *Udovičić v. Croatia*, 2014, § 139; *Dzemyuk v. Ukraine*, 2014, § 78; *Pfacht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 80;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 19;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2; *Calancea and Others v. Moldova* (dec.), 2018, § 27; *Kožul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 34;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57; *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2020, § 22;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2; *Solyanik v. Russia*, 2022, § 40;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1;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01;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1;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6).

일반적인 환경 맥락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이 문제 삼는 불이익이 현대 도시 생활에서라면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환경적 유해 요인과 비교하여 무시할 만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제 8 조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권리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Fadeyeva v. Russia*, 2005, § 69;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2009;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 90;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05;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37; *Apanasewicz v. Poland*, 2011, § 96;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188; *Pfacht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 80;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 19;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2; *Kožul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 34; *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2020, § 22; *Solyanik v. Russia*, 2022, § 40;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71;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7).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사건 §§ 95–96 에서 재판소는, 공동주택 건물 내 사무실이나 그 건물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원칙적으로 현대 도시의 공동주택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짐작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82. 경우에 따라, 문제 삼은 오염이나 소음이 가끔 발생하여도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할 수 있다(해마다 두 차례 1 주일 동안 불꽃놀이를 한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38 참조).

83. 개인의 건강이 실제로 악화되거나 심지어 위협받지 않았더라도, 오염이나 기타 공해에 노출된 사정으로 제 8 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López Ostra v. Spain*, 1994, § 51; 또한 참조: *Sciavilla v. Italy* (dec.), 2000; *Botti v. Italy* (dec.), 2004; *Kyrtatos v. Greece*, 2003, § 52;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3;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Furlepa v. Poland* (dec.), 2008;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36; *Dzemyuk v. Ukraine*, 2014, § 88;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2;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2; *Solyanik v. Russia*, 2022, § 41;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9;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08;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31).

이 점은 쓰레기장 인근 교도소에 수감된 청구인이 지독한 악취에 노출된 *Brândușe v. Romania*, 2006 사건 § 67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악화되지는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 8 조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문제 된 악취가 청구인의 삶의 질과 안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제 8 조 적용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사건 § 108 에서 재판소는 수개월간 길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로 오염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청구인들이 실제로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생명이나 건강이 위태로웠다는 증거도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만, 이러한 상황으로 청구인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었고, 특히 주거와 가족생활 존중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았고,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제 8 조를 원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오염이나 그 외 공해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했다고 추정하기 쉬워진다(*Fadeyeva v. Russia*, 2005, § 88; *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 100; *Băcilă v. Romania*, 2010, §§ 63–64; 이와 대조적으로 다음 참조 *Borysiewicz v. Poland*, 2008, § 54; *Ruano Morcuende v. Spain* (dec.), 2005;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Furlepa v. Poland* (dec.), 2008).

2. 환경위험 노출

84. 피해자가 직접 그 영향을 겪는 오염이나 공해와는 달리, 개인이 환경적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제 8 조 적용을 촉발할 수 있다. 문제 된 환경적 유해 요인은 주거,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정도여야 한다(*McGinley and Egan v. United Kingdom*, 1998, §§ 96–97; *Roche v. United Kingdom* [GC], 2005, § 155–156;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05 및 111;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192; *Dzemyuk v. Ukraine*, 2014, §§ 81–84;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57 및 172). 다시 말해, 개인이 노출된 환경위험이 “심각”해야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435 및 518).

85. 재판소는 특히, 해당 개인들이 노출될 수 있는 활동의 위해한 효과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확인되어 협약 제 8 조의 목적상 사생활 및 가족생활과 밀접한 연계가 인정되는 정도라면(*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2–113;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39;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189; *Thibaut v. France* (dec.), 2022, § 38), 해당 위험 활동이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 해도(*Thibaut v. France* (dec.), 2022, § 38) 제 8 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조치할 적극적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강조하였다(*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3).

86. 문제 된 위해는 *Folkman and Others v. Czech Republic* (dec.), 2006 사건 및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Czech Republic* (dec.), 2006 사건에서 잘 드러나듯이, 청구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두 사건에서, 테멜린(Temelin) 원자력발전소의 피해 통제 계획 대상인 지역 거주민들은 발전소 운영이 환경, 공중 보건 및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고 보고, 운영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재판소는 제 6 조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 원자력 사용 전반에 따른 일반적 위해에 관한 것이어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주장을 한 것이라 평하고, 이에 따라 제 8 조에 근거한 청구는 문제 된 결정과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권리 간 연계가 지극히 미약하다는 점에서 개연성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87. 캄파니아 지역 폐기물 관리 위기에 관한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사건 §§ 127–130 에서 재판소는 의학적 증거가 부재하여 폐기물 위기로 인한 오염이 청구인들의

건강에 해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공식 보고서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정해진 안전 기준을 위반한 채 광범위하게 폐기물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여 청구인들이 다양한 질병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지역의 환경 상황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종양 및 기타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망 위험이 캄파니아 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점에 의거하였고, 가족력, 영양 상태, 흡연 습관 등 다른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여도, 연구가 시사한 바와 같이 폐기물 처리에 노출된 것과 암이나 선천적 기형 같은 질환 발병 위험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또한 폐기물 관리 위기로 인체 건강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 이탈리아 의회 위원회가 인정한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88. 재판소가 본안에서 심리한 사건은 주로 건강 또는 신체적 온전성이 위해에 노출된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다만, 재판소가 판결에서 “환경 위해(danger)” 또는 “환경 위험(성)(risk)/환경 유해 요인(hazard)”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은, 그 현실이 반드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환경 위험 사안에도 제 8 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거 인근에 묘지가 건설되어 우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청구인이 주장한 *Dzemyuk v. Ukraine*, 2014, §§ 81-84 참조).

3. 사례

89. 오염, 공해 및 생활의 질 침해 사례

- 히스로 공항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항공기 소음(*Powell and Rayner v. United Kingdom*, 1990) 및 특히 야간 비행으로 인한 소음(*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또는 주활주로 확장으로 인한 소음(*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또는 군용 공항으로 인한 소음(*Pfacht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 주점에서 발생하는 야간 소음(*Sciavilla v. Italy* (dec.), 2000; *Oluić v. Croatia*, 2010; *Udovičić v. Croatia*, 2014), 나이트클럽(*Moreno Gómez v. Spain*, 2004) 또는 주점, 선술집, 디스코텍에서 발생하는 소음(*Cuenca Zarzoso v. Spain*, 2018)
- 재봉 작업장에서 발생한 소음(*Borysiewicz v. Poland*, 2008)
-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소음(*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 컴퓨터 게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 매년 두 차례, 일주일씩 진행된 불꽃놀이로 발생한 소음(*Zammit Maempel v. Malta*, 2011)

- 액체 및 고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악취, 소음, 유독가스(*López Ostra v. Spain*, 1994)
-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지독한 악취(*Brândușe v. Romania*, 2009)
-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한 불쾌한 냄새, 공기오염, 지하수오염(*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폐기물 수거·처리 관리 부실로 발생한 오염 및 기타 공해(*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31–132)
- 도시계획에 따른 철도 노선에서 발생할 소음, 진동, 오염(*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소음과 오염(*Ward v. United Kingdom* (dec.), 2004)
- 도로 교통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 오염, 악취(*Deés v. Hungary*, 2010; *Grimkovskaya v. Ukraine*, 2011; *Kapa and Others v. Poland*, 2021)
- 도시 철도역에서 발생한 소음(*Bor v. Hungary*, 2013)
- 제철소 외 기타 산업 시설에서 발생한 공기오염(*Fadeyeva v. Russia*, 2005; *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불법으로 건축된 자동차 수리소에서 발생한 소음 및 공기오염(*Furlepa v. Poland* (dec.), 2008)
- 탄광, 석탄 가공 공장, 폐석 적치장에서 발생한 수질·대기·토양 오염(*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콘크리트 생산 공장 가동 및 자재 운반 트럭 이동으로 발생한 소음과 먼지(*Apanasewicz v. Poland*, 2011)
- 채석장 운영으로 발생한 소음(*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기오염(*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석회석·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Podelean v. Romania* (dec.), 2019).

90. 오염, 기타 공해 및 건강 손상 사례

- 제철소에서 발생한 공기오염(*Fadeyeva v. Russia*, 2005; *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 금·은광 인근 거주인이 채굴 과정에서 사용한 사이안화나트륨에 노출된 경우(*Tătar v. Romania*, 2009)
- 납·아연 제련소에서 발생한 공기오염(*Băcilă v. Romania*, 2010)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기오염(*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91. 환경 위험 노출 사례

-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인화성 가스와 독성 물질을 방출하고, 과거에도 사고가 발생하여 150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세베소 지침 고위험”으로 분류된 화학공장 인근에 거주한 경우(*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 1950년대 말 영국이 크리스마스 섬에서 실시한 대기권 핵무기 실험 과정에서 군인들이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McGinley and Egan v. United Kingdom*, 1998, §§ 96-97 및 99)
-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환경과 인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해 폐기물을 저장·처리하는 공장 인근에 거주한 경우(*Giacomelli v. Italy*, 2006, §§ 85 및 89)
- 시안화 공정으로 운영 허가를 받은 금광 인근 마을 주민이 직면한 보건 및 안전 위험(*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39-40)
- 공공장소(*Botti v. Italy* (dec.), 2004) 또는 교도소(*Aparicio Benito v. Spain* (dec.), 2006)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경우
- 연구 목적으로 군인이 소량의 머스터드 가스와 신경가스에 노출된 경우(*Roche v. United Kingdom* [GC], 2005, §§ 155-156)
- 휴대전화 기지국(*Luginbühl v. Switzerland* (dec.), 2006) 또는 이동통신 중계탑(*Gaida v. Germany* (dec.), 2007)에서 발생한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
- 사이안화 공정으로 운영하는 금·은광과 광미침전지 인근에 거주한 경우(*Tătar v. Romania*, 2009)
- 디젤 차량에서 배출된 그을음과 미세먼지에 노출된 경우(*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 탄광, 석탄 가공 공장 및 폐석 적치장에서 발생한 수질·대기·토양 오염에 노출된 경우(*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폭발 위험성을 내포한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인근에 거주한 경우(*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자택 인근에 시립묘지가 건설되어 식수오염을 포함한 수질오염을 중심으로 환경 위험에 노출된 경우(*Dzemyuk v. Ukraine*, 2014; 또한 *Solyanik v. Russia*, 2022 참조)
-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구체적인 건강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한 전자기장에 노출된 경우(*Thibaut v. France* (dec.), 2022)
- 캄파니아 지역 폐기물 처리 위기 관련 건강위험(*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92. 저수지 제방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 긴급 방류로 홍수가 발생하여 청구인들이 거주하던 주택 등이 손상된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사건도 언급해 볼만하다. 재판소는 이 문제를 협약 제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심리하였고, 국내 당국이 해당 조항의 적극적 의무를 다하려면 협약 제 2 조의 적극적 의무와 동일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아래 참조).

4. 기후변화

93.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에서, 회원을 대신하여 실효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실현하려 설립된 고령 여성 협회와 네 명의 회원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스위스 당국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관하여 특히 제 8 조에 따라 청구하였다.

94. 재판소는 제 8 조를 기후변화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519-520), 이 조항은 개인의 생명, 건강, 안녕, 삶의 질에 기후변화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를 실효적으로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사생활이나 가족생활(상기 제 75 항 참조) 또는 주거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제한"하는지 또는 제 8 조의 적용을 수반할 정도로 관련된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지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피해자 지위에 관한 하기 제 231 항 또는 협회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하기 제 235 항의 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제 8 조상의 권리가 문제 되는지 및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사건별로 이러한 문제는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심리되어야 한다.

95.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판소는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521-526). 정관에 따르면 청구인 협회는 스위스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협회로서, 회원을 대신하여 실효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실현하려 설립하였다. 단체에는 스위스에 거주하고 평균 연령이

73 세인 2,000 명 이상의 여성 회원이 있다. 650 명 가까이 75 세 이상이다. 정관에는 단체가 스위스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그 영향을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에 전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단체는 실효적인 기후 보호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회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 청구인 협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이익을 위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재판소는 청구인 협회에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사법 집행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협회의 회원 기반, 대표성,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 협회는 피청구국 내 기후 변화 위협에 맞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방어하는 집단적 구제 조치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둘째, 개별 청구인들은 피청구국 내 법원에 재판청구권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청구인 협회가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피청구국 내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에 맞서 회원들과 기타 영향을 받는 개인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정관상 목적에 전념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생명, 건강, 안녕 및 삶의 질에 기후변화가 가하는 구체적인 위협이나 부정적 영향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개인들을 대신하여 활동할 자격과 대표성이 실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협회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제기한 청구는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므로, 그 결과 청구인 협회는 재판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있었고 청구에는 제 8 조가 적용되었다.

5. 증명

a. 일반 원칙

96. 청구인은 자신이 문제 삼는 공해, 오염 또는 환경 유해 요인으로 사생활이 제한되었다고 증명하여야 한다(*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75).

97. 또한, 심각성의 최소한에 도달하였다거나 환경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다고도 증명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Furlepa v. Poland* (dec.), 2008;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2009;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75; *Calancea and Others v. Republic of Moldova* (dec.), 2018, § 28; *Thibaut v. France* (dec.), 2022, §§ 40-48 참조).

98.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야간 비행 관련 규정 개정으로 히스로 공항 인근 거주민이 겪은 소음공해에 관한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18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여, 그러한 상황은 분명 사생활의 질과 각자 주거에서 생활 편익을 향유하는 범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거주민의 진정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소음에 민감한 정도에는 주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이 느끼는 불편은 다양한 항로와 관련된 주택별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를 겪는 개인의 성향에도 좌우된다고 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민간 공항 인근 거주민들이 소음공해를 이유로 청구한 *Ashworth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4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한 듯한 재판소는 그저 항공기 소음 수준만으로도 제 8 조를 적용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만 하였다.

99. 재판소는 증거를 검토할 때 일반원칙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증거는 강력하고 명백하며 일치할 정도의 추론이 동시에 여럿 존재하거나 진실에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유사한 추정치 동시 존재할 때 가능하다. 재판소는 실제적 권리의 성격과 관련된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융통성을 허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청구국 정부만이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affirmanti, non neganti, incumbit probatio)’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Fadeyeva v. Russia*, 2005, § 79).

100. 특히 오염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심각한 산업 오염은 공중 보건에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 90; *Wałkuska v. Poland* (dec.), 2008), 개인이 누리는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1;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01)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한다. 다만, 환경 유해 요소의 영향을 연령, 직업, 개인의 생활양식 같은 다른 유관 요인의 영향과 구별하기는 어렵다. 산업 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마찬가지로, “삶의 질” 자체가 정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주관적 특성이기 때문이다(*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 90; *Wałkuska v. Poland* (dec.), 2008;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1;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01;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2). 이러한 여러 고려사항은 산업에서 기인하지 않은 오염에도 적용된다(*Dzemyuk v. Ukraine*, 2014, § 79).

101. 따라서 재판소는 사건의 사실적 정황을 확정할 때는 전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로 국내 법원과 기타 관할 국내 당국의 판단에 의거한다(*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 90; *Wałkuska v. Poland* (dec.), 2008;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07;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3;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60); *Kapa and Others v. Poland*, § 153, 2021;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2;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02;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2).

102. 다만 재판소는 국내 당국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따를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 결정이 외견상 서로 불일치하거나 모순될 때 그러하므로,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소가 증거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 90;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07; *Dzemyuk v. Ukraine*, 2014, § 80;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3;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2;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02).

103.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였는지 또는 환경 위험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려면, 재판소는 국내기준뿐만 아니라(*Kapa and Others v. Poland*, 2021, § 153;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06) 국제 오염 기준(예를 들어, *Fågerskiöld v. Sweden* (dec.), 2008; *Oluić v. Croatia*, 2010, §§ 52-62 및 65; *Frankowski and Others v. Poland* (dec.), 2011)의 위반 여부도 참작할 수 있다. 의료진단서나 민간 전문가 등이 작성한 전문가 평가, 연구, 보고서도 고려할 수 있다(예를 들어, *Oluić v. Croatia*, 2010, §§ 52-62 및 65). 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정부 간 독립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429).

실제로 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출처가 서로 다른 자료를 결합하여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하였다(예를 들어,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65-71).

104. 사례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소음·매연에 관한 *López Ostra v. Spain*, 1994 사건 § 50에서, 재판소는 문제 된 공해가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였음을 국내 법원이 인정하였다고 평하였다.

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사건 § 57에서 재판소는 한 화학공장이 ▲국내 절차에서 “세베소 지침 고위험(Seveso high risk)”으로 분류되었고, ▲제조 과정에서 실제로 다량의 인화성 가스와 유독 물질을 배출하였으며, ▲과거 해당 부지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전문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된 물질이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쪽으로 종종 유입되었다는 사실관계에서 도출하여, 인근 거주민들이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하였다.

핵무기 대기권 실험 도중 군인들이 방사선에 노출된 *McGinley and Egan v. United Kingdom*, 1998 사건 § 99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다른 장병들과 함께 폭발을 등지고 야외에 줄지어 서서, 폭발 후 20 초간 눈을 감은 채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고농도 방사선

노출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건강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해를 일으킨다는 점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단순히 평하기만 하였다.

사이안화 공정으로 운영하는 금광 승인에 관한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사건 § 112(또한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40 참조)에서, 재판소는 최고행정법원에서 여러 연구에 의거하여 허가를 발급한 결정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또한 금광의 지리적 위치와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광산에서 사이안화나트륨을 사용하여 환경과 인근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였고, 회사가 시행하기로 한 안전조치도 그러한 활동에 내재된 위험성을 제거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최고행정법원의 판단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국내 절차의 일환으로 수행된 영향 평가도 고려하였는데, 그 평가에서 청구인들이 노출된 건강상 위험이 입증되어 사생활 및 가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소음에 관한 *Moreno Gómez v. Spain*, 2004 사건 §§ 58-59 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에서 청구인이 집안 내 소음 수준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사실은 결정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시 당국이 이미 청구인이 사는 지역을 소음 과밀 구역으로 공식 지정하여 현지 주민들이 생활상 방해 정도가 심각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상인 것은 기정 사실이었고, 허용된 최대 소음 수준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은 시 공무원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는 상황인데도, 청구인에게 그러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것이 재판소의 판결이었다. 재판소는, 시 당국이 이미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소음 과밀 구역 주민이 개별적으로 다시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소음이 야간에 허용 기준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가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고속도로 및 철도 기반시설 근처에 위치한 유랑민족 정착지에 세운 이동식 주택(카라반)에 거주하던 사람이 소음과 오염의 영향을 받은 *Ward v. United Kingdom* (dec.),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정착지가 특히 소음과 이산화질소 수준 때문에 이동식 주택을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독립 환경보건관 보고서에 의거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수거장 옆 교도소 수감자가 지독한 악취로 고통 받은 *Brândușe v. Romania*, 2009 사건 § 66 에서 재판소는 이후 실시된 여러 영향 연구에서 수거장 인근의 공기 오염 수준이 매우 높아 현지 주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을 고려하였다.

컴퓨터 게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관한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사건 § 97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아파트 내부 소음 측정치가 사건기록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고 평하면서도, 해당 게임장이 약 4 년간 하루 24 시간, 주 7 일 영업하였고, 거의 50 대에 달하는 컴퓨터 수로 보아 상당히 많은 고객이 드나들며 건물 내외부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생활을 방해하였음을 청구인들이 증명하였고, 문제 된 건물이 본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제철소 인근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오염에 노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Fadeyeva v. Russia*, 2005 사건 §§ 80-88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거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측정된 여러 유해물질 농도가 허용 최대 기준치, 즉, 러시아 법상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는 최대치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오염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역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에 위협할 수 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인정하였다. 또한 간접증거와 추정이 매우 강력하게 결합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의학적 증거로는 자신이 겪은 질환과 노출이 직접 연관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장기간 산업 배출물에 노출되어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설령 그러한 오염으로 청구인이 입은 건강상의 피해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여러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었고, 주거 생활의 질에 의심할 여지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실제 손해가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cf. *Gronuś v. Poland* (dec.), 1999).

청구인의 주거에 인접한 전기 변압기에서 발생한 전자기 복사 및 진동에 관한 *Ruano Morcuende v. Spain* (dec.), 2005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여러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이유가 충분하고 자의적이지 않은 결정에서 청구인의 주택 내 오염 수준이 건강에 해롭다고 보는 수치보다 낮게 유지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택의 진동과 전자기 복사 강도가 심각성의 기준선을 초과하였다고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풍력 터빈에서 발생한 소음에 관한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소음이 스웨덴 권고 수준을 약간 초과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 권고 최대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사이안화 공정으로 운영하는 금광에 관한 *Tătar v. Romania*, 2009 사건 §§ 93-97 및 107 에서 재판소는 문제 된 활동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나타내는 사법적 결정이나 다른 공식 문서가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유엔, 유럽연합, 루마니아 환경부가 작성한 공식 보고서와, 2000 년 1 월에 일어난 사고(광산 인근

광미침전지에 저장된 대량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근처 강을 타고 다뉴브강으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사건) 이후 루마니아 당국이 수행한 영향 연구를 참작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이후 일정 기간 청구인들의 주거 인근을 포함한 환경 속에서 여러 오염물질(사이안화물, 납, 아연, 카드뮴)이 국내외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영향 연구에서는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위험을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이에 기초하여, 발생한 오염이 현지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을 훼손했을 수 있고, 특히 청구인들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주거 생활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적·가족생활을 침해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도로 인근 거주민이 디젤 차량 배기가스 오염을 문제 삼은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의 결론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전문가 보고서에 의거하여, 특히 교통이 혼잡한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그늘음과 호흡성 분진 입자가 건강에 심각하게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금속 가공 전문 장인 협동조합의 소음 및 오염에 관한 *Leon and Agnieszka Kania v. Poland*, 2009 사건 § 102 에서 재판소는, 해당 사업장이 여러 번 점검되었지만, 협동조합의 활동이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고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협동조합이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유효한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주점에서 발생한 심야 소음에 관한 *Oluić v. Croatia*, 2010 사건 §§ 52-62 및 65 에서 재판소는, 독립 전문가들이 여러 번 실시한 음향 측정값이 국내 기준과 세계보건기구 최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결과에 주로 의거하였다. 소음의 크기, 야간에 발생한 점, 수년에 걸쳐 지속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방해의 정도가 제 8 조 적용을 위한 최소한의 심각성 기준에 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콘크리트 생산 공장 및 수반되는 화물차 이동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에 관한 *Apanasewicz v. Poland*, 2011 사건 §§ 98-101 에서 재판소는, 공장이 이웃에서 통상 발생하는 불편 수준을 넘어 청구인이 재산을 평온하게 향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본 국내 법원이 공장 운영 중단을 명령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공장 소유주의 건축 행위에 불법성이 있었고 ▲생활상 방해가 장기간·강도 높게 지속되었으며 ▲당사자들의 부지가 바로 인접하였고 ▲공장의 운영이 해당 지역 도시계획 규정상 토지의 지정 용도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현장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른 기술적 자료가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소음이었다고 한 점도 근거로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절차에서 최종 판결 이후 소음 수준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하면서도, 현장에서 불법 공사와 확장 시도가 이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마을 내 양조장과 알코올 잔여물 집수조로 생활상 방해 받은 현지 주민들이 청구를 제기한 *Marchiș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은 청구인들이 환경 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관할 당국은 양조장이 주변 지역이나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고 ▲행정 당국과 사법 당국이 제시한 이유는 개연성이 있었고, 사건의 면밀한 심리에 기초하였으며, 그 논리에 자의성이 드러난 흔적이 없었고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환경 공해에 관한 청구를 국내 당국 앞에서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그와 같은 생활상 방해가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양조장 가동으로 재산 인근에서 손해나 불편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의학·환경 전문가 의견이나 다른 증거를 국내 절차에서도, 재판소 절차에서도 제출하지 않아서 양조장 가동이 환경적 유해 요인이었다거나 그로 인한 오염이 해당 규정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이 신뢰할 만하게 증명되지 않았고, 악취가 청구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 및 사생활과 가족생활 향유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양조장은 1년에 30일, 하루 24시간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고, 실제로도 총 3년만 운영되었다.

탄광 운영으로 발생한 물·공기·토양 오염과 생활상 방해에 관한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사건 § 111 에서 재판소는 해당 안전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오염 지역에 거주하여 청구인들이 중대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결정하였다.

청구인이 가족과 거주하는 거리의 교통으로 발생한 오염 및 소음에 관한 *Grimkovskaya v. Ukraine*, 2011 사건 §§ 59-62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가족이 노출된 소음 수준이나 사생활과 가족생활에 소음이 미친 영향은 측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보건 당국이 작성한 현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택 인근 도로 표면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한 시간 동안 1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해를 받았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재판소는, 보고서에서 조사된 차량 절반 이상이 정해진 보건·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납과 구리 등의 오염 물질을 방출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은 만성적인 납·구리염 중독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이와 같은 소음, 진동, 공기·토양 오염의 누적 효과가 청구인이 제 8 조에 따라 향유할 권리를 상당히 저해하였다고 보아 제 8 조가 적용된다고 추정하였다.

채석장 운영으로 발생한 생활상 방해에 관한 *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사건 § 46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한 형사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헌병대 보고서와 그 보고서가 제시한 국내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결론에 의거하였다.

공항 소음에 관한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사건 § 140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항공기 비행 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국내 법원이 판단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노출된 소음은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여 제 8 조가 적용된다고 결론 내렸다.

도심 철도역 인근 거주민이 겪은 소음에 관한 *Bor v. Hungary*, 2013 사건 § 26 에서 재판소는 정부 측에서도 다투지 않았던, 국내 법적 기준이 초과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주점 소음에 관한 *Udovičić v. Croatia*, 2014 사건 §§ 141-149 에서 사건기록은 기준 준수를 인정하거나 기준 초과를 지적하는 상반된 결론을 담은 여러 전문가 보고서로 구성되었다. 재판소는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특히 기준이 초과되고 방음이 부적절했다는 상세 분석에 주목하였다. 또한 주점이 10 년간 영업한 사실, 경찰이 87 차례 출동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개인을 대상으로 공공질서 위반 관련 42 건의 경범죄 조치가 있었던 사실도 고려하였다.

군용 공항 소음에 관한 *Pl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사건 §§ 83-84 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위촉한 전문가들이 청구인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항공기 소음이 최고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였고, 군 훈련 비행이 분명 현지 주민의 생활상 방해가 되었다고 확인한 사실에 의거하였다.

몇 백 미터 떨어진 임시 폐기물 처리·저장 시설로 인해 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개인들에 관한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사건 §§ 22-23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사는 곳이 2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환경오염이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증명하는 보고서나 다른 문서가 전무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장한 오염이 자신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증명하거나 어떠한 건강상 위험이라도 언급하는 의료 문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문제 된 시설이 청구인들의 삶의 질과 안녕을 저해하여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 향유를 제한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사건 §§ 65-72 에서, 화력발전소 인근 거주민들은 공기오염, 소음, 전자기 오염을 이유로 청구하였다. 재판소는 소음과 전자기 오염에 관한 주장이 국내 절차에서 전문가 평가로 입증되지 않아서 국내 법원이 청구인들의 주장을 각하한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그 부분의 청구를 명백히 근거 없다고 선언하였다. 반면에, 공기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 보고서에서 발전소와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건물

사이에 완충 지대가 없고, 발전소 굴뚝에 거름망 같은 정화 장치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실질적 위험을 초래했음을 확인하였고, 발전소에서 배출된 여러 물질의 독성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제 8 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여러 청구인들이 신경쇠약, 무력증후군 같은 대체로 유사한 건강 이상을 겪었고, 이는 “유해 요인에 장기간 복합적으로 노출된 결과”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노동·보건·사회부 산하 기관이 작성한 법의학 보고서도 고려하였다. 재판소는 설령 그러한 오염으로 청구인들이 입은 건강상의 피해를 측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불가피하게 여러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었고, 주거 생활의 질에 의심할 여지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하였다.

초고압 송전선 부근 거주민들이 송전선이 인접하여 노출된 위험에 문제를 제기한 *Calancea and Others v. Republic of Moldova* (dec.), 2018 사건 §§ 29-33 에서 (또한, *Mastelica and Others v. Serbia* (dec.), 2020, §§ 47-50 참조),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거지에서 측정된 전기장의 세기가 세계보건기구 권고 한계치보다 훨씬 낮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자기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세기에 관한 어떠한 측정 자료도 사건기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일부 청구인들이 보고한 여러 질병도 주택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이미 진단된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질환과 초고압 송전선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건설로 철거 명령을 받은 산업시설 인근 거주민들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Kožul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사건 §§ 35-38 에서 재판소는 정부가 제출한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국내 기준이 준수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보고서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주택 내 소음과 공기 질이 국내법 또는 국제 권고 환경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현대 도시 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환경 유해성을 초과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주거용 건물에 입주한 경찰서에서 발생한 소음 외 각종 생활상 방해에 관한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사건 § 33-34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아파트 내 소음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였음을 보여주거나 수치로 측정하였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기관이 발급한 검사 보고서, 청구인의 평온한 휴식권이 침해되었다고 국내 법원이 결정한 사실관계, 경찰서가 주거용 건물에 불법으로 입주하였다는 당국의 인정 및 이러한 상황이 13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도로 교통 소음 공해에 관한 *Kapa and Others v. Poland*, 2021 사건 § 155 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국내 법정 소음 한계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현지 주민들의 건강권과 주거의 평온한 향유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사안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오염(소음·진동·배기가스)의 강도, 지속 기간,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에게 미친 해로운 영향은 협약 제 8 조 적용 요건인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였다고 결정하였다.

Solyanik v. Russia, 2022 사건 §§ 42-45 에서 청구인은 주거지 인근 묘지가 토지와 식수 공급원인 우물을 오염시켜서 사생활과 주거 존중권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문제 된 제한의 심각성이 협약 제 8 조 적용을 촉발할 정도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 보고서뿐만 아니라 묘지가 점진적으로 확장하면서 국내 보건 규정상 묘지 주변에 설치했어야 하는 “위생 보호 구역”의 범위 안에 청구인의 주택이 들어가게 된 사실을 고려하였다.

Thibaut v. France (dec.), 2022 사건 § 40-48 에서, 청구인들은 도시계획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 설치가 본인은 물론 그 부근 거주민들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고 주거 향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송전선을 설치하면 사생활·가족생활 또는 주거의 향유를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할 환경 유해 요인에 노출된다는 점을 청구인들이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주로 초고압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에 노출되면 아동 백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과학적 지식의 상태를 고려할 때 그러한 위험에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간주하여 예방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국내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였고, 재판소가 *Calancea and Others v. Republic of Moldova* (dec.), 2018 사건 § 19 에서 밝힌 대로, 자기장과 아동 백혈병 또는 기타 장기적 영향 간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지만,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가 발표한 지침에 따른 역학 연구는 일상적인 저강도 자기장 노출이 아동 백혈병 위험 증가와 연관됨을 보여 주었고, 국제암연구소(IARC)는 그러한 자기장을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다만,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성인이고, 가구 내에 아동이 있는지도 밝히지 않았으며, 주거는 계획된 송전선로 바로 인접지가 아니라 115 미터 조금 넘는 거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국내외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기장에 노출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평하였다. 아울러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개인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에 관한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b. 구체적 측면: 오염·생활상 방해 원인 간 인과관계의 증명 - 확률적 접근의 가능성

105. 청구인들이 오염이나 생활상 방해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병의 존재와 문제 된 오염 또는 생활상 방해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의학적 진단서나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Fägerskiöld v. Sweden* (dec.), 2008; *Cuenca Zarzoso v. Spain*, 2018, § 47). 다만,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한 오염에 관한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사건 § 107에서 재판소는, 의학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문제 된 오염이 청구인의 건강 손상에 반드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으나, 공식 보고서와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해당 안전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오염 지역에서 거주한 것이 청구인을 여러 질환에 취약해지게 하였다는 점은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06. 어떤 병리적 상태가 오염이나 생활상 방해에 노출되기 이전에 발생했다면, 그 사이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Calancea and Others v. Republic of Moldova* (dec.), 2018, § 31).

107. *Tătar v. Romania*, 2009 사건 §§ 102-106에서 재판소는 "확률론적 접근"을 채택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건에서 청구인 중 한 명은 자신의 천식이 광산 운영에 사용된 사이안화나트륨 노출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천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진단서로 확인되었고, 사이안화나트륨이 특정 조건에서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독성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2000년 1월의 환경 사고 이후 청구인의 주거 인근에서 높은 수준의 오염이 탐지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만, 사건기록에 포함된 과학 연구에 따르면,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정도의 사이안화나트륨 농도가 얼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관련 증거가 없는 경우, 다수의 현대적 질환에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확률론적 접근을 취할 수도 있다. 이는 과학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신뢰할 만한 통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부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이 특정 수준의 사이안화나트륨 노출과 청구인 중 한 명이 앓는 천식 악화 사이에 제대로 확립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5. 적용 가능성과 관련된 기타 요소

108.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사건 § 108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8조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해당 상황이 돌발적이고 예기치 못한 사태의 결과인지 아니면 장기간 지속되어 국가 당국이 이미 잘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유해 요인이나 공해가 청구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국가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아야 했는지 여부
- 청구인이 그 상황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는지 및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109. 따라서 위 사건에서, 탄광, 석탄 가공 공장 및 폐석 적치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질·대기·토양 오염과 생활상 방해가 현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환경에 기인한 생활상 방해가 협약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성의기준선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다.

- 청구인들이 오염도가 관련 안전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추론된, 청구인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의 존재
- 청구인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오염된 수질 사진과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
- 광산의 운영이 수년에 걸쳐 해당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기록상의 증거
- 국내법상 주거용 주택은 광산의 완충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고, 폐석 적치장은 원칙적으로 환경 유해 요인으로 지정하며, 높이 50 미터를 초과하는 폐석 적치장에서 주택까지 안전거리를 500 미터 이상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의 주택은 문제된 폐석 적치장으로부터 500 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었다는 점
- 문제된 시설 인근에서 실시된 오염 물질 측정 결과, 기준치가 초과되었다는 점
- 당국이 여러 차례 청구인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국내 법원이 일부 청구인들이 이주할 필요성을 확인한 사실

재판소는 국내법과 현장 측정 결과에 따르면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두 곳의 국영 산업시설 운영으로 지반이 침하되어 거주가 위험한 지역에서 청구인들은 협약이 우크라이나에서 발효된 이래 12년 이상 살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재판소는 오염과 국가 사이의 연관성이 국가의 협약 제 8 조상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을 정도인지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그 연관성을 도출하였다.

- 국가는 소유자로서, 탄광과 석탄 가공 공장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알고 있었다는 점
- 청구인들의 주택 이전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 청구인들은 문제 된 시설 가동 이전에 이미 주거에 정착하였다는 점

110. 화력 발전소 인근 현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 공기오염에 관한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사건 § 72 에서 재판소는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사건과 달리, 청구인들은 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이던 시기에 아파트 단지로 이주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만, 당시 청구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할 수 없었거나, 소련 시절 국가가 제공한 주택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제 8 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청구인들이 스스로 문제 된 상황을 초래했거나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11. 인근 석회석·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문제를 제기한 *Podolean v. Romania* (dec.),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러한 생활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청구인이 알면서도 그 주택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여 문제를 제기한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피해가 청구인에게 실제 발생하였다고 사건기록에서 밝혀지긴 하였지만, 제 8 조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B. 국가의 의무와 재판소의 감독

1.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112. 제 8 조는 환경 사건에서, 오염의 직접 원인이 국가이든 아니면 민간 산업이나 민간 부분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국가의 책임이든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98 및 119; *Fadeyeva v. Russia*, 2005, § 89; *Borysiewicz v. Poland*, 2008, § 50; *Wałkuska v. Poland* (dec.), 2008; *Tătar v. Romania*, 2009, § 87; *Giacomelli v. Italy*, 2006, § 78; *Leon and Agnieszka Kania v. Poland*, 2009, § 99; *Frankowski and Others v. Poland* (dec.),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1;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4);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2019, § 91).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 방해 또는 기타 공해가 이웃과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정도를 넘는 경우, 그 원인이 사인(私人)이든, 사업 활동이든, 공공기관이든 무관하게 주거의 평온한 향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pa and Others v. Poland*, § 151, 2021).

113. 협약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조치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로 분석되는 사안에도, 제 2 항에 따라 정당화되어야 할

공적 당국의 제한으로 분석되는 사안에도 적용되는 원칙은 대체로 유사하다. 두 가지 맥락에서 모두, 개인과 사회 전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달성해야 하고, 이때 국가는 협약 준수 조치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 판단재량을 누린다(*Powell and Rayner v. United Kingdom*, 1990, § 41; *López Ostra v. Spain*, 1994, § 51;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98; *Sciavilla v. Italy* (dec.), 2000; *Apanasewicz v. Poland*, 2011; *Moreno Gómez v. Spain*, 2004, § 55; *Fadeyeva v. Russia*, 2005, § 94; *Giacomelli v. Italy*, 2006, § 78; *Wałkuska v. Poland* (dec.), 2008; *Oluić v. Croatia*, 2010, § 46;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1;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4;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Bor v. Hungary*, 2013, § 24; *Udovičić v. Croatia*, 2014, § 138;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64 및 73; *Kožul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 33;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58);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2019, § 92;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75;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3).

나아가, 제 8 조제 1 항에서 도출되는 적극적 의무 부분에서도, 필요한 균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 2 항에 언급된 여러 목표 사이에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Powell and Rayner v. United Kingdom*, 1990, § 41; *López Ostra v. Spain*, 1994, § 51;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98; *Moreno Gómez v. Spain*, 2004, § 55; *Gaida v. Germany* (dec.), 2007; *Giacomelli v. Italy*, 2006, § 78; *Wałkuska v. Poland* (dec.), 2008;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Oluić v. Croatia*, 2010, § 46; *Apanasewicz v. Poland*,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1;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 43;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4; *Bor v. Hungary*, 2013, § 24; *Udovičić v. Croatia*, 2014, § 138;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75).

예컨대, 현지 축제 기간 도중 연례적으로 2 주간 개최된 불꽃놀이 행사에서 발생한 소음에 관한 *Zammit Maempel v. Malta*, 2011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입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몰타의 문화적·종교적유산의 일부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협약 제 8 조제 2 항에 규정된 여러 정당한 목적 가운데 일부(국가의 경제적 복리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국가가 불꽃놀이 문화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114. 본질적인 문제는 오염이나 생활상 방해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 달성이므로, 재판소는 주어진 사건을 검토할 때 소극적

의무(제 8 조가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의 관점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 의무(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하여 민간 산업을 규제함)의 관점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도 한다(*Powell and Rayner v. United Kingdom*, 1990; *López Ostra v. Spain*, 1994;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19; *Gaida v. Germany* (dec.), 2007;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3).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에서 재판소는, 적극적 의무의 맥락일 때와 동일한 유형으로 심사하면서,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공정한 균형이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Powell and Rayner v. United Kingdom*, 1990; *López Ostra v. Spain*, 1994;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다만 재판소는 소극적 의무의 맥락에서 하는 심사와 유사하게, 법적 근거와 정당한 목적의 존재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주주가 국가였던 전화사업체가 설치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생한 방사선에 관한 *Gaida v. Germany* (dec.), 2007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가 법에 규정되어 있었는지, 그 허가가 정당한 목적(이 경우, 국가의 경제적 복리 및 이동통신 기술 이용이라는 일반 대중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인지, 당국은 유해할지도 모르는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청구인의 권리와 공익 간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였는지 검토하였다.

115.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상 권리 존중을 보장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심사하면서 소극적 의무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다(*Fadeyeva v. Russia*, 2005). 또한, 제한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 뒤, 적극적 의무와 관련된 논리를 제시한 경우도 있다(*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53-57).

116. 재판소는 국가가 판단재량을 행사할 때도, 재판소가 국가의 판단재량을 심사할 때도 환경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는 하였지만, 인권 보호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참조하여 이 분야에서 특수한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22; *Ashworth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4).

117. 재판소는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에서 국가가 넓은 판단재량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하였다(*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00;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6; *Luginbühl v. Switzerland* (dec.), 2006; *Giacomelli v. Italy*, 2006, § 80; *Gaida v. Germany* (dec.), 2007; *Wałkuska v. Poland* (dec.), 2008;

Frankowski and Others v. Poland (dec.), 2011;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18;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6; *Pł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 79).

2. 재판소의 감독

118. 환경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결정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가 할 수 있는 심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정부의 결정이 협약 제 8 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체적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이익에 정당한 비중을 두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는 제 8 조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결정이나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 행사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조치를 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99;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5;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41; *Gaida v. Germany* (dec.), 2007; *Giacomelli v. Italy*, 2006, § 79; *Watkuska v. Poland* (dec.), 2008;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17; *Brândușe v. Romania*, 2009, § 62;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5; *Udovičić v. Croatia*, 2014, § 150).

a. 일반적 고려사항

i. 실체적 측면

α. 소극적 의무: 공권력에 의한 제한

119. 공권력에 의한 제한 사례

- *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사건: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 철도 노선
- *Ruano Morcuende v. Spain* (dec.), 2005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전자기 복사와 진동이 발생하는 전기 변압기
-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사건 § 141: 공공기관이 소유·재개발·관리·유지하던 활주로를 공공기관이 내린 결정에 따라 연장하면서 발생한 소음
- *Dzemyuk v. Ukraine*, 2014 사건 § 90: 민가 인근에 건설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동묘지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식수 포함 수질 오염 중심의 환경 위험(또한, *Solyanik v. Russia*, 2022, § 50 참조)

- *Pl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사건 § 85: 군용 공항 소음
-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사건 § 53: 주거용 건물에 입주한 경찰서 소음 외 각종 생활상 방해.

120.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제 2 항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한이 법에 규정되어 있었는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였는지, 민주사회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확인한다(*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42; *Pl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 85).

• 법으로 규정된 제한

121.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내 법관의 판단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44).

지방자치단체가 자택 인근에 공동묘지를 건설하여 특히 식수 오염을 중심으로 한 위협에 청구인을 노출한 *Dzemyuk v. Ukraine*, 2014 사건 §§ 91-92 에서 재판소는, 해당 공동묘지가 불법 건설 및 사용되었다는 점과 이 사실을 국내 절차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고 피청구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제 8 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Solyanik v. Russia*, 2022, §§ 51-54 참조). 따라서 문제 된 제한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정당한 목적

122. 공공 민간공항의 운영으로 발생한 소음이 문제 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경제적 이익이 주로 현지에 국한되는 경우라 해도, 협약 제 8 조상 "국가의 경제적 복리"에 근거하였다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47-149; 또한, 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소극적 의무에 관하여 평가한 사건은 아니지만,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21 참조).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 철도 노선에 관한 *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사건 또한 참조.

123. 전기 변압기에서 발생한 전자기 복사 및 진동에 관한 *Ruano Morcuende v. Spain* (dec.), 2005 사건에서 재판소는 변압기 설치가 정당한 목적(지자체 지구에 전기를 공급하여 주민이 누리는 삶의 질 개선 및 지자체의 경제적·사회적 복리 증진)을 추구한 것이라고 보았다.

124. 군용 공항 소음에 관한 *Pl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사건 § 87 에서 재판소는 국가 안보 유지를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였다.

• 제한의 필요성

125. 환경 사건에서는 국가가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1 차적 책임은 국내 당국에 있으며(*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Giacomelli v. Italy*, 2006, § 80;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18), 이는 법제뿐만 아니라 구체적 집행조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126. 다만 재판소는, 국내 당국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여지가 있다(*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127. 재판소는 제한이 추구한 정당한 목적이 비례성의 원칙을 지켰고, 특히 환경 영역에서 국가가 누리는 폭넓은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50).

이를 위하여 재판소는 당국이 오염 및 생활상 방해 줄이기 위해 시행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53).

경우에 따라 재판소는, 국민의 사생활을 제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국이 “긴급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조치를 할 때 그 선택의 범위가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Ruano Morcuende v. Spain* (dec.), 2005).

128. 사례

공항의 주 활주로 연장에 관한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사건 §§ 150-154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활주로를 연장하여 항공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사건기록에 없다고 보았다. 이어서 재판소는 소음 제한을 위해 당국이 마련한 여러 조치로, 활주로는 원래 계획된 2,750 미터가 아닌 2,550 미터까지만 연장되었고, 가장 소음이 심한 항공기는 프랑스 영공에서 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활공이나 군사 훈련 비행은 더 이상 해당 공항에서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민간 훈련 비행도 규제·제한되었으며, 야간 비행은 거의 허용되지 않았고,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공항에서 이착륙 항공기의 고도와 비행 경로가 조정된 점을 검토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당국이 본 사건에서 상충하는 여러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였다고 결론지었다.

Pl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사건 §§ 88-94 에서, 재판소는 군용 공항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제한의 원인이 된 소음의 생활상 방해가 그 시설 운영이라는 정당한 목적에 대해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 일부가 방음 공사 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들이 자택 근처에서 인지할 수 있는 생활상 방해가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가 겪는 상황과 비교하여 참기 어렵고 예외적이라고 평가할 만큼 강도와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토지의 지정 용도를 변경하도록 강제되지 않았다고 국내 법원이 확증하였고, 소음을 이유로 자택의 매매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여 이주하고 싶어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주할 수 없었음을 청구인들이 증명하지 못하였다.

β. 적극적 의무: 보호 조치

• 일반 원칙

129. 국가는 협약 제 8 조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López Ostra v. Spain, 1994, § 55; 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 58; Sciavilla v. Italy (dec.), 2000)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필요한 모든 조치”(Luginbühl v. Switzerland (dec.), 2006;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73) 또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Fadeyeva v. Russia, 2005, § 89;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10;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77;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23)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 의무에 따라, 개인 상호 간 관계 영역에서도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당국이 채택해야 할 수도 있다(Sciavilla v. Italy (dec.), 2000; Botti v. Italy (dec.), 2004; Deés v. Hungary, 2010, § 21).

130. 따라서 문제 된 오염, 환경에 기인한 생활상 방해 또는 위험성이 개인의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Ashworth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4), 특히 민간 산업을 규제하지 못한 경우(Fadeyeva v. Russia, 2005, § 89)라면, 국가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131.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오염이나 공해의 원인이 된 공공서비스의 관리를 관할 당국이 민간 주체에 위탁하였다는 사실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10;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23).

132. 관할 당국이 오염, 기타 공해 또는 건강상 위험에 노출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 조치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제 8 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54–156).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지독한 악취, 소음, 매연에 관한 López Ostra v. Spain, 1994 사건 § 56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의 주거 및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호하려 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치하라는 국내 법원의 결정에도 불응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피청구국이 누리는 판단재량을 감안하더라도, 폐기물 처리장 확보로 발생하는 도시의 경제적 복리라는 이익과 청구인이 주거·사생활·가족생활 존중권을 실효적으로 향유할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제 8 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었다.

도시 철도역 인근 거주민에게 영향을 미친 소음에 관한 *Bor v. Hungary*, 2013 사건 §§ 25-28 에서, 재판소는 법정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 자체가, 국가가 적절한 조치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제 8 조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국가 당국은 조용한 생활환경을 누릴 청구인의 이익과 철도 운송 보장이라는 타인과 사회 전체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달성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국내 법원이 적절한 이익 형량을 거쳐 결정을 내리기까지 16 년이 걸린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주거용 건물에 입주한 경찰서 소음 외 강중 생활상 방해에 관한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사건 §§ 53-57 에서는, 해당 건물이 본래 그러한 용도로 지정된 건물이 아니라고 지방 경찰서장이 인정하였지만 수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문서”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주거 내 휴식권이 침해되었다는 국내 판결에 당국이 반응하기까지 거의 7 년이 걸렸다. 재판소는 국가가 현지 지역사회의 치안 및 공공질서 보호와 경찰력에 의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이익과 청구인이 주거·사생활 존중권을 실효적으로 향유할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133. 당국이 스스로 채택한 규정과 조치를 실효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Oluić v. Croatia*, 2010, § 63;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44;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53;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35).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더라도 정식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Moreno Gómez v. Spain*, 2004, § 61; *Oluić v. Croatia*, 2010, § 63; *Cuenca Zarzoso v. Spain*, 2018, § 51;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8(b)).

나이트클럽 소음에 관한 *Moreno Gómez v. Spain*, 2004 사건 §§ 61-63(또한, *Cuenca Zarzoso v. Spain*, 2018, §§ 50-54 참조)에서 재판소는, 지자체 당국이 보장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음과 진동에 관한 조례 같은 조치를 하였고, 이 조치면 원칙적으로는 충분해야 했지만, 당국은 스스로 제정한 규칙이 반복적으로 위반되는 것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는 그 위반에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어도 정식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협약은 실효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허구적이거나 이론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당국이 야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조치하지 않은 결과, 청구인의 주거 존중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소는 국가가 청구인의 주거와 사생활을 존중할 실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주점 심야 소음에 관한 *Oluić v. Croatia*, 2010 사건 §§ 63-66 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조치를 채택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당국은 주점 주인에게 음악 재생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결정은 준수되지 않았다. 이어 당국은 주인에게 유관 국내 기준에 따라 벽과 층간 구조물에 방음 시설 설치를 명령하였으나, 설치한 방음 시설은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불복 관련 절차는 거의 4 년간 지속되었다. 재판소는 당국이 이 상황을 약 8 년간 방치하여 행정당국 및 행정법원에서의 절차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주거와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콘크리트 생산 공장 및 수반되는 화물차 이동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에 관한 *Apanasewicz v. Poland*, 2011 사건 §§ 102-104 에서, 국내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해당 방해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였다. 재판소는 그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국이 채택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청구인의 제 8 조상 권리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으므로, 동 조항의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였다.

134. 다른 많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서도, 국가가 이행할 적극적 조치를 선택하는 일은 국가의 판단 재량에 속한다(*Fadeyeva v. Russia*, 2005, § 96;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 141, 201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6;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28).

국가는 제 8 조에 따라 보장해야 할 개인적 이익을 마땅히 고려해야 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재량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있다. 재판소의 감독 기능은 보충적 성격이므로, 특정한 해법을 채택하여 공정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23;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6) 또는 채택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한지(*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28;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8(c)) 심사하는 데에 한정된다.

135. 특히 재판소는, 산업 시설 인근 거주민들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노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 8 조상 환경적 의무의 맥락에서 국가가 누리는 폭넓은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국가의 비용으로 새로운 주택을 제공받을 일반적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조항에 따른 불만은 환경 유해 요소를 정식으로 해결하여도 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해석이라고 강조하였다(*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50).

또한, 당국이 고속도로를 다른 경로로 우회시키기로 결정하여 발생한 교통량에서 비롯된 오염과 생활상 방해에 노출된 사안에서 재판소는, 제 8 조를 국가가 구체적인 환경 기준에 상당하는 주택을 모두에게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한 *Grimkovskaya v. Ukraine*, 2011, § 65 참조.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 기반시설 근처 유랑민족 정착지에 세운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하던 개인이 소음과 오염에 노출된 사안에서, 제 8 조는 당국에 특정 환경 기준을 충족하거나 구체적인 위치에 자리한 주택 또는 주택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재판소가 지적한 *Ward v. United Kingdom* (dec.), 2004 참조.

136. 다만, 재판소는 이 영역에서 서로 다른 사적 주체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간 균형(*Fadeyeva v. Russia*, 2005, § 105) 또는 공동체 전체와 청구인의 이해관계 간 균형(*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41-142)을 국가 당국이 도모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판단 오류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환경 정책 결정에 수반되는 문제가 복잡하므로 재판소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보충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판소는 우선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였는지 심사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 범위를 벗어나 국내 당국의 실질적 결론을 재검토할 수 있다(*Fadeyeva v. Russia*, 2005, § 105;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42).

137.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채택된 조치가 실제로 실효적이었는지와 문제 된 오염의 불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었는지 심리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을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과 형량하는 것도 빠뜨린 경우, 국내 법원이 보유하던 정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전개까지 고려하여 해당 평가를 직접 할 수 있다(*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85-86).

138. 즉, 당국이 취한 조치의 적절성과 충분성을 재판소가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지 도로의 교통으로 생활상 방해를 받은 *Deés v. Hungary*, 2010 사건 §§ 23-24 에서, 재판소는 국가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협약 제 8 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도로 교통량으로 생활상 방해를 받은 *Kapa and Others v. Poland* 사건 §§ 164 및 174 에서도, 재판소는 당국의 조치를 검토한 뒤, 해당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응이 적절하거나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산업 도시 주민들이 노출된 공기 오염에 대응하는 당국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재판소가 판단한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87-93 참조.

139. 이 영역에서 국내 당국이 누리는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재판소의 임무는 생활상 방해로 종식하거나 줄이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했는지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판소는 당국이 이 사안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였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하였는지 심사할 수 있다(*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 98; *Podelean v. Romania* (dec.), 2019;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34;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40;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8(e)).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특정 개인들이 중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구체적이고 엄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40).

140.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국내법에 따라 행동하였는지 고려한다(*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 98;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41).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지독한 악취에 관한 *Brândușe v. Romania*, 2009 사건 §§ 71-72 에서 재판소는, 쓰레기장 운영이나 폐쇄에 불가결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필수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결과 현지 당국이 쓰레기장 위치와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관련 요건을 무시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다만 재판소는, 국가가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적극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내법 준수 여부는 독립적이고 결정적인 심사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협약 제 8 조 제 2 항에 따라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였는지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요소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Fadeyeva v. Russia*, 2005, § 98; 또한 *Pavlov and Others v. Russia*, 2022, § 83;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28 참조).

고압 송전선 인근 거주민들이 송전선과의 근접으로 노출된 위험을 문제 삼은 *Calancea and Others v. Republic of Moldova* (dec.), 2018 사건 § 26 에서 재판소는, 현지 당국이 국내 규정을 위반하여 송전선으로부터 20 미터 보호구역 내에 청구인들의 주택 건설을 허용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는 제 8 조 위반으로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141. 재판소는 협약 제 2 조에 관한 판례를 참조하여, 당국에 불가능하거나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지우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과 관련하여 당국이 내려야 하는 운영상의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34).

142. 이웃에서 발생하는 생활상 방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문제 된 오염, 생활상 방해 또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해당 주거로 이주한 사정은, 그곳에 거주할 법적 권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이익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Zammit Maempel v. Malta*, 2011, § 72).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지위가 위법한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채석장 운영으로 발생한 생활상 방해에 관한 *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사건 § 47-50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국내법상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산업용 건물”을 주거로 삼았고, 허가 신청이 계속 거부되는데도 계속 거주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스스로 위법한 상황에 처하기로 선택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하고, 합법적으로 설치된 채석장이 법정 산업 활동용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소음을 불평할 처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143. 공항 소음에 관한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재정 손실 없이 사는 곳을 옮길 수 있었던 사실을 중시하였다(*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27; *Ashworth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4).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와 철도 기반시설 근처 유랑민족 정착지에 세운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하던 개인이 소음과 오염에 노출된 *Ward v. United Kingdom* (dec.),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인이 그 장소를 떠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이동식 주택을 세우고 거주할 대체 정착지를 찾는 유랑민족(Travellers)이 겪는 어려움의 경우, 재판소는 여전히 수많은 로마족 가정이 공식 정착지를 이용하기보다는 유목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공식 정착지에 주기적으로 공적이 발생한다는 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언급한 *Chapman v. United Kingdom* [GC], 2001 사건 § 111 의 판결을 참조하였다. 이어서, *Chapman*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다른 곳을 찾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무런 정보도 제출되지 않았고, 다른 대안이 전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144. 사례

히스로 공항 소음에 관한 *Powell and Rayner v. United Kingdom*, 1990 사건 §§ 42-45 에서 재판소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에 대형 국제공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공항의 운영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히스로 공항과 그 주변에서 항공기 소음을 통제·감소·보상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이 도입한 다양한 조치로, 항공기 소음 인증, 야간 제트기 운항 제한, 소음 모니터링, 소음 우선 경로 설정, 활주로 교대 사용, 소음 관련 착륙료 부과, 개트워/히스로 헬리콥터 노선 면허 취소, 방음 공사 보조금 제도, 공항 인근 소음 피해 부동산 매입 등을

언급하였다. 재판소는 이해관계자 및 주민 협의를 거쳐 이러한 여러 조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였고, 국제 기준, 항공기 기술 발전, 지역 주민이 겪는 소음 피해 정도를 적절히 고려하였다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소음 노출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에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나 영국 당국이 채택한 규제 조치의 내용이 제 8 조를 위반한다고 볼 만한 중대한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영국 정부가 히스로 공항 항공기 소음 완화 조치의 범위를 설정하면서 정부에 부여된 판단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제 8 조상 도달해야 하는 공정한 균형을 해쳤다고 주장할 여지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마찬가지로, 야간 비행 관련 규정 개정으로 히스로 공항 인근 거주민이 겪은 소음공해에 관한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사건 § 126-130 에서 재판소는 야간 비행의 경제적 이익과 소음 공해 완화 조치 간 이익을 형량하였다. 소음 공해 완화 조치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우선 쟁점이 된 규정이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한 할당제에 기반하였다고 평하였다. 나아가 재판소는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완화하려 시행된 조치인 소음원을 줄이기 위한 항공기 소음 인증, 오래되고 시끄러운 순으로 제트기의 단계적 퇴출, 소음 우선 경로 및 이륙 시 최소 상승 경사도 규정, 소음 완화 착륙 절차, 항공기 운항 횟수 제한, 소음 관련 공항 요금, 방음 공사 보조금 제도, 주택 소유자 대상 소음 피해 보상을 고려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재정 손실 없이 주택을 매각할 수 있었다는 점도 고려하면서, 어떤 보편적인 조치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수의 주민만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원한다면 재정 손실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점이 해당 조치의 합리성 평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제 8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소는,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중이 관련 협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었고, 적절하다면 어떤 의견이라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제철소 인근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오염에 노출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Fadeyeva v. Russia*, 2005 사건 §§ 99-134 에서 재판소는 국내법 준수 여부, 정당한 목적의 존재, 민주사회에서 그 활동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또한, 적극적 의무에 기존 방식으로 접근한 *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 101-110 참조). 재판소는 제철소를 계속 운영하여 해당 지역 경제 활동 기여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는 정부 주장에 동의하였다. 공정한 균형 유지 심사에서는 먼저 당국이 새 주택에 살게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은 산업 오염 수준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였고, 국내법상 주거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철소의 위생 보호 구역에 거주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 스스로 문제의 상황을 초래하였거나 어쩔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배제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이 사는 곳을 이전할 수

없었고, 국내법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은 숙박 제공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 뿐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살 곳을 구할 희망이 전무하였으므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적용한 조치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염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희망을 주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국가가 그 외에도 오염 방지·감소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재판소는 지난 10~20 년 간 배출량 저감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 환경 상황은 매우 더디게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철소 인근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어떠한 실질적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재판소는, 해당 공장 운영 상황을 보면 구역 내 주민들에게 특별 조치가 필요했지만, 국가는 청구인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떠한 실효적 해결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아울러 문제 된 오염 공장이 국내 환경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었는데도, 국가가 현지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산업 오염을 허용 가능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고안하거나 시행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없다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리면서도, 공동체의 이익과 청구인의 주거·사생활 존중권의 실효적 향유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주점 심야 소음에 관한 *Sciavilla v. Italy* (dec.), 2000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장이 주점 경영자에게 제한 사항을 부과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시장의 조치 이후 1년 9개월 만에 소음이 중단된 사정을 고려하여, 당국이 청구인의 주거 및 사생활·가족생활 존중권 보호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권리와 술집 관리인의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에 도달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소는 이 청구를 명백히 근거 없다고 선언하였다.

사실 이착륙장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관한 *Ashworth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음 문제 포함 현지 이착륙장 운영에 관한 사안을 현지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궁극적 규제 권한은 정부와 민간항공청(CAA)에 두되,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한 국가 정책은, 법체계와 지역적 규정이 상충하는 이해관계 간 공정한 균형을 보장할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제 8 조상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법체계와 지역적 규정을 고려하고, 이착륙장 소음이 일반적인 주택 가격과 특히 청구인들의 재산 가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청구인들이 이주할 현실적 가능성이 전무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인정된 판단재량을 초과하였다거나, 공정한 균형을 이루고 청구인들의 제 8 조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Botti v. Italy (dec.), 2004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1 조 및 제 8 조에 따라 일반인 출입 장소에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비흡연자인

청구인의 이익이 흡연을 계속하려는 타인의 이익과 충돌하였고, 국가 당국의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을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협약 제 2 조 및 제 8 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교도소 내 간접흡연에 관한 *Aparicio Benito v. Spain* (dec.), 2006 사건도 비슷하게 접근하였다. 재판소는 회원국이 간접흡연에 일률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가 채택할 구체적인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재판소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였다. 상술하자면, 재판소는 청구인처럼 독방을 배정받은 경우와 비흡연 수감자가 흡연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병존한다는 점에서 교도소 내 흡연과 관련하여 통일된 대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스페인 등 일부 당사국은 흡연이 허용되는 공용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제약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재판소는 흡연과 흡연에 대한 교정시설 내 규제 방식에 관한 합의가 당사국 간 결여된 점 및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제 8 조에 따른 이 청구는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전자기 과민증을 앓는 개인이 도시계획에 따른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에 우려를 제기한 *Luginbühl v. Switzerland* (dec.),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첫째, 국내 기준이 준수되었고, 둘째, 이러한 유형의 기반시설이 공중보건에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아직 없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전자기 과민증을 겪고 있지만, 국가의 폭넓은 판단재량 및 현대 사회에서 완전한 이동 전화망을 갖출 때 발생하는 공익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전파에 적용할 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는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처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해야 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추정하였다. 재판소는 제 8 조에 따른 해당 청구를 명백히 근거 없다고 선언하였다.

Ward v. United Kingdom (dec.), 2004 사건에서는, 고속도로와 철도 기반시설 근처 유량민족 정착지에 세운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하던 개인이 겪은 소음과 오염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의 주거 및 사생활 존중권을 제한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청구인에게 다른 대안이 전무하였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상황 개선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납 함유 휘발유 사용 금지로 아동 건강을 우려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제거되었고, 국내 법원이 지적인 바에 따르면 현지 의회가 부지 개보수를 위해 대규모 정부 보조금을 확보하였고 활용할 수도 있었던 규제조치가 환경보호법에 따라 존재하였다고 평하였다.

도로 기반시설 인근 거주민들이 디젤 차량 매연으로 인한 오염에 문제를 제기한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디젤 차량 배출가스를 억제하려 조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들이 제안한 구체적인 조치(디젤 차량

미세먼지 필터 장착 의무화 방안)를 거부한 것이 국가의 판단재량을 벗어나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이익 간 공정한 균형을 저해하였음을 청구인들이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시가지 도로 근처 주민이 인근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 이후 교통량 증가로 발생한 소음, 진동, 오염, 지독한 악취에 문제를 제기한 *Deés v. Hungary*, 2010 사건 §§ 22-24 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이러한 생활상 방해 줄이려 우회도로 3개 건설, 야간 속도 제한 하향, 신호등 설치, 대형 차량 접근 금지 및 교통 우회용 신규 도로 표지판 설치 등으로 조치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청구인이 장기간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재판소는 국가가 해당 지역의 교통 속도를 늦추고 개편하려 노력하였지만 법정 기준치가 수년간 초과되었다고 평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거리는 주거 향유를 막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공해에 노출되었다고 보았고, 피청구국이 청구인의 주거 및 사생활 존중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주거용 건물에 입주한 컴퓨터 게임장 소음 및 그 외 생활상 방해에 관한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2010 사건 §§ 99-102 에서 재판소는,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경찰과 지자체 당국은 게임장 운영이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거나 주거용 건물 내 소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상 방해 점검할 권한을 행사하는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지자체는 게임장이 있는 아파트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주거용 건물 내 상업 시설의 존재와 주민들의 복지를 조화하는 국내법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이후 지자체는 게임장 운영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게임장 고객은 건물 주민용 통로가 아닌 뒷문으로 출입하게 하였으나, 이 조건은 게임장 개장 후 2년 반이 지나서 부과되었고 지켜지지도 않았다. 더구나 국내 법원은 지역건축관리국 (Regional Building Control Directorate)이 부과한, 해당 아파트 내 게임장 사용을 금지하고 수도와 전력 공급을 차단하라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켰고, 여기에 소송 지연이 더해져 청구인들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게 하였다.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이 문제에 성실하게 접근하지 않았고, 상충하는 모든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의 주거 및 사생활과 가족생활 존중권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탄광, 석탄 가공 공장 및 폐석 적치장에서 발생한 수질·대기·토양 오염에 관한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사건 §§ 146-156 에서 재판소에 따르면, 당국은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입법 체계를 갖추고 ▲오염 수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였으며 ▲광산과 공장에 제재를 부과하였고 ▲완충지대가 설정되었으며 ▲식수 공급용

수로를 설치하고 ▲청구인들을 새 주택으로 옮기게 하려는 여러 계획이 수립되는 등 여러 가지로 조치하였다. 재판소는, 이렇게 노력하였지만 당국은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의 상황은 문제 된 기간(12년 이상) 내내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광산과 공장을 소유한 국가는 청구인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지원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오염 영향을 완화하는 두 가지 주요 정책적 선택지를 고려하였다. 이주는 실현된 적이 없었고, 완충지대 관리 계획 도입 등의 완화 조치도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매년 두 차례, 일주일씩 진행된 폭죽 행사 소음에 관한 *Zammit Maempel v. Malta*, 2011 사건 §§ 68-69에서 재판소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입회하에 폭죽을 터뜨렸고, 의무 보험이 적용되었으며, 행사를 운영하는 제 3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국가가 해당 활동을 규제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다.

청구인들이 수개월간 거리 곳곳에 쌓여 있던 쓰레기로 발생한 오염과 생활상 방해를 문제 삼은 캄파니아 지역 쓰레기 처리 위기에 관한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사건 §§ 111-112에서 재판소는 쓰레기 수거·처리·폐기 서비스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지 못한 당국의 장기적인 무능을 근거로, 청구인의 사생활과 주거 존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위기에 관한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사건 §§ 126-138 및 140-151에서, 폐기물 수거와 처분 관리에 대해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겪은 건강상 위험과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일상에서 경험한 환경 공해를 이유로 제 8 조 위반을 인정하였다. 반면, 비상사태 종료 이후 폐기물 오염으로 청구인들이 개별적인 피해를 보았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캄파니아 지역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여전히 쌓여 있다는 사실은 해당 지역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하였다는 증거라고 인정하였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었고, 영향이 있었다면 사생활과 주거 존중권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었는지 확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쓰레기 매립지 인근 거주민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매립지 폐쇄 전후 당국의 조치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주민들의 사생활 존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는 다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주점 소음 피해에 관한 *Udovičić v. Croatia*, 2014 사건 §§ 152-160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관할 행정 당국에 제기한 모든 민원과 조치에도 당국이 10년 넘게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이러한 상황을 10년 이상 방치하여 사안을 성실히 처리하지 않았고 상충하는 모든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거와 사생활 존중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

인근 석회석·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문제를 제기한 *Podolean v. Romania* (dec.), 2019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가 적극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네 가지 요소로 ▲청구인은 해당 소음 발생원을 알면서도 그 인근에 거주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점 ▲ 청구인이 겪는 음향 피해에 더해진 다른 소음원에 대해서는 당국이나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필요한 절차적 보장을 이미 누린 점 ▲ 국내 당국이 소음 저감을 위해 공장 운영 기반을 환경 인허가에 두고, 소음 수준을 측정하며, 현대화 및 방음 공사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었다. 재판소는, 당국이 노력하여도 소음 수준이 국내법이 정한 한도 아래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다른 여러 오염원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청구인이 국내 절차에서 그 모든 오염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 때문이기도 하다고 결론지었다.

당국이 우회도로 조치를 시행하자 자택이 심한 도로 교통량에 노출된 청구인이 생활상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Kapa and Others v. Poland*, 2021 사건 §§ 164-175 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수수방관하지는 않았으나, 생활상 방해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체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결국 현지민보다 도로 이용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셈이 되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교통 밀집에 부적합한 도로로 차량을 우회시킨 점과 주민이 직면한 문제에 국내 당국이 실효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주거 존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매립지로 인한 오염과 공해가 문제 된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사건 §§ 123-136 에서 재판소는 폐기물 관리 운영을 규율하는 규제 체계가 강력하였지만, 당국이 초기 단계에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후 당국의 여러 조치를 고려할 때, 건전한 폐기물 관리 정책과 실효적인 처리 관행을 마련하면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이익과 쾌적한 환경 조건에서 생활하려는 제 1 청구인의 개별적 이익 사이에서 정부가 공정한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하였다.

• “위해한 활동”에서 예방과 정보의 중요성

- 예방의 우선성

145. 재판소는 ‘위해한 활동의 맥락이라면’ 협약 제 2 조와 제 8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의 범위가 상당히 중첩된다고 지적하였다. 제 8 조상 적극적 의무에 따라 국가 당국은, 제 2 조상 적극적 의무의 맥락에서 당국에 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212 and 216;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102;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8).

146. 특히 제 2 조에서 확립된 기준과 마찬가지로,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다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는 무엇보다도 환경과 인체 건강 피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입법적·행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다(*Tătar v. Romania*, 2009, § 88).

재판소는 제 8 조 위반을 다루는 사건을 심리할 때, 국가가 복잡한 환경·경제 정책 문제(특히 위대한 활동이 수반된 사안)를 마주한 경우, 특히 잠재적 위험성 수준을 중심으로 그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해당 활동 인허가, 설치, 운영, 안전, 감독을 포괄해야 하고, 관련자라면 누구나 문제 된 분야에 내재된 위험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시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도록 실질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져야 한다(*Tătar v. Romania*, 2009, § 88; *Brândușe v. Romania*, 2009, § 63; *Băcilă v. Romania*, 2010, § 61;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06;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 75;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59;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4;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8(a)).

147. 사례

Băcilă v. Romania, 2010 사건 §§ 66–73 에서, 청구인은 남·아연 제련소를 운영하는 기업의 오염 수준을 현지민의 복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줄이게 할 수 없었던 현지 당국의 무능을 문제 삼았다. 재판소에 따르면, 정부는 제련소 운영 허가에 부가된 오염 저감 조치가 정식으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현지 당국이 제련소 활동에 수반되는 심각한 오염 문제를 알았으면서도 몇 년 동안 사업자 대상 조치를 미루는 사이, 제련소는 3 년간 필수 허가도 없이 운영되었다.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해당 지자체 최대 고용주의 경제 활동을 유지하여 얻는 이익을 균형 잡히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주민들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결국 재판소는 아무리 피청구국에 폭넓은 판단재량이 있다고는 하여도, 도시의 경제적 복리(주요 고용주의 활동 보호)와 청구인이 주거·사생활·가족생활 존중권을 실효적으로 향유할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사건 §§ 215–216 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제 2 조 관련 판단을 다시 언급하였다(상기 제 2 조 부분 참조). 즉, ① 당국은 저수지 운영에 내재된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평가하고 저수지 인근 도시 개발 정책을 관련 기술 기준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입법·행정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② 저수지 긴급 방류에 대비하여 하천 유로를 넉넉히 확보하거나 경보 체계를 설치하고 현지 주민에게 잠재된 위험성을 알리는 등 적절히 보호하도록 책임자를 독려할 일관된 감독 체계가 부재하였으며, ③ 위험성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행정 당국 간 충분한 협력·조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홍수 이후에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판결 시점에도 여전히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고 언급하였다.

국가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관한 *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사건 §§ 103-117 에서 재판소는, 불충분한 규정과 부분적 조치로 말미암아 중피종으로 사망한 청구인 한 명에 대해서는 제 2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상기 제 2 조 부분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한 논리에 의거하여, 생존 청구인들에 대해서도 제 8 조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하였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기오염에 관한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2017 사건 §§ 73-78 에서 재판소는 두 가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당시 위해한 활동에 대한 예방 규정이 전무하였고, 화력발전소에서 위해성이 잠재된 활동에 적용될 규제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였기 때문에, 발전소는 청구인들의 주거 바로 옆에서 공기오염과 그에 따른 청구인들의 건강과 안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줄이기라도 할 안전 장치도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당국은 주민이 겪는 생태학적 불편감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소는 환경 사안에 관한 사건에서 당국이 누리는 판단재량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국은 화력발전소 가동이라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청구인들이 주거·사생활 존중권을 실효적으로 향유할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타란토에 있는 제철소의 유해 배출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국가 조치 부재를 현지 주민들이 문제 삼은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사건 §§ 162-174 에서 재판소에 따르면, 국내 절차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는 배출물이 환경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배출물에 노출되는 것과 심각한 질환 발생 및 사망률 증가 간 인과관계를 부각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당국의 지역 정화 시도는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고, 특히 정부는, 화학·역학적 전문가 보고서에 기초하여 보건·환경에 심각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유관 사법 당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제철소 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차례 개입하였다. 재판소는 제철소 생산 활동과 관련된 환경 문제 관리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결론지으면서,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위험 지역 전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 상태로 이들은 유관 작업 일정을 비롯하여 정화 작업의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들의 사생활 존중권을 보호하려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 **의사결정 과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우를 위한 정보**

148. 위해한 활동의 영역에서, 제 8 조는 건강상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한다(*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 60;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5;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8(f); (의사결정 과정의 맥락에서 정보 접근은 아래 참조).

재판소는 이 권리의 준수를 평가할 때, 다른 유관 국제 문서에서 비롯되는 의무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오르후스 협약 제 5 조제 1 항제 c 호 본문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협이 임박한 경우, 그 원인이 인간 활동이든 자연적 원인이든 관계없이, 공공 당국이 보유한 정보 중 대중이 그 위협에서 비롯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가, 영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에게 즉시 지체 없이 공개 및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Di Sarno and Othes v. Italy*, 2012, § 107;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5;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9(d)).

149. 관련된 이들의 건강에 은폐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활동에 정부가 관여한 경우, 국가 안보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제 8 조에 따른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이 적절한 유관 정보를 모두 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접근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McGinley and Egan v. United Kingdom*, 1998, § 101; *Roche v. United Kingdom* [GC], 2005, § 162;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46).

150. 일부 판결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국가는 제 2 조(상기 참조)뿐만 아니라 제 8 조 하에 직권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Tătar v. Romania*, 2009, §§ 120–124; *Brândușe v. Romania*, 2009, § 74;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07 및 113;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52 ;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9(d)).

151. 사례

제조 공정 도중 다량의 인화성 가스와 유독 물질을 배출하여 150 명이 입원하는 사태를 일으킨, “세베소 지침 고위험”으로 분류된 화학공장 인근 거주민들의 상황에 관한 *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사건 § 60 에서 재판소는,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위해도 노출될 수 있는 도시에서 청구인들이 가족과 계속 산다면 감수해야 할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므로, 피청구국은 청구인들의 사생활과 가족생활 존중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일련의 대기권 핵무기 실험 도중 방사선에 노출된 군인에 관한 *McGinley and Egan v. United Kingdom*, 1998 사건 §§ 101-103 에서 재판소는, 관련된 이들의 건강에 은폐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활동에 정부가 관여한 경우, 제 8 조에 따른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이 적절한 유관 정보를 모두 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접근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당시 상황에서, 실험 후 크리스마스섬에서 기록된 방사선 수치에 관한 문서를 요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해당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군인이 연구 목적으로 저용량의 겨자 gas와 신경 gas에 노출된 후, 지발성 기관지 천식, 고혈압, 만성폐쇄성기도질환 등 여러 질환을 진단받은 *Roche v. United Kingdom* [GC], 2005 사건 §§ 162-167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노출된 위험이 있다면 무엇이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유관 정보를 모두 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접근 가능한 절차를 마련할 적극적 의무가 당국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McGinley and Egan v. United Kingdom*, 1998 사건에서 사용한 절차는 연금 관련 분쟁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사이안화 공정으로 운영하는 금광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의 주요한 보건·환경적 결과는 국제 연구와 보고서에 기록된 *Tătar v. Romania*, 2009 사건 §§ 120-124 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사고로 발생한 과거·현재·미래의 결과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차 유사한 사건에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 및 권고 사항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 중 한 명이 행정·사법 당국을 상대로 자신과 가족이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책임자에 대한 소추를 관철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모두 성과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당국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관련 주민 집단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거나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수감된 교도소 인근 지방자치단체 쓰레기장에 문제를 제기한 *Brândușe v. Romania*, 2009 사건 § 74 에서 재판소는 지자체가 쓰레기장 폐쇄 절차를 개시하였지만,

그 부지에 환경 및 공중보건상 위험성에 관한 공공 정보나 경고문을 어떤 형태로도 게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실을 특히 중시하였다. 또한 재판소에 따르면, 정부는 당국이 문제 된 쓰레기장 정보를 당국에 요청한 청구인을 비롯하여 수감자들이 영향 평가 결과 및 자신들이 노출된 건강상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 실효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려고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처리·폐기 서비스의 부실 관리로 인한 오염 외 각종 생활상 방해에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사건 §§ 107 및 113 에서 재판소는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이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탈리아가 비준한 환경문제에서 정보접근성, 대중의 의사결정참여, 사법접근성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 제 5 조제 1 항제 c 호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협이 임박한 경우, 그 원인이 인간 활동이든 자연적 원인이든 관계없이, 공공 당국이 보유한 정보 중 대중이 그 위협에서 비롯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가, 영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중에게 즉시 지체 없이 공개 및 전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건에서 재판소는 민방위부가 의뢰한 연구가 공개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이탈리아 당국이, 캄파니아에 계속 거주하여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청구인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었는지 알릴 국가 의무를 다하였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마찬가지로 캄파니아 쓰레기 위기 문제를 두고, 민방위부가 건강 영향 연구를 공개하였고, 의회 위원회와 여러 시장 및 검찰은 청구인들의 주거지 인근 매립장의 환경 상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청구인들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떤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었는지 알릴 당국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재판소가 결론 내린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52 참조.

청구인들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관련 위험성에 관한 공적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사건 §§ 245-250 에서 재판소는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체계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고려하고, 국내법이 환경 정보와 위해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광범위하게 명시하고 체계화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다. 재판소는 당국과 사업 개발자들이 상당한 양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은 실제적인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평하였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접근하지 못한 절차와 관련하여 정보 청구에 특화된 법제도가 존재하였다고 부연하였다. 재판소는 국가가 협약 제 8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결론지었다.

ii. 의사결정 과정

152. 제 8 조에 따라 보장되는 것과 같은 협약상의 권리의 향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이 국가 당국에 부여되는 경우, 피청구국이 판단재량의 범위 안에 머물렀는지 판단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보호조치이다(*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7;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9).

153. 따라서 재판소는 비록 제 8 조에 명시적인 절차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결정 절차는 공정하고 제 8 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이익을 적절히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8; *Giacomelli v. Italy*, 2006, § 82; *Wałkuska v. Poland* (dec.), 2008;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2;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19;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7; *Udovičić v. Croatia*, 2014, § 151). 그러므로 재판소는 관련 정책이나 결정의 성격, 의사결정 절차 전반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정도, 제공된 절차적 보호조치 등 모든 절차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04;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8; *Giacomelli v. Italy*, 2006, § 82;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2;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19;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7; *Udovičić v. Croatia*, 2014, § 151;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9(b)).

154. 재판소는 일부 판결문에서 *환경문제에서 정보접근성, 대중의 의사결정참여, 사법접근성에 관한 협약(오르후스 협약)*을 직접 인용하면서(*Tătar v. Romania*, 2009, § 118; *Grimkovskaya v. Ukraine*, 2011, § 69;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07), 국가가 환경·경제 정책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예방과 평가를 고려한 적절한 조사와 연구를 포함할 것
- 연구의 결론뿐만 아니라 노출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 대중의 접근을 허용할 것
- 관련 개인들의 불복을 보장할 것

155. 일반적으로, 관련된 개인들은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익을 보호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절차의 구체적 설계는 국가의 판단재량에 속한다는 전제 하에, 관련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유관 주장을 제기하면 심리될 수 있어야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9(e)).

156. *Büttner and Krebs v. Germany* (dec) 2024 사건 § 73 에서 재판소는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요건은 제 8 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당국이 상충하는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적정하게 비교형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국이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정하게 비교형량하고 판단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획 절차에서 이러한 요건 이행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에 충분히 비중을 두었고 해당 계획 결정이 제 8 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따져야 한다. 다만, 당국이 문제 된 여러 권리를 고려하여 비교형량하였음을 국내 법원이 증명하고, 절차적 결함이 그 비교형량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좌우하였다는 점을 법에 따른 심사와 자의적 징후의 부재 속에서 배제하였으며, 당국이 판단재량을 일탈하였다는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 8 조 위반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157.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위와 같은 접근법에 따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 사업 인근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계획 승인 절차 과정에서 당국이 예상 비행경로에 관하여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사업이 승인된 후에야 실제 소음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를 명백히 근거 없는 것으로 보아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국내 법원이 필요한 모든 절차적 보호조치를 갖춘 사법 절차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심리한 후, 당국이 수행한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형량에 결함이 없고, 승인 절차상의 흠결이 청구인들에 관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또한, 재판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변경된 비행경로가 청구인들의 주거 및 사생활과 가족생활 존중권에 대한 실제적 침해로 구성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재판소에 제기하지 않았다.

χ. 사전 조사와 연구

158. 국가가 환경·경제 정책과 관련된 복잡한 쟁점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에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조사와 연구가 포함되어, 이를 통해 문제 된 여러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고(*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28;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9;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43; *Lemke v. Turkey*, 2007, § 41; *Gaida v. Germany* (dec.), 2007; *Giacomelli v. Italy*, 2006, § 83; *Tătar v. Romania*, 2009, § 88;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20;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8;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9(c)), 환경을 훼손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지도 모르는 활동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9;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43; *Lemke v. Turkey*, 2007, § 41; *Băcilă v. Romania*, 2010, § 62;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20;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 21).

159. 재판소는 특히 당국이 잠재적으로 유해할지도 모르는 활동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조사하였는지 심리한다(*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2011, § 143).

160.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내리려면 반드시 모든 측면에 관하여 포괄적이고 계량 가능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28;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8; *Gaida v. Germany* (dec.), 2007; *Giacomelli v. Italy*, 2006, § 82;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70;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19 및 231;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8). 환경을 해쳐서 협약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지도 모르는 활동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9(c)).

161. *Zammit Maempel v. Malta*, 2011 사건 § 70 에서 재판소는 현지 축제에서 매년 두 차례, 일주일씩 불꽃놀이를 허가하면서 사전 영향평가가 없었던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쓰레기장에서 발생한 지독한 악취에 관한 *Brândușe v. Romania*, 2009 사건 § 73 에서는 악취 관련 사전 영향평가가 전무한 사실을 고려해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ii. 정보 접근권

162. 일반 대중은 이러한 연구 결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9;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43; *Lemke v. Turkey*, 2007, § 41; *Tătar v. Romania*, 2009, §§ 88 및 113;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8;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39(d)).

필요하다면, 일반 대중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9;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43; *Giacomelli v. Italy*, 2006, § 83; *Tătar v. Romania*, 2009, §§ 88 및 113;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07).

iii. 재판 청구권

163. 관련된 개인들도 자신의 이해관계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어떠한 결정, 작위, 부작위에 대해서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 119;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 43; *Wałkuska v. Poland* (dec.), 2008; *Tătar v. Romania*, 2009, § 88; *Giacomelli v. Italy*, 2006, § 83; *Zammit Maempel v. Malta*, 2011, § 62;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 221;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38 및 155;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 21).

iv. 사례

도시계획에 따른 공공 철도 노선에 관한 *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사건에서 재판소에 따르면 네덜란드 당국은 계획 과정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해 효과를 조사하였다. 사전 계획 결정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포함하여 대중에 공개하였고, 대중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 결과 계획 결정이 대폭 수정되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공적 지출도 예정되었고, 청구인들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사이안화 공정으로 운영하는 금광 허가에 관한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2004 사건(또한, *Öçkan and Others v. Turkey*, 2006; *Lemke v. Turkey*, 2007 및 *Genç and Demirgan v. Turkey*, 2017 참조)에서 재판소는 운영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공청회에 발표되어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모두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광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최고행정법원이 생명권 및 환경권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근거로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연구에 따라 사이안화나트륨 사용이 현지 생태계와 인체 건강 및 안전에 초래하는 위해가 드러났으므로, 최고행정법원은 영향평가 및 기타 보고서의 결론을 참조하여, 금광의 지리적 위치와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운영 허가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생기는데도 광산의 폐쇄 명령은 판결 선고 후 10 개월이 지나고 당국에 송달된 지 4 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졌다. 이후 공개되지 않은 결정에 따라 각료회의는 금광의 생산 재개를 승인하였다. 이에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절차적 보호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위해 폐기물 저장·처리 운영허가에 관한 *Giacomelli v. Italy*,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에 따르면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만, 적절한 조사나 연구 없이 운영허가와

산업폐기물 무해화 처리 허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당국이 사업자 영향평가를 요구한 것은 무해화 작업이 시작되고 7년이나 지난 후였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한 국내 법원이, 해당 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고 환경보호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될 때까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행정당국은 공장 폐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소는 행정당국이 국내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 된 활동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법 결정 집행을 거부하여 청구인이 누렸던 절차적 보호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법의 지배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국내법이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절차적 장치(환경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 시민들이 인허가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며 필요하다면 위해한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오랜 기간 실질적 효과를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소는, 아무리 피청구국에 판단재량이 있다고 하여도, 독성 산업폐기물 처리공장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청구인이 주거·사생활·가족생활 존중권을 실효적으로 향유할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사이안화 공정을 사용하는 금·은광 운영 허가에 관한 *Tătar v. Romania*, 2009 사건 § 101 및 §§ 110-119 에서 재판소는 무엇보다도 당국이 문제 된 활동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충분히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의 사생활과 주거뿐만 아니라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호하려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허가 발급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점을 감안한다 하여도, 사건기록에는 당국이 그 평가에서 드러난 환경 및 공중보건상의 위해를 논의한 흔적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허가의 근거가 된 영향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공청회가 열리긴 하였지만 참석자들에게 영향평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사이안화 공정의 위해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었다고 평하였다.

시가지 도로로 고속도로 교통량을 우회시키기로 한 당국의 결정으로 현지 주민들이 오염 외 각종 생활상 방해에 노출된 *Grimkovskaya v. Ukraine*, 2011 사건 §§ 67-72 에서 재판소는, 적절한 환경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었고 결정 후 합리적인 환경 관리정책이 채택되었다는 점 또는 청구인에게 독립된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다룰 유의미한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하지 못한 사실을 증시하였다. 재판소는 이 두 가지 요소와 더불어 *오르후스 협약*도 고려하여, 필요한 공정한 형량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2012 사건 §§ 191-192 에서, 현지 주민들은 항구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선박 충돌 후 대규모 가스 누출 및 이어지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당국의 위험 평가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우선 안전을 증진하고 LNG 운송 및 처리로 발생할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입법·규제 체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법원은 당국이 위험평가를 적절히 수행하였다고 본 점. 두 터미널 모두 장기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잠재적 위험성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완화조치가 제시된 점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허가 신청이 공표되었고 일반 대중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사법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 간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국내 당국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국가가 청구인들의 사생활과 주거 존중권을 보장할 의무를 이해하였고, 결과적으로 제 8 조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공항 주 활주로 연장 인가에 관한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사건 §§ 155-160 에서 재판소는, 연장 계획이 소음 공해에 관한 상세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었고, 일반 대중이 사업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열렸으며, 이어 항공과 전파 관련 부담에 관한 두 차례의 추가 공청회가 개최되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적절한 조사와 연구가 있었고, 대중이 그 결과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권리 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행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의사결정 과정이 분절적이었거나 사업 관련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 이행 방식과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내법이 다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을 타당하게 보았으며, 어쨌든 청구인들은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다고 하였다.

폐기물 처리·저장 임시 시설 건설 허가에 관한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7 사건 §§ 24-29 의 결정은 의사결정 과정이 판례상의 요건과 합치한다고 간주된 또 다른 예시이다.

b. 기후변화 관련 구체적 고려사항**

164. 제 8 조는 기후변화의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이 생명, 건강, 안녕, 삶의 질에 미치지 않도록 국가 당국의 실효적 보호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포괄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19 및 544). 제 8 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이러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몫을 다하는 것이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45).

i. 판단재량

165. 위협의 성격과 중대성 및 일반적 합의(협약 당사국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각자 수용한 확약에 따라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실효적인 기후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를 확고히 한다는 합의)를 고려해야 하므로,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영향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행한다는 국가의 확약과 이에 따른 필수 목표 및 과제를 설정할 때 국가의 판단재량은 제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 즉 국제적으로 확립된 목표치와 확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운영상의 선택이나 정책에 대해서라면 국가는 우선순위와 자원에 비추어 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41-543).

ii. 적극적 의무의 내용

α. 원칙

• 규정과 조치

166. 국가의 일차적 의무는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현재의 영향과 향후 잠재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영향을 완화할 규정과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무에서 실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과 조치의 목표는,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인권(특히, 협약 제 8 조에 따른 사생활 및 가족생활과 주거에 대한 권리) 침해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러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존중하려면, 각 체약국이 원칙적으로 향후 30 년 내에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고 미래 세대에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중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무엇보다 먼저 국내 차원의 구속력 있는 규제 체계에 통합한 후 충분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 목표치와 이행 일정은 국내 규제 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 일반적·부문별 완화조치의 근거가 되게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45-549).

따라서 재판소는 국가가 판단재량의 범위 내에 머물렀는지 심사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관할 국내 당국이 다음 사항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였는지 검토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50):

(a) 국가적·국제적 기후변화 완화 의무의 궁극적 목표에 비추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 시한과 동일 기간의 전체 잔여 탄소예산을 명시하는 방식이거나 그에 상응하여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량화할 수 있는 방식 채택

(b) 국가정책에서 정한 관련 일정에 따라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원칙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부문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론에 따라 중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이행경로 설정

(c)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식으로 준수하였거나 현재 준수 중임을 증명하는 증거 제시(상기 (a)-(b) 참조)

(d)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가용한 최선의 증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최신회

(e) 관련 법률과 조치를 수립·이행할 때는 적시에,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

167. 이러한 여러 완화 조치에 더하여, 국가는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하거나 임박한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적응 조치를 채택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적응 조치를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적용할 때는 가용한 최선의 증거를 따라야 하고, 이 맥락에서 국가의 적극적 의무로 구축해 놓은 일반적 구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52).

• 의사결정 과정

168.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규제와 조치를 수립·이행하는데 중요한 공공 당국이 보유한 정보는 일반 대중과 특히 그러한 규제와 조치 또는 그 부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이 관련 연구의 결론에 접근하여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절차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동시에, 대중의 견해와 특히 유관 규정과 조치 또는 그 부재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위험에 처한 이들의 이익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게 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54).

β.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사건 (§§ 555–573)

169. 회원을 대신하여 실효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실현하려 설립된 고령 여성 협회인 청구인 협회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스위스 당국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관하여 제 8 조 등에 따라 청구하였다

재판소는 앞서 제시된 여러 원칙을 적용하여, 스위스가 관련 입법 및 행정 체계를 구상·개발·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판단재량을 일탈하여 이 분야에서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제 8 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먼저 스위스 당국이 관련 국내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대한 공백이 있었다고 하였다. 2011 년 제정된 이산화탄소법은 1990 년 대비 2020 년까지 20% 감축을 규정하였으나, 2009 년 스위스 연방평의회 평가에 따르면 산업화 국가들은 그 시점까지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연방평의회가 2017 년 제안한 2011 년 법 개정안, 즉 2020 년~2030 년 감축 목표치를 30%로 설정하는 안은 2021 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2020 년 이후 기간에 입법적 공백이 발생하였고, 국가는 2011 년 법을 부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는데, 이 개정은 2021 년~2024 년 감축 목표치를 1.5%로 설정했을 뿐, 그 이후 기간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어서 재판소는, 스위스가 파리협정 이행 모니터링 맥락에서, 2030 년까지 1990 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0% 감축 또는 2021 년~2030 년 평균 최소 35%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21 년 9 월에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이 “NDC”는 2022 년 9 월 30 일 기후법에 반영되었고, 이 법은 2050 년까지 순배출 제로(0) 목표치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능한 한 최대한” 감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40 년, 2031 년~2040 년 및 2041 년~2050 년 기간별 중간 조치를 설정하였다. 재판소는 다만 이 법(2023 년 6 월 국민투표에서 승인되었으나 판결 선고 시점에는 발효 전)이 구체적 실행수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목표만 설정하고, 구체적 수단은 연방평의회가 “적시에” 의회에 제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25 년~2030 년 기간은 여전히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재판소는 기후변화의 긴급성과 현재 만족스러운 규제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적시에” 구체적 조치를 채택하겠다는 입법적 약속만으로는 자국 관할 내 개인이 기후변화가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입지 않도록 실효적으로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입법의 도입만으로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법제에서 확인된 결함을 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스위스 당국이 탄소 예산이나 다른 방식으로 자국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수치화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동시에, 스위스가 지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2020 년까지 1990 년 수준과 비교하여 20% 감축)를 달성하지 못한 점도 언급하였다.

II.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한 제 8 조상 권리의 제약

170. 환경 보호는 제 8 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 제한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다.

Buckley v. United Kingdom, 1996 사건 § 63 및 §§ 74-85 에서 재판소는 집시인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하여 본인 소유지에 이동식 주택을 세워둔 것에 대해, 당국이 도시·건축허가를 거부하고 이전을 명령한 것이 제 8 조상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도로 안전 증진, 환경 보존, 공중 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추구된 정당한 목표는 공공의 안전, 국가의 경제적 복리, 보건 보호, 타인의 권리 보호에 해당하였다. 재판소는 국가가 일반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개별 조치의 집행도 포함하는 도시계획 정책 영역에서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고 지적하면서, 청구인의 주거 존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유사한 조치에 관한 *Chapman v. United Kingdom* [GC], 2001 사건 §§ 82 및 90-116 에서 재판소는 문제 된 쟁점이 *Buckley* 사건처럼 청구인의 주거 존중권에 관한 것이지만, 이에 더해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문제 된 조치가 환경 보전을 통해 "타인의 권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다수와 다른 전통적 생활양식을 고수하는 소수집단에 속한다고 해서, 공동체 전체의 자산(예: 환경)을 보호하려 마련된 일반법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률상 금지임을 알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환경보호구역에 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보호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하였다. “재판소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의 환경적 권리 보호를 훼손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재판소는 각국이 도시계획 정책의 선택과 이행에서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고 평하면서 제 8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가족과 함께 살던 본인 소유지에 세운 이동식 주택 이전을 거부한 한 집시에게 제기된 형사소송에 관한 *Wells v. United Kingdom* (dec.),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주거 존중권의 측면에서 심리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문제 된 조치는 제 8 조에 열거된 정당한 목표인, 환경 보전을 통한 "타인의 권리" 보호를 추구하였다. 이어서 재판소는 특히 환경 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대중의 이해관계와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소수집단의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할 때 국가는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청구는 명백히 근거 없다고 선언하였다.

반대로, “양질의 경관과 다양한 특성을 갖춰 보호 대상 자격이 있는 자연 지역”의 일부라는 이유로 오래 정착했던 땅에서 퇴거된 유랑민족에 관한 *Winterstein and Others v. France*,

2013 사건 § 146 및 §§ 147-167 에서 재판소는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그러한 조치가 협약 제 8 조제 2 항에 따른 정당한 목표인 환경 보전을 통한 “타인의 권리” 보호를 추구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1 심 법원이 침해의 비례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서, 살 곳을 잃는 것은 주거 존중권을 대단히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국내 법원이 일부 청구인들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들이 취약한 소수집단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야에 불법으로 지은 주택 철거 명령에 관한 *Kaminskas v. Lithuania*, 2020 사건 §§ 48-66 에서 재판소는 환경 보전이 오늘날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는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철거 조치가 무질서를 방지하고 국가의 경제적 복리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임야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해당 주택은 불법으로 건축하였으므로, 법률상 금지 사항을 의식적으로 위반하여 환경보호구역에 주거를 마련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면, ‘공동체 내 다른 사람들의 환경적 권리’ 보호를 훼손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보호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제 9 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협약 제 9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예배, 선교, 행사, 의식을 통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2.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공질서, 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171. 재판소는 환경적 신념이 제 9 조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특히 *A.S.P.A.S. and Lasgrezas v. France*, 2011, § 55 및 *Chabauty v. France* [GC], 2012, §§ 41-47 판결에서와 같이, 사냥에 대한 윤리적 반대는 분명히 협약이 보호하는 신념이 될 수 있다).

172. 플랑드르·왈롱 지역에서 기절시키는 과정 없는 도살을 금지한 *Executief van de Moslims van België and Others v. Belgium*, 2024 사건 §§ 92-101 에서, 재판소는 동물 복지 보호가 제 9 조제 2 항이 의미하는 정당한 목적인 “공중 도덕”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협약 제 1 조가 오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와 자유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절대적 보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물 복지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점점 더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라고 인정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배척할 이유가 없으며, 동물 복지 고려는 종교를 외적으로 표현할 자유에 대한 제약을 심사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 10 조 표현의 자유

협약 제 10 조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권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허가 제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국가안보, 영토보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를 위해,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의 유지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형식과 조건에 따라야 하고, 제한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 환경운동 시위와 캠페인

173. 환경운동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시위로 문제되는 활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낳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 10 조의 목적상 의견의 표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뇌조 사냥이나 고속도로 확장 반대(*Steel and Others v. United Kingdom*, 1998, § 92), 여우 사냥 반대(*Hashman and Harrup v. United Kingdom* [GC], 1999, § 28), 도시 개발 사업 반대(*Peradze and Others v. Georgia*, 2022, § 41), 석유 시추·개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대중의 관심 환기(*Bryan and Others v. Russia*, 2023, § 85), 석탄 연소의 영향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 강조(*Friedrich and Others v. Poland*, 2024, § 248) 시위가 있다.

174. 환경운동 캠페인도 제 10 조의 목적상 의견의 표현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비정부기구인 그린피스의 반(反)포경 캠페인(*Drieman and Others v. Norway* (dec.), 2000)이 있다.

II. 환경 주제에 관한 의견 표현: 강화된 보호 대상

175. 자연과 환경 보호, 보건, 동물 존중과 관련된 주제는 일반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권에 따라 강화된 보호 대상이다.

사례:

- 체르노빌 참사 이후 프랑스 당국의 환경 및 공중보건 보호 정책(*Mamère v. France*, 2006, § 20)

- 동물 대우(동물보호협회가 제작한 산업적 동물 사육 관련 TV “광고” 방영 거부 사안으로, 재판소가 이 사건이 개인의 단순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일반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논쟁 참여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가 누리는 판단재량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VgT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2001, §§ 70–71; 또한 *Verein gegen Tierfabriken Schweiz (VgT) v. Switzerland (n° 2)* [GC], 2009, § 92 및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dec.), 2011; *PETA Deutschland v. Germany*, 2012, § 47;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United Kingdom* [GC], 2013, § 102; *Tierbefreier e.V. v. Germany*, 2014, §§ 51–52; *Guseva v. Bulgaria*, 2015, §§ 41 및 55 참조)
- 학대가 만연한 비도덕적 농축산과 고용 관행, 산림 벌채 및 건강하지 않은 식품 판매(*Steel and Morris v. United Kingdom*, 2005, § 88)
- 노르웨이 북부 물개 사냥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1999, §§ 63–64)
- 원자력발전소의 환경 영향(*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Czech Republic* (dec.), 2006)
-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Almeida Azevedo v. Portugal*, 2007, § 28) 및 도시 개발 사업(*Peradze and Others v. Georgia*, 2022, §§ 41 및 45)
- 1999년 8월 17일 대지진 상황에서 튀르키예 당국의 환경·공중보건 관리(*Artun and Güvener v. Turkey*, 2007, § 29)
- 수질(*Desjardin v. France*, 2007, § 46; *Šabanović v. Montenegro and Serbia*, 2011, § 44; *Tănăsoaica v. Romania*, 2012, §§ 43 및 48)
- 오염 외 각종 생활상 방해 노출(*Sapundzhiev v. Bulgaria*, 2018, § 40 및 45)
- 문화유산 건물 보존(*Margulev v. Russia*, 2019, §§ 37 및 47)
- 별장 확산에 대응하여 토지를 농업 및 임업에 사용하도록 보호(*Österreichische Vereinigung zur Erhaltung, Stärkung und Schaffung v. Austria*, 2013, §§ 35–36)
- 댐 건설에 따른 고대 유적지 수몰(*Cangı v. Turkey*, 2019, § 34)
- 수력발전소 건설(*Kılıçdaroğlu v. Turkey*, 2020, § 49)
- 다량의 고준위·장반감기 방사성 폐기물의 심층 지질저장에 따른 공중 보건·환경 위험(*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87)
- 금·은광 채굴 계획 (*Bumbeş v. Romania*, 2022, § 92).

176. 생태 사안에 헌신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 역시 정치나 사회운동에 따른 견해의 표현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권에 따라 강화된 보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생태 문제에 관하여 노력하는 선출직 대표의 발언(*Mamère v. France*, 2006, § 20) 또는 지방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의 선거운동 중 발언(*Desjardin v. France*, 2007, § 46)이 있다.

177. 강화된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 당사국의 판단재량 범위가 “특히 좁거나”(Mamère v. France, 2006, § 20), “좁아진다”(Artun and Güvener v. Turkey, 2007, § 29; 또한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United Kingdom* [GC], 2013, § 102 참조)는 의미이다.

178. 환경운동 표현 방식과 수단이 강요에 해당하면 강화된 보호 대상이 아니다(반(反)포경 캠페인 과정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바다에서 저지 행위를 한 *Drieman and Others v. Norway* (dec.), 2000 참조). -그러지만 *Bumbeş v. Romania*, 2022 사건 §§ 92-102에서 서술한 것처럼 비폭력적으로 저지하는 환경운동 행위는 보호 대상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외 1인은 정부의 광산 채굴 사업 승인에 항의하려 루마니아 정부 청사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장벽에 자신을 수감으로 결박하였고, 다른 시위자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3인 이상이 집단을 형성하여 공공질서와 평화 및 사회공존 규범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소는 특히 국내 법원이 청구인의 행위가 초래한 실제 소란의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행사 자체의 형식적 위법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였다고 보고, 제 11 조와 결합한 제 10 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179. *Bryan and Others v. Russia*, 2023 사건 §§ 96-97에서 재판소는 석유 시추·개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려 석유 시추 플랫폼에 승선하려던 그린피스 NGO 활동가들의 체포와 구금은 표현의 자유 제한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어서 재판소는, 체포와 구금이 협약 제 5 조제 1 항의 의미에서 불법이었다고 판단한 이상,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협약 제 10 조의 의미에서 “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제 10 조 위반이라고 결론지으면서, 그렇다면 문제 된 제한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민주사회에 필요했는지 협약 제 10 조의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석탄 연소의 환경적 영향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석탄 운반 화물선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체포·구금된 *Friedrich and Others v. Poland*, 2024 사건 § 255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III. 공공기관의 조치에 관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환경보호 단체의 특수한 역할 인정

180. 일반의 이익 논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비정부기구는 언론과 유사한 공적 감시자 역할을 한다. 이 임무를 하려면 일반 대중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평가를 제공하여 공공기관 활동의 개방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강화된 보호의 대상이 된다. 환경운동 비정부기구에도 적용된다(*Vides Aizsardzības Klubs v. Latvia*, 2004, § 42; 또한,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United Kingdom* [GC], 2013, § 103; *Cangi v. Turkey*, 2019, § 35; *Margulev v. Russia*, 2019, § 47 참조). 소규모 비공식 활동가 집단도 적용 대상이다(*Steel and Morris v. United Kingdom*, 2005, § 89).

IV. 환경 사안에 관한 정보 접근권

A.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한정된 조건부 인정

181. 산업시설 인근 주민들이 공중보건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Guerra and Others v. Italy*, 1998 사건 §§ 53-60 에서, 청구인들과 위원회는 환경이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지민의 안녕과 건강을 보호하는 본질적 수단이 되었으므로, 협약 제 10 조가 보장하는 정보 수령의 자유는 환경 위험 활동의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지도 모르는 현지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수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청구인과 위원회에 따르면, 제 10 조는 국가가 환경 문제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제공할 의무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중이 직접 알아낼 수 없는 정보를 수집·처리·전달할 적극적 의무도 부과하므로 제 10 조가 보장하는 보호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협약 위반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생명권이나 사생활·가족생활 존중권 같은 다른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기 전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재판소는 정보 수령의 자유란 “본질적으로 정부가 타인이 제공하고자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의 금지”라고 평하면서, 그러한 자유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수집·전달할 적극적 의무까지 협약당사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재판소는 이 문제를 제 8 조의 관점에서 심사하였다(상기 참조).

182. 이후 재판소는 제 10 조가 개인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국가가 그러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① 정보 공개가 법적

효력이 있는 사법 결정으로 명해진 경우 및 ② 특히 "정보를 받을 자유 및 전달할 자유"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정보 접근이 필수이며, 접근이 거부되면 해당 권리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경우, 그러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2016, § 156).

두 번째 상황에서, 정보 제공 거부가 제한에 해당하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려면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권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면 ① 정보 요청의 목적 ② 요청된 정보의 성격 ③ 청구인의 역할 ④ 요청된 정보의 가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ibid., §§ 157-170).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사건 § 85 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접근법이, 정보 접근을 거부해서 발생한 제한만이 아니라, 국내법상 정보 제공 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해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제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고 판결하였다.

183.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사건 §§ 79 및 107 에서 재판소는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요약하여 “협약 제 10 조는 당국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접근권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와 조건이라면 해당 권리와 당국의 정보 제공 의무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184. *Cangi v. Turkey*, 2019 사건 §§ 30-37 및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사건 §§ 78-90 및 107-117에서 알 수 있듯, 특히 환경 정보 접근권에 적용된다.

고대 유적지 알리아노이(Allianoi)를 수몰시킬 댐 건설 계획에 관한 *Cangi v. Turkey* 사건에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위원회 회의록의 서명본을 교부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은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문제 된 정보가 “댐으로 인한 역사 유적지의 수몰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해당하며, 대중이 알 권리를 가질 만한 문제”로, 공익적 사안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비정부조직 구성원이자 대표였고, 알리아노이 고대 유적지를 보호하고 관련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려 활동한 점에서 청구인이 “공적 감시자”로 활동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재판소는 청구인의 요청이 단순히 댐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결함을 보여줄 증거로 해당 문서를 제출하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중에게 알리고 해당 문서가 존재함을 보여주려는 목적에 기반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국내 당국이 청구인의 정보 수령 및 전달의 자유 행사를 방해한 것은 협약 제 10 조가 보장하는 권리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해당 제한이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 10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사건에서 고준위·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을 심지층 처분장에 보관하기 위한 산업 부지(“시제오” 부지) 계획에 반대하는 여러 환경 보전 단체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국가기관이 해당 사업의 환경·보건 위험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이 충족되었으므로 제 10 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문제 된 정보가 표현의 자유 행사에 진정으로 필요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청구인 단체들의 법정 목적 중 일부가 이 사업의 환경·보건 위험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었으므로 바로 그 위험과 관련된 문제 된 정보가 정보 전달의 자유 행사권에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정보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고준위·장수명 방사성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매립하려는 모든 계획에서 제기되는 위험에 관한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건강과 환경에 극도로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제가 공익적 사안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여러 비정부기구가 공익적 사안에 대중의 주의를 환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당국이 그러한 사안에 대한 공공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도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네 번째 기준인 문제 된 정보의 가용성과 관련해서는, 본 사건에서 당연히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재판소는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품질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구제조치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에 비추어 이 사건을 검토하였다(아래 참조).

185. 당국이 테멜린 원자력발전소 관련 일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환경 보전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Czech Republic* (dec.), 2006 사건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이 사건의 재판소 결정은 *Magyar Helsinki Bizottság* 사건에 선행함을 유념). 재판소는 청구인의 정보 수령 권리가 제한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재판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이 요구되는 고도의 복잡한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건설 세부 사항은 해당 시설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와 달리 공익 사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 10 조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절대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어서, 정보 제공 거부는 건설업자가 주장한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 및 계약상 의무의 침해 방지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으로, 협약 제 10 조제 2 항의 의미에서 타인의 권리, 공공의 안전 및 보건의 보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국가의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보 수령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추어 비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B. 정보 제공의 내용과 품질을 심사할 수 있는 구제조치 접근권

186. 재판소는, (정보 접근권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심지어 불충분하다면 정보 접근권은 실질을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정보 접근권은, 특히 그 권리가 국가의 법적 의무에서 비롯된 경우, 제공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존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품질을 심사할 수 있는 구제조치를, 당사자주의 절차 체계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 108).

187.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2021 사건 § 109에서 재판소는, 그러한 심사에 대한 접근권은 문제 된 정보가 주요한 환경상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에 관한 것일 때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핵이라는 유해 요인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면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단체들이 국내 법원에 협약 제 10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고, 항소심 판결의 논거에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제 10 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V.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유는 표현의 자유 행사 제한의 적법한 근거인 정당한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188. *Ehrmann and SCI VHI v. France* (dec.), 2011 사건에서, 한 예술가는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물 한 채를 변형하여 도시계획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적 건물의 2차 등재 목록에 오른 건물 외벽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무단으로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제한의 목적이 “무질서 방지”인 동시에 “타인의 권리 보호”라고 인정하였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제한의 목적이 주변 건물과 기타 작업을 점검하여 보호대상인 국가 문화유산 구조물 주변 환경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었으며, 이는 “국가 당국이 공동체 일반의 이익이 무엇인지 판단할 때 부여되는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국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특히 2005년 10월 27일 채택된 유럽평의회의 사회를 위한 문화유산의 가치에 관한 협약(파로협약)을 언급하면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그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목적은 인간 사회의 발전에 있다고 하였다.

189. *Tóké v. Romania*, 2021 사건 §§ 81 및 96에서, 한 유럽의회 의원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에 소수민족 깃발을 광고 목적으로 게재하면서 광고물 설치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임시 광고 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로 일종의 경고 처분(경미한 범칙 제재)을 받았다. 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법의 목적은 건축환경의 일관성·조화·안전·건전성을 확보하여, 자연·인공 자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경관을 보존하며, 건축물 품질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협약 제 10 조제 2 항에 열거된 정당한 목적인 타인의 권리 보호를 추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제 11 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협약 제 11 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의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 구성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면 합법적으로 제약을 가할 수 있다.”

I. 환경운동 시위

190.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 관한 판례 법리는 환경운동 시위에도 비교적 통상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예를 들어, 환경 보전 협회가 도시계획에 따른 신축공사에 항의하려 개최하려던 시위의 자의적 금지에 관한 [Makhmudov v. Russia](#), 2007, 매립지에 항의한 사람들의 체포, 행정벌 부과, 공공 행사 통보 승인 거부에 관한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및 도시개발사업 항의 시위자들의 체포와 행정벌 부과에 관한 [Peradze and Others v. Georgia](#), 2022 참조).

191. 그렇다고는 하여도 저지 행위를 하는 환경운동 시위나 행동에 관한 여러 사건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Drieman and Others v. Norway](#) (dec.), 2000. 이 사건에서는 반(反)포경 캠페인 과정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이 고래잡이 선박과 고래 사이에 고무보트를 조종하여 개입한 행위로 체포되고 벌금이 부과되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협약 제 11 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지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청구인들의 행위 방식은 포경선이 합법적 활동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들에 대한 조치는 정치적 발언이나 공익적

사안에 관한 토론 또는 이에 대한 평화적 의견 표명이 협약에 따라 누리는 것과 같은 수준의 특권적 보호를 누릴 수 없는 행위 유형과 관계가 있다고 평하였다. 오히려 국가는 그러한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을 평가할 때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고 결론 내리고, 제 11 조상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라고 선언하였다.

Chernega and Others v. Ukraine, 2019. 이 사건은 도시 공원에서 도로 건설과 특히 벌목에 반대하며 저지 행위로 시위를 벌인 개인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현장을 떠나라는 경찰의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 후 유죄판결을 받은 것, 한 명은 경찰이 강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 한 명은 현장에서 민간 경비원들의 물리적 폭행을 당한 것을 두고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체포와 유죄판결을 국가의 소극적 의무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경찰 명령 불복종으로 9 일의 징역형이 선고된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시위 참가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려면 특수한 정당화가 필요한데도 국내 법원이 과도한 형벌을 선고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 1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위험한데도 고의적으로 저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들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체포에 저항한 이유로 10 일의 징역형이 선고된 청구인에 대해서도, 저지하는 방식의 항의 행위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제 11 조와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어서 민간 경비원들이 폭력을 사용한 문제를 국가의 적극적 의무 관점에서 검토하고, 당국은 어떠한 합법적 시위라도 적정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내법상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제 11 조가 보호하는 집회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i) 경비원들의 무력 사용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 점 (ii) 민간 경비 인력과 경찰이 서로 무질서 방지 책임을 적정하게 분담하지 못해 폭력에 가담한 경비원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iii) 무력 사용 권한이 있는 자는 적정하게 식별되게 해야 하는 규칙을 이행하지 못한 점 (iv) 대처 상황을 예방하거나 실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개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피청구국이 시위의 평화성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정하였다.

II. 결사의 자유와 환경

192. 결사의 자유권에 관한 판례는 환경운동 단체에도 비교적 표준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환경 보전 협회의 해산에 관한 *Tebieti Mühafize Cemiyeti and Israfilov v. Azerbaijan*, 2009,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참여한 단체의 등록 거부에 관한 *Costel Popa*

v. Romania, 2016 및 청구인 비정부조직들과 소속 이사들 등에게 러시아 외국대리인법 (2012)을 적용한 *Ecodefence and Others v. Russia*, 2022 참조; 또한, 서커스 공연에서 동물 출연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활동가들이 체포·구금된 *Bogay and Others v. Ukraine*, 2025(제 10 조와 결합한 제 11 조)).

193. 그러나, 공동 사냥터로 묶어서 일반 사냥과 총기 사냥을 관리하는 체계 아래, 사법에 따른 사냥 협회에 사냥 반대 토지 소유자도 강제로 가입시키는 문제를 재판소가 검토한 이른바 “소극적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사건은 언급해볼 가치가 있다.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사건 §§ 103–117 에서, 정부는 문제가 된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권 제한이, 사냥 활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려 한 것이므로, 제 11 조제 2 항에서 의미하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이와 같이 원용된 “권리와 자유”가 협약 또는 그 의정서가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에 속한다면, 이를 보호하려는 국가는 협약상 다른 권리나 자유를 제약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그러한 영역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 간 균형을 잡을 때 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 사냥할 권리 또는 자유처럼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자유라고 가정하고) 그 자체는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 또는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때는 오로지 부인할 수 없는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야만 협약상 권리의 향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들이 윤리적 이유로 사냥에 반대하였다고 평하면서, “법률에 의해 어떤 사람이 신념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강제되고, 그 협회에 속하게 되어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도록 강요받아, 그 협회가 자신의 반대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상충하는 이해관계 간 공정한 균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추구된 목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Schneider v. Luxembourg*, 2007, §§ 75–83 및 *A.S.P.A.S. and Lasgrezas v. France*, 2011, §§ 55–57 참조). 재판소는 이후에도, 해당 당사자들이 윤리적 이유로 사냥에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결정적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다(*Baudinière and Vauzelle v. France* (dec.), 2007).

제 13 조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협약 제 13 조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194.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 법리는 환경운동 배경의 사건에도 비교적 통상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다음 사례 참조.

-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00, §§ 58–60
- *VgT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2001, §§ 82–83
-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2003, §§ 137–142
-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221–232
-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84–89 및 116–118 및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21–127 및 175–176
- *Kotov and Others v. Russia*, 2022, §§ 136 및 86–95

제 14 조 차별 금지

협약 제 14 조

“본 협약에서 명시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특히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국가 또는 사회계층, 소수민족과의 연계,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을 포함하여 어떠한 사유로 인한 차별 없이 보장된다.”

195. 차별 금지에 관한 판례 법리는 환경운동 배경의 사건에도 비교적 통상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다음 사례 참조.

-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89–95 및 120–121 및 *Chabauty v. France* [GC], 2012, §§ 41–57
- *Chapman v. United Kingdom* [GC], 2001, §§ 129–130
- *VgT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2001, §§ 87–89
- *Wells v. United Kingdom* (dec.), 2007

제 1 의정서 제 1 조 재산의 보호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재산을 평화적으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률 및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일반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률을 시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I. 환경적 사유에 따른 재산 존중권 제약

196.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적법하려면 법의 지배에 부합하고, 일반적 이익 또는 공익 차원에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사용된 수단과 달성하려는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성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공익의 요건과 당사자의 이해관계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유지되었는지 심사한다. 그 과정에서 재판소는, 이행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때 뿐만 아니라, 추구된 목적의 달성을 의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결과가, 공익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는지 판단할 때 국가에 넓은 판단재량을 부여할 것이다(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A. 환경 보전: 일반적 이익 또는 공익에 해당하는 사유

197. 환경, 자연, 산림, 연안선, 멸종위기종, 생물자원, 문화유산 및 공중보건의 보호는 '공익' 사안이다. 따라서 환경적 논거는 재산 존중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사례:

- 자갈 채취장 채굴 허가 취소(*Fredin v. Sweden (n° 1)*, 1991, § 48)
- 도시·건축허가 취소(*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lande*, 1991, § 57)
- 자연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수용(收用) 절차 장기화로 소유자들이 향후 재산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겪고 사용이 제한된 경우(*Matos e Silva, Lda., and Others v. Portugal*, 1996, § 88)
- 사냥 협회에 의무적 토지 출연 및 토지 소유주에게 소유지 내 사냥 허용을 강제하는 요건(*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79; *Schneider v. Luxembourg*, 2007, § 46; *A.S.P.A.S. and Lasgrezas v. France*, 2011, § 36; *Herrmann v. Germany* [GC], 2012, §§ 83-85)
- 소유지를 자연보전구역으로 재지정하여 “건축용지” 지위 박탈(*Bahia Nova S.A. v. Spain* (dec.), 2000)
- 구역 개발 허가령을 무효화하여 “건축용지” 지위 박탈(*Kapsalis and Nima-Kapsali v. Greece* (dec.), 2004)
- 도시·건축허가 없이 세운 건물 철거 명령(*Saliba v. Malta*, 2005, § 44; *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2016, § 71)

- 사유 건물을 역사적 기념물로 등재하여 인접 건물 개발 및 잔여 부지 위 건축 재약(*SCEA Ferme de Fresnoy v. France* (dec.), 2005)
-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고 도시 내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을 금지한 경우(*Galtieri v. Italy* (dec.), 2006)
- 토지가 “산림 단지”로 지정되어 특히 건축이 금지된 경우 *Ansay and Others v. Turkey* (dec.), 2006)
- 도시계획 규정을 위반한 건축 행위에 거액의 벌금 부과(*Valico S.r.l. v. Italy* (dec.), 2006)
- 전국 연안 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토지에 대한 건축 예외 허가 발급 거부 (*Saarenpään Loma ky v. Finland* (dec.), 2006)
-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건축용지”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Perinelli and Others v. Italy* (dec.), 2007; *Longobardi and Others v. Italy* (dec.), 2007)
- 도시·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산림지역에 무허가로 지었다는 이유로 주택 철거(*Hamer v. Belgium*, 2007, § 81)
- 여름 별장에 대한 도시·건축허가 취소 및 철거 명령(*Tumeliai v. Lithuania*, 2018, § 75)
-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 산란지인 작은 섬의 개발을 제한하고 이후 금지하는 결정(*Z.A.N.T.E. – Marathonisi A.E. v. Greece*, 2007, § 50)
- 전면보호구역에 있는 필지 개발을 제한하고 이후 금지하는 결정(*Anonymos Touristiki Etairia Xenodocheia Kritis v. Greece*, 2008, § 45)
- 이탄 채굴 허가 신청 거부(*Pindstrup Mosebrug A/S v. Denmark* (dec.), 2008)
- 토지가 국유림지에 속한다는 이유로 소유권등기 말소 후 보상 없이 국고 명의로 재등기(*Turgut and Others v. Turkey*, 2008, § 90; *Cin and Others v. Turkey*, 2009, § 29; *Temel Conta Sanayi Ve Ticaret A.Ş. v. Turkey*, 2009, § 42; *Kök and Others v. Turkey*, 2009, § 22; *Keçeli and Başpınar v. Turkey*, 2010, § 40)
- 토지를 "국유림지"로 지정하여 소유자의 경작, 수확 및 관련 거래 금지(*Köktepe v. Turkey*, 2008, § 87)
- 여우 사냥 금지(*Friend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9, §§ 56–57)

- 농지가 자연보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거부(*Tarim v. Turkey* (dec.), 2010)
- 1986년 1월 3일 제정된 연안 지역 개발·보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십 년 동안 거주해 온 국유 해안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청구인에게 허용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Depalle v. France* [GC], 2010, § 81)
- 토지 재조림 결정으로 “건축용지” 지위 박탈(*Lazaridi v. Greece*, 2006, § 34)
- 수족구 발병에 대응한 양의 예방적 살처분(*Chagnon and Fournier v. France*, 2010, § 50) 및 브루셀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소의 살처분(*S.A. Bio d’Ardennes v. Belgium*, 2019, §§ 50 및 57, 2019년 11월 12일)
- 포르크롤(Porquerolles) 섬 내 도시·건축허가 신청 거부(*Consorts Richet and Le Ber v. France*, 2010, § 116)
- 국유 해안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 말소(*Silahyürekli v. Turkey*, 2013, § 47)
- 양식장으로 사용한 베네치아 석호 구역에 관한 소유권등기 말소(*Valle Pierimpiè Società Agricola S.P.A. v. Italy*, 2014, § 67)
- 국립공원 주변 건축 금지(*Matczyński v. Poland*, 2015, §§ 101–102)
- 상업용 건물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예방조치로 해당 건물 사용을 제한한 경우(*Petar Matas v. Croatia*, 2016, § 35)
- 여러 필지의 “건축용지” 지위를 박탈하는 개발계획상 지역권(地役權) 설정에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 기각(*Malfatto and Mieille v. France*, 2016, § 63)
- 고철 회사 무단 운영에 벌금 부과 및 거액의 자금 몰수(*S.C. Fiercolect Impex S.R.L. v. Romania*, 2016, § 60)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부동산 개발 제약(*Kristiana Ltd. v. Lithuania*, 2018, § 104–105)
- 어족 자원 보호용 어업 제한(*Posti and Rahko v. Finland*, 2002, §§ 77) 및 홍합 종패 채취 일시 금지(*O’Sullivan McCarthy Mussel Development Ltd v. Ireland*, 2018, § 109)
- 불법 어업에 사용한 선박 몰수(*Yaşar v. Romania*, 2019, § 59)
- 산림 보존 목적으로 상업적 산림 이용 금지(*Sakskoburggotski and Chrobok v. Bulgaria*, 2021, § 260;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198. 공중 보건과 환경의 보호 역시 제 1 의정서 제 1 항 제 2 문에서 말하는 일반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다.

사례:

- 건축용지가 아닌 지하수 보호 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무효로 된 허가에 기초하여 지어진 주택 철거(*Yıldırım v. Turkey*, 2009, § 43)
- 문화유산 보호, 보호구역 및 국토계획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매각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지 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 말소(*Bogdel v. Lithuania*, 2013, §§ 60-61)
- 공산주의 체제 붕괴 이후 잘못 반환된 재산의 재산권을, 해당 토지는 국가에만 귀속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림에 속한다는 이유로 취소(*Beinarovič and Others v. Lithuania*, 2018, §§ 135-137)
- "산림 자원"을 구성하여 사유화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권등기 말소(*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73)
- 타인의 깨끗한 식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가 수자원 보호구역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필지 출입 및 사용 제한(*Bērziņš and Others v. Latvia*, 2021, § 87)

199. 자연 유해 요인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역시 마찬가지이다(*Aktürk and Others v. Türkiye*, 2023, §§ 70-73 및 76).

200.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맥락에서 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환경 보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정당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건축이 금지된 임야에 무허가로 지은 주택을 철거한 *Hamer v. Belgium*, 2007 사건 § 79 에서 재판소는, 협약 조항중 어느 것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환경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환경보호가 점점 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고, 환경을 방어한다는 것은 대중의, 그리고 그 결과 공공 당국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을 환기하는 사안이 되었다고 평하였다. 또한, 재정적 필요성과 심지어 소유권 같은 일부 기본권조차도, 특히 국가가 이와 관련한 입법을 한 경우에는, 환경 보호에 따른 고려사항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부연하였다. 이후, 특히 *Turgut and Others v. Turkey*, 2008 사건 § 90 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또한, 국유림지에 속하는 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등기를 말소한 후 보상하지 않고 국고 명의로 재등기한 *Köktepe v. Turkey*, 2008, § 87, *Temel Conta Sanayi Ve Ticaret A.Ş. v. Turkey*, 2009, § 42 및 *Bil İnşaat Taahhüt Ticaret Limited Şirketi v. Turkey*, 2013, § 29; 또한, 맥락이 다른 경우로 *S.C. Fiercolect Impex S.R.L. v. Romania*, 2016, § 65 참조). 재판소는 그러한

공익적 판단이 특히 자연과 산림 보호에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Nane and Others v. Turkey*, 2009, § 24). 나아가 재판소는, 공공당국은 적기에 실제로 개입하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규정이 전적으로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하였다(*Hamer v. Belgium*, 2007, § 79; *S.C. Fiercolect Impex S.R.L. v. Romania*, 2016, § 65). 자연보전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관광객용 식당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한 *Tarim v. Turkey* (dec.), 2010 사건에서, 재판소는 환경 보전이 “극히 중요”하다고 서술하였다.

B. 확장된 판단재량

201.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 국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행 수단을 선택하고, 수단과 목적 사이의 비례성을 평가할 때 폭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 재판소는 추구하는 일반의 이익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건이 특히 그러하다고 강조하였다(*Hamer v. Belgium*, 2007, § 78; *Depalle v. France* [GC], 2010, §§ 84 및 87; *Matczyński v. Poland*, 2015, §§ 105–106; *S.C. Fiercolect Impex S.R.L. v. Romania*, 2016, § 67; *Tumeliai v. Lithuania*, 2018, § 72).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재산존중권 제한이 공간계획 및 환경보호 정책과 관련된 경우 판단재량의 폭은 확장된다고 지적하였다(*Depalle v. France* [GC], 2010, §§ 84 및 87; *Malfatto and Mielle v. France*, 2016, § 64; *Barcza and Others v. Hungary*, 2016, § 46; *O’Sullivan McCarthy Mussel Development Ltd v. Irlande*, 2018, § 124); (*Bērziņš and Others v. Latvia*, 2021, § 90).

202.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2 문의 의미에서 재산 사용을 규제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환경 같은 분야에서는, 집행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와 해당 법률의 목적 달성을 의도하였다는 이유로 그 집행의 결과가 일반의 이익 차원에서 정당화되는지 확인하는 문제라면, 무엇을 일반의 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지 않는 한 존중한다고 밝혔다(*Pfacht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 101).

B. 재판소의 감독

203. 앞서 언급한 확장된 판단재량과는 별도로, 재산 존중권에 관한 판례 법리는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여 그러한 권리를 제약하는 조치에도 비교적 표준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참조).

204. 재판소는 피청구국의 행위에 기인한 제한이든 국가의 부작위에 기인한 제한이든 상관없이 그 조치가 합법성의 원칙, 추구된 정당한 목적 및 필요하다면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심사한다(*Associations of Communally-owned Forestry Proprietors Porceni Plesa and Piciorul Batran Banciu v. Romania*, 2023, § 73).

205. *Associations of Communally-owned Forestry Proprietors Porceni Plesa and Piciorul Batran Banciu v. Romania*, 2023 사건에서, 소유하던 산림이 유럽의 “나투라 2000(Natura 2000)” 자연보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여전히 관리하는 해야 했던 여러 산림 소유자 협회는, 국가가 이행입법을 제정하지 않아 법정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합법성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고, 이러한 부작위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206. 재판소는 비례성을 심사할 때 특히 국가의 판단재량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이 개별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져야 했는지, 그 결과 재산권 보호와 일반의 이익 요건 사이에서 유지되었어야 할 공정한 균형이 깨졌는지 확인한다(*Hamer v. Belgium*, 2007, § 78; *Turgut and Others v. Turkey*, 2008, § 91; *Köktepe v. Turkey*, 2008, §§ 91–92; *Consorts Richet and Le Ber v. France*, 2010, §§ 115 및 124; *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74 및 87; *Sakskoburggotski and Chrobok v. Bulgaria*, 2021, §§ 261–268; *Bērziņš and Others v. Latvia*, 2021, § 90).

따라서, 예컨대 재산을 박탈하면서 그 가치 대비 합리적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비례성을 상실한 제한에 해당하고, 보상이 전혀 없는 경우는 오로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 1 의정서 제 1 조상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는 그 수용(收用)의 목적이 환경보호인지 아닌지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Turgut and Others v. Turkey*, 2008, §§ 91–92; *Cin and Others v. Turkey*, 2009, § 30; *Temel Conta Sanayi Ve Ticaret A.Ş. v. Turkey*, 2009, § 43; *Kök and Others v. Turkey*, 2009, § 23; *Yıldırım v. Turkey*, 2009, § 44; *Ocak v. Turkey*, 2010, § 52; *Keçeli and Başpınar v. Turkey*, 2010, § 41; *Bölükbaş and Others v. Turkey*, 2010, § 35; *Silahyürekli v. Turkey*, 2013, § 48; *Valle Pierimpiè Società Agricola S.P.A. v. Italy*, 2014, § 71).

207. *Z.A.N.T.E. – Marathonisi A.E. v. Greece*, 2007 사건 § 54 의 판결은, 국가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재산권 제한 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당국이 그러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균형이 깨질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언급할 가치가

있다(또한 *G.I.E.M. S.R.L. and Others v. Italy* [GC], 2018 사건 §§ 295–299 에서 재판소의 고려사항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 회사는 관광 시설 건설 목적으로 작은 섬을 매입하였으나, 이후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의 산란지를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결정으로 건설 작업이 제한된 다음 아예 금지되었고, 해당 필지는 결국 자킨토스(Zakynthos) 국립공원에 포함되었다.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 회사의 재산에 매우 엄격한 운영상의 제약을 부과한 이유에 부합하지 않는, 작은 섬에 관광객이 매일 몰려들어 해변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화장실조치 설치되지 않은 상황은 목인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사용 규제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 사이에 요구되는 공정한 균형이 깨졌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 “... 국가가 실효적인 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유재산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부과하는 경우, 최소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을 묵과해서는 아니된다. 묵과한다면, 제한의 목적은 무위로 돌아가고, 당초 해당 당사자에게 부과된 부담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며, 이는 해당 제약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지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이 사건에서 국가는 바다거북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청구인의 재산 향유에는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여 준수하게 하면서, 동시에 해당 목적 달성을 위태롭게 하는 다른 활동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합리하다.”

II. 환경 피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

208.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원칙적으로는, 쾌적한 환경에서(*Ünver v. Turkey* (dec.), 2000; *Taşkin and Others v. Turkey* (dec.), 2004;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2009;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83;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 44;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84; *Pł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 44), 특정한 환경에서(*Cokarić and Others v. Croatia* (dec.) 2006; *Zapletal v. Czech Republic* (dec.), 2010) 또는 쾌적하고 변함 없는 전원 환경에서(*Moore v. United Kingdom* (dec.), 1999) 재산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209. 하지만 산업재해,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의미의 환경 피해는 재산 파괴, 훼손 또는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재산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 미이행에서 비롯되었든 아니면 당국에 귀속되는 제한에서 비롯되었든 상관없이, 국가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A. 직접적인 국가의 책임

210. 환경적 사고나 공법상의 기관·단체·공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환경 피해로 재산이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국가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재산 존중권에 관한 판례 법리는 재산 보호권 제한에도 비교적 표준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1. 재산의 파괴 또는 훼손 - 사례

211. *Dimitar Yordanov v. Bulgaria*, 2018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기업이 노천탄광을 운영하면서, 특히 폭발물 등으로 작업하여 탄광에서 160~180 미터 떨어진 자택이 훼손되어 떠나게 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재산 보호권 행사를 국가가 제한하였다고 하였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문에 따른 사건 심리에서 재판소는, 탄광이 국내법에서 정한 완충 구역에서 운영 중이었고, 주거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폭발물 사용은 국내법에 명백히 반한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해당 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 위반이라 판단하였다.

2. 가치 상실 - 사례

212. *Ouzounoglou v. Greece*, 2005 사건 §§ 28-32 및 *Athanasidou and Others v. Greece*, 2006 사건 §§ 23-26 에서는, 청구인들의 주거에 인접한 사유지 일부가 수용(收用)된 구역에 각각 도로(전자)와 철도(후자)가 건설되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기반시설이 조망을 훼손하고 소음 공해와 진동 공해를 겪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접성으로 인하여 잔여 토지의 가치가 하락했지만 수용 절차에서 관련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보상을 거부한 점이 서로 상충하는 개인의 권리와 공익 요건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깨뜨렸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농업에 종사하는 한 부부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收用)한 *Bistrović v. Croatia*, 2007 사건 §§ 42-45 에서 유사한 상황을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수용(收用) 절차에서 잔여 재산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특히 국내 당국은 청구인들의 재산을 수용(收用)한 대가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향후 고속도로가 청구인들의 집에서 불과 2~3 미터 거리를 지나가게 될 사실과 부동산이 농업 활동에 매우 적합할 수 있었던 조건인 과거의 쾌적한 환경(넓은 마당과 낮은 소음 공해)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또한, 국내 법원이 현장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한 전문가 보고서에

의거하였고, 청구인들의 집이 토지 도면에 잘못 표시되어 있어 법원이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청구인들의 수용(收用) 재산 보상액 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잔여 재산 가치 하락을 배상하지 않아서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

비교를 위하여, 재산 일부가 수용(收用)되어 그 구역에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재산 가치가 20~40% 하락하였지만 보상하지 않은 *Couturon v. France*, 2015 사건 §§ 38 및 43 을 참조한다. 재판소는 고속도로 인접성이 청구인의 재산에 미친 영향이 *Ouzounoglou* 사건 및 *Athanasiou* 사건(고속도로가 청구인의 토지에는 인접하였으나 주택에서는 250 미터 떨어짐)에서 문제된 사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개별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 것은 아니라고 추정하였다. 이에 더해 국내 절차를 고려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13. *Orfanos and Orfanou v. Greece* (dec.), 2006 사건(또한 *Calancea and Others v. Republic of Moldova* (dec.), 2018, § 36 참조)에서 재판소는 철도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부분 수용(收用) 후 지어진 주택이라면, *Ouzounoglou*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간주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수용(收用)된 토지에 추가 투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였을 뿐,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생활방식을 갑작스러운 수용(收用) 명령이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주택 가치 하락이나 일상생활의 방해에 국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이 자의적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추정하였다. 나아가, 국내 법원이 수용(收用) 보상금 외에 토지 가치 하락에 대한 특별 보상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청구를 명백히 근거 없는 것으로 선언하였다.

214. *Fotopoulou v. Greece*, 2004 사건 §§ 33-38 에서 청구인은 최종적이고 집행 가능한 철거 명령을 받은 당국이 청구인의 재산 옆에 이웃이 불법 건축한 담장 철거를 거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의 거부로 불법 담장이 존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담장이 청구인의 주택에서 보이는 바다 전망을 가로막고 마을의 전통적 특색을 훼손하여 청구인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문으로 규율되는 제한이 청구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것은 당국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당국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국내법상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15. 공항 같은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판소는, 재산 가치 하락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를 청구인들이 제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조항의 위반을 인정한 적은 없다(*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90; *Pflichta and Others v. Poland* (dec.), 2014).

216.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사건 § 83 및 *Vecbaštika and Others v. Latvia* (dec.), 2019 사건도 언급해 볼만하다. 전자의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기업이 소유했던 구리 광산의 광미침전지 복토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행하여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게 하고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재산에 영향이 있었거나 가치 하락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후자의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인근에 풍력 터빈 설치가 허가되어 소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전문적 활동(농촌 관광, 축산, 농업, 양봉 분야)이 붕괴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재산 가치 하락이나 직업 활동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명백히 근거 없는 것으로 선언하였다.

B. 재산 보호에 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불이행

217. 위대한 활동과 관련된 인위적 환경 재해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재산 존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사건 §§ 134-135 에서는 생활 쓰레기 매립장 폭발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다수가 사망하고 그 아래에 있던 판자촌 주택 11 채(청구인 주거 포함)가 매몰되었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보호하는 권리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행사는, 단순히 국가가 간섭하지 않을 의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당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조치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실효적 향유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218.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항 제 1 문에 규정된 일반 원칙(재산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의 관점에서 심리된다(*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 133;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72;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 213; *Hadzhiyska v. Bulgaria* (dec.), 2012); *Vladimirov v. Bulgaria* (dec.), 2018, § 34).

219.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규정된 적극적 의무는, 국가가 민간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이나 생활상 방해 통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제할 것을 요구한다(환경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규제에 예방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함, 아래 참조).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국가의 책임은 민간 산업을 규율하는 적절한 규정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 재판소는 *Zapletal v. Czech*

Republic (dec.), 2010 사건에서, 금속판 압축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 공해와 관련하여 이 점을 강조하였다.

220. 나아가, 환경 분야에서도 다른 맥락과 마찬가지로, 재산 존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의무에는 관련 절차적 보장을 갖춘 사법 절차를 제공하여 국내 법원이 재산 문제에 관한 분쟁을 실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Bistrović v. Croatia*, 2007, § 33; *Couturon v. France*, 2015, § 33). 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때 재판소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Petar Matas v. Croatia*, 2016, § 44). 재판소는 해당 재산 일부에 고속도로가 건설된 결과 재산 가치가 하락하였지만 보상이 제공되지 않은 *Couturon v. France*, 2015 사건 § 42-43 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였다. 재판소는, 보상 청구와 관련된 국내 절차에서 청구인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사법 심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위반이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1. 재산의 파괴 또는 훼손

a. 환경 재해로 인한 재산의 파괴 또는 훼손

i. 산업 유형의 환경 재해

221. 산업 유형의 환경 재해에 관한 *Öneriyildiz v. Turkey* [GC], 2004 사건 §§ 134-136 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공무원과 당국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에 따라 국가 당국은, 청구인의 주택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 제 2 조에서 부과하는 적극적 의무와 동일한 실질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위 참조).

저수지 범람을 막으려고 갑작스럽게 대규모 방류한 결과 주거 지역이 침수되어 청구인들의 주택이 훼손된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사건 § 216 에서 재판소는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였다.

ii. 예견 가능한 자연환경 재해

222. 재판소는 재산 피해가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좀 더 제한적으로 접근한다.

도시 지역이 토사에 매몰되고 주택이 훼손된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사건 §§ 174-175 에서, 재판소는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국가가 동일한 정도로 개입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상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인위적 위해 활동의 영역에서와 동일한 수준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재판소는 협약 제 2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와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는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생명권은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 2 조의 적극적 의무 범위에는 재해 구호 분야에서 당국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그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재산의 평화로운 향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보호할 의무는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장될 수는 없다. 따라서 당국은 생명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보다, 기상재해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할지 결정하는 경우에 더 넓은 판단재량을 누린다. 또한 독립적 조사와 사법적 대응에 관한 절차적 의무도, 생명 상실의 경우와 달리, 파괴된 재산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연재해로부터 사유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파괴된 재산의 전면적 시장가치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집중호우로 강이 범람하여 청구인의 주택이 침수된 *Hadzhiyska v. Bulgaria* (dec.), 2012 사건 §§ 15-16 에서 재판소는 위와 같은 구별을 확인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체약국이 모든 상황, 모든 상습 범람 지역 또는 기타 자연재해 발생 가능 지역에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우선순위와 자원 배분 측면에서 운용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라도 당국에 불가능하거나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사태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Vladimirov v. Bulgaria* (dec.), 2018 사건 § 35 에서, 재판소는 자연재해는 그 성격상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위적 성격의 위대한 활동과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였고, 전자(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후자(인위적 위해 활동) 영역에서 요구되는 수준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산사태 피해에 관한 *Atasagün v. Türkiye* (dec.), 2024 사건에서 재판소는, 자연재해 관련 예방 의무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실효적인 입법·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 현상의 돌발적이고 격렬한 성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강화 조치를 채택하는 데 있다고 부연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적절한 공간 계획과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 예방 조치에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b. 민간 활동에 기인한 환경 훼손으로 발생한 재산 파괴 또는 훼손

223. 민간 활동에 기인한 환경 훼손으로 발생한 재산 파괴 또는 훼손에 관한 판결이나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례 중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제한의 맥락에서 해당하는 예시는 상기 *Dimitar Yordanov v. Bulgaria*, 2018 참조.

2. 주변 환경 훼손으로 재산 가치 하락

224. 환경 문제나 심각한 생활상 방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쳐 사실상 재산이 일부 수용(收用)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낳거나(*Taşkin and Others v. Turkey* (dec.), 2004; *Cokarić and Others v. Croatia* (dec.), 2006;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2009; *Ivan Atanasov v. Bulgaria*, 2010, § 83; *Vecbaštika and Others v. Latvia* (dec.), 2019),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을 매각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Taşkin and Others v. Turkey* (dec.), 2004).

이 원칙은 예컨대 “상당한 소음 공해”(*Cokarić and Others v. Croatia* (dec.), 2006)에 적용될 수 있고, 그 원인이 공항인 경우가 대표적이다(*Ashworth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4).

225. 다만, 지금까지 재판소에 제기된 이러한 유형의 청구는, 청구인들이 재산 가치 하락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Ashworth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2004;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2009; *Zapletal v. Czech Republic* (dec.), 2010;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2011, §§ 45–46).

협약 제 34 조 개인의 청구사건

협약 제 34 조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협약 또는 그 의정서에 명시된 권리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비정부기구 또는 개인 집단의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이 권리의 실효적 행사를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지 않는다.”

I. 민중소송 / 피해자 지위

A. 일반 원칙

1. 직접피해자 - 환경보전단체의 청구인적격 사안

226. 환경사건에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협약 제 34 조의 의미에서 협약 위반의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2015, § 89 참조). 다시 말해, 제 34 조의 목적상 “피해자”란 문제 된 행위나 부작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1997, § 26).

재판소가 피해자 지위를 인정할 때 의거하는 기준으로는 무엇보다 문제 된 피해의 심각성의 최소기준, 그 지속 기간, 청구인과 피해 사이의 충분한 관련성(경우에 따라서 청구인과 문제 된 환경 피해 간 지리적 근접성 포함) 등이 있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472).

227. 다만, 제 34 조에 관한 일반 판례에 따르면, 환경 맥락에서 사망한 사람의 근친자라면 협약 제 2 조 위반의 (간접)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Brincat and Others v. Malta*, 2014, § 87).

228. 환경 침해로 인한 협약 제 8 조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피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체계에서, 재판소는 제 8 조 위반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는 단순한 일반적 환경 피해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족생활에 부정적 영향 여부라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80;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01;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91).

여러 명의 개인이 타란토 소재 제철소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에 문제를 제기한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사건 §§ 100-109 에서 재판소는, 이탈리아 각료회의가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지 않았고, 지정된 노출 구역의 범위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은 청구인들은 문제 된 상황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약 제 8 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조적으로, 한 지역은 그곳의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에 위험할 수 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한 사람들의 피해자 지위는 인정하였다. 또한 사건기록에는 제철소의 활동과 노출된 지자체 내 공중보건 상황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적하는 다수의 과학적 보고서와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하면서, 문제 된 오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청구인들의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지었다.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사건 §§ 80-81(또한,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92-94 참조)에서, 청구인들은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역 쓰레기 수거·처리·폐기 서비스의 부실 관리로 인해 발생한 오염과 생활상 방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캄파니아 전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였다. 다만, 청구인들이 거주하던 지방자치단체가 부실 관리한 결과로 수개월 동안 쓰레기가 거리에 쌓여 있었다고 평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환경 피해가 청구인들의 사적 안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하였다. 동일 지역에서 쓰레기를 사유지(일명 “불의 땅”)에 불법 투기·매립·소각하여 발생한 오염에 관한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사건 §§ 246-250 에서 재판소는 공식적으로 피해 지방자치단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협약 제 2 조 및 제 8 조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29.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결과로는, 환경보전단체를 포함한 법인은 자연인만이 느낄 수 있는 환경에 기인한 생활상 방해나 공해로부터 비롯된 협약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비정부기구 *그린피스*는, 등록 사무소가 제철소에서 발생한 오염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주거 존중권의 침해에 관한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간주되었다(*Asselbourg and Others v. Luxembourg* (dec.), 1999; *Aly Bernard et 47 autres personnes physiques ainsi que l’association Greenpeace-Luxembourg, v. Luxembourg* (dec.), 1999). 또한, 환경보호 NGO가 고속철도선 소음 공해를 이유로 제 8 조 위반의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위원회 결론에 관한 *Association des Résidents du Quartier Pont Royal, la commune de Lambersart and Others v. France* (dec.), 1992 사건, *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사건 및 건설이 끝나면 도시 하나와 여러 마을이 수몰될 수력발전소와 댐 계획에 반대하는 한 현지 NGO가 재판소에 청구한 *Yusufeli İlçesini Güzelleştirme Yaşatma Kültür Varlıklarını Koruma Derneği v. Turkey* (dec.), 2021 사건 §§ 38, 41 및 43 참조.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단체가 제 8 조(*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2009 또는 제 2 조(*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216) 위반을 주장하기 위하여 건강상의 고려사항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국이 오염 노출로 발생할 회원들의 건강상 위험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여러 조항의 위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ibid.*, §§ 217-218).

230. 또한 NGO는, 환경오염이나 생활상 방해로 회원에게 협약이 부여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도 없다(채석장의 운영으로 인한 생활상 방해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제기한 *Besseau and Others v. France* (dec.), 2006 사건 및 예정된 수력발전소와 댐 건설에 반대하여 활동한 현지 NGO에 관한 *Yusufeli İlçesini Güzelleştirme Yaşatma Kültür Varlıklarını Koruma Derneği v. Turkey* (dec.), 2021 사건 §§ 38 및 42 및 불법적인 쓰레기 투기·매립·소각으로 캄파니아 지역(일명 “불의 땅”)에서 발생한 오염에 노출된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들에 관한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사건 § 218 참조).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그린피스가, 자발적으로 산불 진화 활동에 참여한 여러 회원이 공격을 받은 사건에서, 그 공격의 동기가 단체 회원 자격이었거나 적어도 그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 3 조 단독 위반 또는 제 14 조와의 결합한 제 3 조 위반의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Kreyndlin and Others v. Russia*, 2023, §§ 46-47).

231. 반면,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내 절차의 당사자인 환경보전 NGO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 체계 안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협약 제 6 조 제 1 항 위반의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90), 해당 절차가 구성원의 이익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36; 또한 *Yusufeli İlçesini Güzelleştirme Yaşatma Kültür Varlıklarını Koruma Derneği v. Turkey* (dec.), 2021, § 43 참조; 국내 항소를 하였으나 청구인적격 결여를 이유로 심리부적격이라고 선언된 환경보호단체가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제 6 조제 1 항 위반의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재판소가 판결한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2018 사건 §§ 114-116 비교).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 §§ 593 및 623 판결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단체의 청구에 제 6 조 제 1 항이 적용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그 단체에 피해자 지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232. 동시에, 정관상 구성원 이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NGO가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NGO 구성원은 비록 스스로 당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체계 안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협약 제 6 조제 1 항 위반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재판소는, 구성원들의 댐 건설 사업 반대 활동 조정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NGO가 댐 건설 결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제기한 절차에서 이렇게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수몰될 예정이었던 마을 주민들이 비록 자기 이름으로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익 옹호를 위해 설립한 협회를 매개로 절차에 관여하였으므로, 해당 조항 위반의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소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 협약의 다른 여러 조항과 마찬가지로, 제 34 조의 '피해자'라는 용어도 현대 사회의 조건을 고려하여 진화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시민이 특히 복잡한 행정결정을 마주하게 되면, 협회 같은 집단적 기구에 의존하는 것이 본인의 특정한 이익을 실효적으로 방어하려 선택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이자 때로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더욱이, 회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협회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유럽 국가 대부분의 입법에서 인정된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본 사건에 등장한 것이다. 재판소는 '피해자' 개념을 해석할 때 이러한 사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 개념에 대한 다른, 과도하게 형식적인, 해석은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 보호를 무력한 허상으로 치환할 것이다"(*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38-39).

2. 잠재적 피해자: 환경 피해 위험 노출

233. 협약 제 34 조는 청구인들이 이론적으로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특히 환경 피해에서 비롯된 협약 위반 주장에 적용된다(*Caron and Others v. France* (dec.), 2010;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00).

234. 다만, 재판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잠재적 피해자" 개념을 인정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협약 위반의 발생 가능성에 관해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협약 제 34 조의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심리적격 기준 실무 안내서](#) §§ 30-31 참조).

재판소는 이 기준을 고철을 사용한 제철소 운영 허가에 관한 *Asselbourg and Others v. Luxembourg* (dec.), 1999 사건 및 *Aly Bernard et 47 autres personnes physiques ainsi que l'association Greenpeace-Luxembourg, v. Luxembourg* (dec.), 1999 사건에 적용하였다.

청구인들은 제철소 사업이 환경 피해를 초래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주거의 평화로운 향유권을 박탈하여 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고철 제강 과정에 내재한 오염 위험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협약 위반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청구인들은, 문제를 제기한 행동의 결과가 지나치게 간접적이지 않다는 조건 아래, 당국의 적절한 예방 조치가 부재하여 피해 발생 가능성이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개연성 있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단언할 수 있어야 했다. 재판소는, 룩셈부르크 당국이 부과한 운영 조건과 특히 대기오염물 배출에 관한 규범이 불충분하여 예방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할 정도였다는 점은 사건기록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터빈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고 진동·저주파음·그늘·그림자 깜빡임 등 각종 생활상 방해를 일으켜 건강과 복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의 재산이나 거주지가 위치한 지역에 국가가 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허용한 것은 협약 제 8 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Vecbaštika and Others v. Latvia* (dec.), 2019 사건 §§ 79-84에서, 비슷하게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우선 해당 사업이 연기되거나 심지어 포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둔니카(Dunika) 교구에 있는 청구인들의 재산이나 주거 인근에서 풍력 터빈이 가동될 경우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증명하려면, 단순히 풍력 터빈 가동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수준의 개연성을 갖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철도 노선 계획에 관한 *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2001 사건 및 초고압 송전선 계획에 관한 *Thibaut v. France* (dec.), 2022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기반시설이 초래할 오염·공해·건강상 위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예정 경로를 따라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B. 기후변화 맥락에서 적용되는 원칙

1. 개인

235.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피해에 관한 불만에서, 협약 제 34 조에 따른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려면 청구인은 문제 된 국가의 실패로 인해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증명해야 한다. 그 후 재판소가 청구인의 상황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정으로는 (a) 청구인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높은 강도로 노출된 상태로,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또는 그 위험)의 수준과 심각성이 중대해야 하고 (b)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결여되어 있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개별적 보호를 보장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487).

재판소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심각성의 기준선이 특히 높다고 명시하였다. 민중소송이 배제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그 기준선을 충족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평가하는 데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지배적인 현지 조건, 개인의 구체적 특성과 취약성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재판소의 평가에는 청구인이 제기하는 협약상 불만의 성격과 범위, 기후변화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현재/미래인지 및/또는 그 개연성, 청구인의 생활·건강·안녕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해로운 효과의 규모와 지속 기간, 위험성의 범위(국지적 또는 일반적), 청구인이 지닌 취약성의 성격 등도 포함된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488).

236.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에서, 회원을 대신하여 실효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실현하려 설립된 고령 여성 협회와 네 명의 회원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스위스 당국의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관하여 제 8 조 등에 따라 청구하였다. 또한, 제 6 조제 1 항에 의거하여,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개별 청구인들이 협약 제 8 조 위반이라고 제기된 사안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와 스위스 연방환경청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고령 여성으로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집단에 속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재판소는 다만,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개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미친 부정적 결과가 일정한 수준과 심각성에 도달하였음을 입증하고, 청구인 개인의 취약성으로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7. *Carême v. France* (dec.) [GC], 2024 사건에서, 프랑스 국참사원(Conseil d'État)의 판단에 따르면, 특히 홍수 위험이 큰 데다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된 연안 지방자치단체인 그랑드상트(Grande-Synthe)에 거주한 적 있는 한 개인이 프랑스가 취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협약 제 2 조 및 제 8 조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협약 제 34 조의 의미에서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앞으로 수년간 청구인의 거주지가 어디일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법원이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칠 기후변화 위험이 가설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더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임차하지 않았고,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유일한 관련성은 형제가 그곳에 거주한다는 사실뿐이었으므로, 그랑드상트와 실질적인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2. 단체: 피해자 지위 /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

238. 단체는 자연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공해로 발생한 협약 위반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위 § 225 참조)은 기후변화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재판소는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 § 796 에서,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는 단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나 공해 외 자연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의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239. 다만 같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특수한 고려사항은, 일정한 조건 아래 재판소에서 현재 또는 장차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개인들을 대표하여 단체가 당사자적격을 가질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판결하였다(이어서 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은 기후변화 영역에서만 유효하다고 확인하였다.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220-221 참조).

재판소는, 협약 제 34 조에 따라 체약국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으려는 단체가 지켜야 할 요건으로 (a) 해당 관할권 내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었거나, 그곳에서 활동할 적격을 보유할 것 (b) 정관상 목적에 따라 회원이나 해당 관할권 내 다른 영향을 받는 개인들의 인권 옹호에 헌신하는 목적을 추구함을 증명할 것(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해당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국한되거나 다른 것도 포함할 수 있음) (c) 협약이 보호하는 생명·건강·복지에 대한 기후변화의 특정한 위협이나 부정적 효과에 노출된 해당 관할권 내 회원이나 다른 개인들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과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단체 설립 목적, 비영리적 성격 여부, 해당 관할권 내에서 활동의 성격과 범위, 구성원과 대표성, 운영 원칙과 투명성,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서 이러한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사법 집행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기후변화 맥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가 보통 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관할권 내에서 단체가 그 구성원이나 그 외 영향을 받는 개인들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으려 할 때, 단체가 대리하는 개인들이 기후변화 맥락에서 개인으로서

피해자 지위 요건을 충족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496-502).

만약 위에서 말한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국내 법원에서의 당사자적격에 제한이 있다면, 재판소는 적절한 사법 집행의 이익 차원에서, 그 단체의 개별 구성원들이나 그 외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같은 국내 절차나 관련 절차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았는지 및 어느 정도 보장받았는지 고려할 수 있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503).

240.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사건 §§ 521-526 에서, 제 8 조 맥락에서 청구인 단체의 피해자 지위를 평가하고 위 기준을 적용하면서 재판소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단체는 회원을 대신해 실효적인 기후 보호를 촉진·실현하려 스위스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스위스에 거주하는 2,000 명 이상의 여성으로 평균 연령이 73 세인 회원을 두었고, 그 중 650 명은 75 세 이상이었으며, 정관은 단체가 스위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의 영향에 대처하는 다양한 활동에 전념한다고 규정하였고, 회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도 활동하는 단체였으며, 실효적인 기후 보호 보장을 목표로 삼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의 이익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루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하게 행동하였다. 재판소는 이어, 청구인 단체에 재판소에서의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사법 집행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 단체의 회원 기반과 대표성 및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그 단체가 피청구국 내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집단적 구제조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개별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에서 재판청구권이 없었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 단체가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정관상 목적에 따라 피청구국 내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위협에 맞서 회원과 그 외 영향을 받는 개인의 인권 옹호에 헌신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증명하였으며, 또한 협약이 보호하는 생명·건강·안녕·생활의 질이 기후변화로 발생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개인들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과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청구인 협회가 회원들을 대신하여 제기한 청구는 제 8 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므로, 그 결과 청구인 협회는 재판소에서 당사자적격이 있었고 청구에는 제 8 조가 적용되었다.

II. 피해자 지위 상실

241. 오염 또는 환경에 기인한 생활상 방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그에 노출된 사람들의 피해자 지위는 제거되지 않는다(*López Ostra v. Spain*, 1994, § 42;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2012, § 28).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이 오염 또는 환경에 기인한 생활상 방해에서 벗어나려 이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지위가 제거되지 않는다(*López Ostra v. Spain*, 1994, § 42;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7).

242. 개인이 피해자 지위를 상실하려면, 국내 당국이 위반을 인정하고 그 위반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구제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심리적격 안내서 §§ 36-39 참조). 청구인의 피해자 지위는 재판소에 청구하여 제기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국내에서 보상이 있었는지 및 국내 당국이 협약 위반을 명시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인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판소는 이 사실을 토사 붕괴 희생자의 친척이 협약 제 2 조, 제 6 조제 1 항 및 제 13 조 위반을 주장한 *Murillo-Saldias and Others v. Spain* (dec.), 2006 사건(또한, *Durdaj and Others v. Albania*, 2023, §§ 148-279 참조)에서 재확인하였다. 재판소는, 사고 책임이 당국에 있다고 국내 법원이 판결한 후 친척들의 사망에 대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배상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해당 위반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사망이 고의적 학대로 사망에 이른 사건과 같이 중대한 과실의 결과인 경우, 유족에게 배상하는 것만으로는 제 2 조의 실제적 측면 위반을 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실효적인 조사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조적으로, 무기 해체 시설에서 발생한 폭발로 여러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국이 모든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확인·처벌하는 적절한 조사를 수행한 *Durdaj and Others v. Albania*, 2023 사건 §§ 252-255 에서 재판소는, 적절하게 배상하였고 청구인의 가까운 친족들이 사망한 데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청구인들의 피해자 지위를 제거할 할 정도라고 판결하였다.

사례:

쓰레기 처리장 인근에 거주하던 한 사람이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오염 가스에 문제를 제기한 *López Ostra v. Spain*, 1994 사건 § 42(또한 *Yevgeniy Dmitriyev v. Russia*, 2020, § 37 참조)에서, 그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새 주택에 살게 되었고, 이후 가족이 구매한 집으로 이사하였으며, 해당 쓰레기 처리장은 폐쇄되었다. 재판소는, 주택 이전이나 시설 폐쇄로도 청구인과 가족이 수년간 불과 12 미터 떨어진 악취·소음·오염원 옆에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청구인이 여전히 피해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인이 시설 폐쇄 결정 이후 과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은 그간의 손해를 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Moe and Others v. Norway (dec.), 1999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주거에 인접한 쓰레기 처리장 가동으로 발생한 생활상 방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노르웨이 상급법원은 청구인들이 국내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이미 오염 수준이 법적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상급법원이 기본적으로 청구인들의 사생활 및 주거 존중권의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으나, 소송 절차를 통해 해당 시설의 가동이 조정되어 생활상 방해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상급법원이 판단한 대로, 국내 소송 제기 이후에는 공해 수준이 더 이상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그 판단에 반박하거나 협약 제 8 조와 양립할 수 없는 기준에 근거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오염 수준도 *López Ostra v. Spain*, 1994 사건에서 문제 된 것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소송 제기 시점과 공해를 법적 한도 내로 줄이는 시정조치가 시기적으로 가까웠음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협약 제 8 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받았으므로 협약 제 34 조의 목적상 더 이상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청구인이 특히 산업 재해 도중 재산이 파괴되어 문제를 제기한 *Öneriyıldız v. Turkey* [GC], 2004 사건 § 137 에서, 피청구국 정부는 청구인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손해 배상을 받았고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으로 지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문제 된 아파트가 판매된 유리한조건이 어느 정도는 본 사건에서 확인된 당국의 부작위 효과를 시정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보아, 정부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혜택이 부여되었다하더라도, 특히 매매계약서와 사건기록에 포함된 다른 관련 문서 어디에도 청구인의 평화적 재산 향유권 침해를 당국이 인정했다는 표시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의 “피해자” 지위를 제거할 수는 없다. 재판소는 또한 최종 판결이 있었지만 금전적 손해 배상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제철소 인근 거주민들이 오염에 노출되어 문제를 제기한 *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2006 사건 § 106 에서는 재판소 심리 시작 2 년 후 당국이 청구인 중 한 명을 제철소의 "위생보호구역" 밖에 있는 새 집에서 살게 하였다. 그런데도 재판소는, 새 집에 살게 한 것이 제철소 오염 노출 문제는 해결했을 수 있으나, 그 이전의 권리 침해는 시정하지 못하였고,

당국이 청구인의 협약상 권리 침해를 명시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청구인이 여전히 피해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방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지에서 긴급하게 대규모로 방류한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2012 사건 §§ 208-210 에서 청구인들은 재판 외 보상을 받았다. 다만, 재판소는 당국이 청구인들의 주택 피해와 관련하여 협약 제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위반을 인정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여전히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어 청구인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사망한 *M. Özel and Others v. Turkey*, 2015 사건 §§ 157-158 에서 재판소는, “제 2 조 절차적 요건의 성격과 건물 시공 책임자들의 형사 유죄 판결은 어떠한 형태의 배상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시공 책임자들의 유죄 판결만으로는 청구인의 피해자 지위를 제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 개인이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수도물을 마신 후 이질에 걸렸다는 이유로 제 8 조 위반을 주장한 *Otgon v. Republic of Moldova*, 2016 사건 §§ 16-20 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실질적으로 위반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국내 법원이 지급한 금액이 재판소가 몰도바와 관련하여 제 8 조 위반을 인정한 여러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한 최소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여전히 피해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

Durdaj and Others v. Albania, 2023 사건 §§ 248-279 에서는 2008 년 무기 해체 시설에서 발생한 폭발로 26 명이 사망하고 300 명이 상처를 입었다. 이 참사로 사망한 한 아동의 부모와 한 명의 생존 피해자는 행정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은 해당 청구인 아동의 사망과 생존 피해자가 직면했던 치명적인 위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에서 지급한 액수와 유사한 금액을 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조사도 적절했다고 언급한 재판소는 그 결과로 청구인들이 피해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였다.

Besseau v. France (dec.), 2023 사건 §§ 12-17 에서, 한 개인은 주거 인근 노천 미화강암 채석장의 가동으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에서 비롯된 공해에 대해 협약 제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 청구 이전 별개의 절차에서, 민사법원은 진동으로 주택구조에 균열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웃에서 비롯된 과도한 생활상 방해를 겪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금전적 손해 및 주거 향유권 상실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채석장 운영자에게 명령하였다. 대조적으로 그 외 생활상 방해 주장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소는, 본 절차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생활상 방해의 정도와 삶의

질이나 주거 향유 능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채석장 인근이라는 입지 때문에 자택의 시장가치가 하락했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논거가 일반적 성격에 그친 점과 협약 위반의 존재를 개별적으로 보여줄 증거가 부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사건의 사정에서, 일반 법원이 금전적 손해와 향유 상실을 초래한 과도한 생활상 방해를 인정한 것은 원용된 여러 조항의 위반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이 적절하고 충분한 구제를 표현한다고 판결하면서, 청구인이 협약 제 34 조의 목적상 피해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 35 조 심리적격의 기준

협약 제 35 조

- “1.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칙에 따라, 국내 구제절차 경로 후, 최종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만 해당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제 34 조에 따른 청구 사건 중 다음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 (a) 익명으로 제기된 경우
 - (b) 이미 재판소가 심리한 사안이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회부된 사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새로운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3. 재판소는 제 34 조에 따른 개인의 청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한다.
 - (a) 청구가 협약 또는 협약 의정서 규정과 양립하지 않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개인의 청구권을 남용한 경우
 - (b) 청구인이 중대한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로, 다만 협약 및 그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 존중을 위하여 본안 심리가 필요한 경우와, 국내 법원이 적법하게 심리하지 않은 사건은 이 근거로 각하할 수 없음
4. 재판소는 본 조에 따라 심리부적격이라고 판단한 모든 청구를 각하한다. 이러한 결정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내릴 수 있다.”

A. 국내 구제절차 경로

243. 특히 환경 사건에서 단체가 국내 절차를 제기한 경우, 재판소에 청구한 개인 청구인이 그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구제절차를 정식으로 경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국내 구제절차 경로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재판소에 제기하려는 협약상 권리 침해에 대한 불만이 먼저 국내 법원에 제기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따져야 한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현대 시민사회의 성격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여기서 단체는 특히 환경 보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역할의 일부는 법원 및 다른 국내 당국에서 회원들의 개인적 이익과 권리뿐만 아니라 공익적 대의도 옹호하는 것이다. 재판소는, 특히 환경 사안에서 개인은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와 마주할 수 있으며, 이때 단체와 같은 집단적 매개체야말로 개인이 실효적으로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하였다(*Thibaut v. France* (dec.), 2022, §§ 26-31).

244. 캄파니아 지역 쓰레기 관리 위기에 관한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사건 § 107 에서, 청구인들은 수년간 쓰레기 수거·처리·폐기 서비스 제공 부족과 매립지 기인 오염에 대하여 제 8 조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국내 구제절차(특히 배상적 구제조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부가 제기한 이의를 배척하면서, 그러한 구제조치는 해당 주민들에게 일정한 배상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공공 도로에서 폐기물을 제거하거나 매립지를 정확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단지 부분적인 구제에 불과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사유지(일명 “불의 땅”)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매립·소각하여 동일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에 관한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사건 § 273 에서 재판소는, 그 목적이 경제적 배상 제공인 구제조치는, 광범위한 오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이 오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완화하는 조치(오염 지역 정화, 폐기물 제거 등)를 장기간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협약 제 2 조와 제 8 조에 따른 불만에 대하여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B. 6 개월 청구기간 - 계속되는 오염 상황

245. 진행 중인 환경 오염은 “계속되는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 그 결과, 협약 제 35 조제 1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구제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협약에 따른 청구를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는 4 개월¹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상황이 종료된 날까지

¹ 2021년 8월 1일 제 15 의정서 발효에 따라, 청구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었다.

연기된다(*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 131-132;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 282-296). 따라서 협약상 문제 삼은 오염이 종료된 시점인 경우에만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된다.

C. 인적 관할 - 다른 회원국의 법이 규율하는 기업이 가담한 환경 피해

246. *Zeynep Ahunbay and Others v. Turkey, Austria and Germany* (dec.), 2016 사건에서, 튀르키예 일리수(Ilisu) 댐 건설 계획이 하산케이프(Hasankeyf) 고고학·문화 유적지를 수몰시킬 예정이어서 반대하던 청구인들은, 해당 기반시설로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문화유산 전체가 파괴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히 협약 제 8 조 및 제 10 조 위반을 근거로 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이 사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컨소시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문제 된 모든 조치는 튀르키예 당국이 수행하였고, 모든 사법 절차가 튀르키예 사법제도 하에서 진행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쟁점을 판단할 배타적 관할권도 튀르키예 사법당국에 있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체약국의 영토적 관할과 영토 외 관할에 관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상대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관할 심리부적격으로 각하하였다.

D. 물질 관할 - 구체적인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 부재

247. *Zeynep Ahunbay and Others v. Turkey* (dec.), 2019 사건 §§ 21-26 에서 재판소는, 관련 국제 문서와 국제법 기준의 공통분모를 고려할 때, 문화유산 접근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럽 및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소는, 이 권리가 통상적으로는 소수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원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보호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협약 규정으로부터 특정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보편적인 개인의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현재 유럽 내 합의는 물론이고 유럽평의회 회원국 사이에서 공통된 경향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본 청구사건이 협약 규정과 물질 관할상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E. 청구권의 남용

248. 홍보나 선전으로 동기가 부여된 청구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협약 제 35 조 제 3 항제 a 호에서 의미하는 청구권의 남용을 구성하지는 않는다(환경운동 맥락에서 제기된 청구의 예로는 *Friedrich and Others v. Poland*, 2024 참조).

F. 중대한 피해 부재 - 주장된 위반의 심각성 기준선과 문제 된 상황의 환경적·공중보건적 영향

249. 국가가 제철소의 유해 배출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사건 §§ 133-139 에서, 정부는 청구인들이 오염과 오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포괄적으로만 언급했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정부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주장하는 피해가 협약 제 35 조제 3 항제 b 호의 의미에서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주장된 위반이 심각성의 기준선에 도달하였는지 심사해야 하므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의 성격, 그 권리 행사 과정에서 주장된 위반이 미친 영향의 심각성, 청구인의 개인적 상황에 발생하는 위반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협약 제 8 조 단독 및 제 13 조와 결합한 제 8 조에 따라 제기된 청구의 성격과 제철소 오염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기록한 수많은 과학 보고서를 고려할 때, 중대한 피해 부재라는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정부의 이의를 배척하였다.

제 46 조 구속력 및 판결 집행

협약 제 46 조

- “1.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은 당사자가 되는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각료위원회에 송부되고, 각료위원회는 그 집행을 감독한다.
3. 각료위원회가 보기에 판결의 해석 문제가 최종 판결의 집행 감독을 저해한다면, 해당 사안을 재판소에 회부하여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회부 결정은 재적 위원 2/3 가 찬성해야 한다.

4. 각료위원회가 보기에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당사자인 사건의 최종 판결 준수를 거부하면, 해당 당사국에 공식 통지한 후 위원회 재적 2/3 인 과반수 투표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해당 당사국이 제 1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묻기 위해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5. 재판소는 제 1 항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각료위원회에 회부하여 어떤 수단을 취할지 심의하게 한다. 재판소가 제 1 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각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건 심사를 종결한다.”

250. 제철소에서 발생한 고농도 오염에 노출된 청구인들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협약 제 8 조 위반이라는 판단 등을 한 *Cordella and Others v. Italy* 2019 사건 §§ 179–182 에서, 재판소는 시범 판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재판소는 판결을 집행하려면 해당 제철소와 문제 된 환경오염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긴급 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14 년에 국내 당국이 승인하였으나 2023 년까지 시행이 연기된 환경 전략(환경과 주민의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와 행동을 열거한 것)은 가능한 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655–677 과 대조).

251.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2025 사건 §§ 487–503 에서 재판소는,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역에서 (주로 조직범죄 집단이) 최소 10 년에 걸쳐 사유지(일명 “불의 땅”)에 쓰레기를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를 하여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체계적 오염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가가 성실히 대응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2 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제 46 조에 따라, 이탈리아가 해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독립적인 감시 제도를 마련하며, 공공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이탈리아에 2 년의 기한을 부여하여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게 하고, 그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약 4,700 명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36 건의 계류 중인 청구 사건은 그 기간 동안 심리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 개인의 환경권을 언급한 판결

- *Tătar v. Romania*, 2009, § 107 및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10: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 *Băcilă v. Romania*, 2010 사건 § 71: “인간의 건강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환경을 향유할 권리”

- 예방 원칙을 언급한 판결과 결정
 - 제 6 조의 맥락: *Folkman and Others v. Czech Republic* (dec.), 2006
 - 제 8 조의 맥락: *Asselbourg and Others v. Luxembourg* (dec.), 1999; *Aly Bernard et 47 autres personnes physiques ainsi que l’association Greenpeace–Luxembourg, v. Luxembourg* (dec.), 1999;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Czech Republic* (dec.), 2006; *Tătar v. Romania*, 2009, § 120.

- 환경문제에서 정보접근성, 대중의 의사결정참여, 사법접근성에 관한 협약(오르후스 협약)을 논거에 참조한 판결과 결정
 -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2006
 - *Tătar v. Romania*, 2009, § 118
 - *Grimkovskaya v. Ukraine*, 2011, §§ 69 및 72
 - *Di Sarno and Others v. Italy*, 2012, § 107
 - *Locascia and Others v. Italy*, 2023, § 125
 -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2024, §§ 490–492, 501, 539, 609.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ies), 위원회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또는 둘 중 하나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 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 3 자가 작성한 100 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A—

- A.S.P.A.S. and Lasgrezas v. France*, no. 29953/08, 22 September 2011
Advisory opinion on the difference in treatment between landowners' associations "having a recognised existence on the date of the creation of an approved municipal hunters' association" and landowners' associations set up after that date [GC], request no. P16-2021-002, French Conseil d'État, 13 July 2022
- Aktürk and Others v. Türkiye*, no. 16757/21, 13 June 2023
Alatulkkila and Others v. Finland, no. 33538/96, 28 July 2005
Almeida Azevedo v. Portugal, no. 43924/02, 23 January 2007
Aly Bernard et 47 autres personnes physiques ainsi que l'association Greenpeace-Luxembourg, v. Luxembourg (dec.), no. 29197/95, 29 June 1999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United Kingdom [GC], no. 48876/08, ECHR 2013
Anonymos Touristiki Etairia Xenodocheia Kritis v. Greece, no. 35332/05, 21 February 2008
Ansay and Others v. Turkey (dec.), no. 49908/99, 2 March 2006
Apanasewicz v. Poland, no. 6854/07, 3 May 2011
Aparicio Benito v. Spain (dec.), no. 36150/03, 13 November 2006
Artun and Güvener v. Turkey, no 75510/01, 26 June 2007
Ashworth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no. 39561/98, 20 January 2004
Asselbourg and Others v. Luxembourg (dec.), no. 29121/95, ECHR 1999-VI
Association Burestop 55 and Others v. France, no. 56176/18 and 5 others, 1 July 2021
Associations of Communally-owned Forestry Proprietors Porceni Plesa and Piciorul Batran Banciu v. Romania, no. 46201/16, 28 November 2023

Association des Résidents du Quartier Pont Royal, la commune de Lambersart and Others v. France (dec.), no. 18523/91, 8 December 1992
Association Greenpeace France v. France (dec.), no. 55243/10, 13 December 2011
Atasagün v. Türkiye (dec.), no. 24621/21, 9 January 2024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no. 2531/02, 9 February 2006
Athanassoglou and Others v. Switzerland [GC], no. 27644/95, ECHR 2000-IV

—B—

Băcilă v. Romania, no. 19234/04, 30 March 2010
Bahia Nova S.A. v. Spain (dec.), no. 50924/99, 12 December 2000
Balmer-Schafroth and Others v. Switzerland, 26 August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Barcza and Others v. Hungary, no. 50811/10, 11 October 2016
Baudinière and Vauzelle v. France (dec.), nos. 25708/03 and 25719/03, 6 December 2007
Beinarovič and Others v. Lithuania, nos. 70520/10 and 2 others, 12 June 2018
Bērziņš and Others v. Latvia, no. 73105/12, 21 September 20210
Besseau and Others v. France (dec.), no. 58432/00, 7 February 2006
Besseau v. France (dec.), no. 22622/22, 14 December 2023
Bil İnşaat Taahhüt Ticaret Limited Şirketi v. Turkey, no. 29825/03, 1 October 2013
Bistrović v. Croatia, no. 25774/05, 31 May 2007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no. 21980/93, ECHR 1999-III
Bogay and Others v. Ukraine, no. 38283/18, 3 April 2025
Bogdel v. Lithuania, no. 41248/06, 26 November 2013
Bölükbaş and Others v. Turkey, no. 29799/02, 9 February 2010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15339/02 and 4 others, ECHR 2008
Botti v. Italy (dec.), no. 77360/01, 2 December 2004
Bor v. Hungary, no. 50474/08, 18 June 2013
Borysiewicz v. Poland, no. 71146/01, 1 July 2008
Brincat and Others v. Malta, nos. 60908/11 and 4 others, 24 July 2014
Bryan and Others v. Russia, no. 22515/14, 27 June 2023
Buckley v. United Kingdom, 25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Bumbeş v. Romania, no. 18079/15, 3 May 2022
Bursa Barosu Başkanlığı and Others v. Turkey, no. 25680/05, 19 June 2018
Brânduşe v. Romania, no. 6586/03, 7 April 2009
Büttner and Krebs v. Germany (dec), no. 27547/18, 4 June 2024

—C—

Calancea and Others v. Republic of Moldova (dec.), no. 23225/05, 6 February 2018
Cannavacciuolo and Others v. Italy, nos. 51567/14 and 3 others, 30 January 2025
Cangı v. Turkey, no. 24973/15, 29 January 2019
Cangı and Others v. Türkiye, no. 48173/18, 14 November 2023
Carême v. France (dec.) [GC], no 7189/21, 9 April 2024
Caron and Others v. France (dec.), no. 48629/08, 29 June 2010
Chabauty v. France [GC], no. 57412/08, 4 October 2012
Chagnon and Fournier v. France, nos. 44174/06 and 44190/06, 15 July 2010
Chapman v. United Kingdom [GC], no. 27238/95, ECHR 2001-I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nos. 25088/94 and 2 others, ECHR 1999-III
Chernega and Others v. Ukraine, no. 74768/10, 18 June 2019
Çiçek and Others v. Turkey (dec.), no. 44837/07, 4 February 2020
Cin and Others v. Turkey, no. 305/03, 10 November 2009
Çöçelli and Others v. Türkiye, no. 81415/12, 11 October 2022

Cokarić and Others v. Croatia (dec.) no. 33212/02, 19 January 2006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dec.), no. 75218/01, 28 March 2006
Collectif national d'information et d'opposition à l'usine Melox – Collectif Stop Melox and Mox v. France, no. 75218/01, 12 June 2007
Consorts Richet and Le Ber v. France, nos. 18990/07 and 23905/07, 18 November 2010
Cordella and Others v. Italy, nos. 54414/13 and 54264/15, 24 January 2019
Costel Popa v. Romania, no. 47558/10, 26 April 2016
Couturon v. France, no. 24756/10, 25 June 2015
Crash 2000 OOD and Others v. Bulgaria (dec.), no. 49893/07, 17 December 2013
Cuenca Zarzoso v. Spain, no. 23383/12, 16 January 2018

—D—

Deés v. Hungary, no. 2345/06, 9 November 2010
De Geouffre de la Pradelle v. France, 16 December 1992, Series A no. 253-B
Depalle v. France [GC], no. 34044/02, ECHR 2010
Desjardin v. France, no. 22567/03, 22 November 2007
De Mortemart v. France (dec.), no. 67386/13, 23 May 2017
Dimitar Yordanov v. Bulgaria, no. 3401/09, 6 September 2018
Dimopoulos v. Turkey, no. 37766/05, 2 April 2019
Di Sarno and Others v. Italy, no. 30765/08, 10 January 2012
Drieman and Others v. Norway (dec.), no. 33678/96, 4 May 2000
Duarte Aghostinho and Others v. Portugal and 32 Others (dec.) [GC], no. 39371/20, 9 April 2024
Dubetska and Others v. Ukraine, no. 30499/03, 10 February 2011
Durdaj and Others v. Albania, nos. 63543/09 and 3 others, 7 November 2023
Dzemyuk v. Ukraine, no. 42488/02, 4 September 2014

—E—

Ecodefence and Others v. Russia, nos. 9988/13 and 60 others, 14 June 2022
Efgan Çetin and Others v. Türkiye, no. 14684/18, 3 October 2023
Ehrmann and SCI VHI v. France (dec.), no. 2777/10, 7 June 2011
Ekholm v. Finland, no. 68050/01, 24 July 2007
Elefteriadis v. Romania, no. 38427/05, 25 January 2011
Erdal Muhammet Arslan and Others v. Türkiye, no. 42749/19, 21 November 2023
European Air Transport Leipzig GmbH v. Belgium, nos. 1269/13 and 4 others, 11 July 2023
Executief van de Moslims van België and Others v. Belgium, nos. 16760/22 and 10 others, 13 February 2024

—F—

Fadeyeva v. Russia (dec.), no. 55723/00, 16 October 2003
Fadeyeva v. Russia, no. 55723/00, ECHR 2005-IV
Fägerskiöld v. Sweden (dec.), no. 37664/04, 26 February 2008
Fieroiu and Others v. Romania (dec.), no. 65175/10, 23 May 2017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nos. 3675/04 and 23264/04, 13 December 2012
Florea v. Romania, no. 37186/03, 14 September 2010
Folkman and Others v. Czech Republic (dec.), no. 23673/03, 10 July 2006
Fotopoulou v. Greece, no. 66725/01, 18 November 2004
Frankowski and Others v. Poland (dec.), no. 25002/09, 20 September 2011
Fredin v. Sweden (n° 1), 18 February 1991, Series A no. 192
Friedrich and Others v. Poland, nos. 25344/20 and 17 others, 20 June 2024

Friend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nos. 16072/06 and 27809/08, 24 November 2009
Furlepa v. Poland (dec.), no. 62101/00, 18 March 2008

—G—

G.I.E.M. S.R.L. and Others v. Italy [GC], nos. 1828/06 and 2 others, 28 June 2018
Gaida v. Germany (dec.), no. 32015/02, 3 July 2007
Galev and Others v. Bulgaria (dec.), no. 18324/04, 29 September 2009
Galtieri v. Italy (dec.), no. 72864/01, 24 January 2006
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no. 2625/17, 16 March 2021
Geffre v. France (dec.), no. 51307/99, ECHR 2003-I
Genç and Demirgan v. Turkey, nos. 34327/06 and 45165/06, 10 October 2017
Giacomelli v. Italy, no. 59909/00, ECHR 2006-XI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no. 62543/00, ECHR 2004-III
Greenpeace E.V. and Others v. Germany (dec.), no. 18215/06, 12 May 2009
Grimkovskaya v. Ukraine, no. 38182/03, 21 July 2011
Gronuś v. Poland (dec.), no. 29695/96, 2 December 1999
Guerra and Others v. Italy,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Guseva v. Bulgaria, no. 6987/07, 17 February 2015

—H—

Hadzhiyska v. Bulgaria (dec.), no. 20701/09, 15 May 2012
Hamer v. Belgium, no. 21861/03, ECHR 2007-V
Hardy and Maile v. United Kingdom, no. 31965/07, 14 February 2012
Hashman and Harrup v. United Kingdom [GC], no. 25594/94, ECHR 1999-VIII
Hatton and Others v. United Kingdom [GC], no. 36022/97, ECHR 2003-VIII
Herrmann v. Germany [GC], no. 9300/07, 26 June 2012
Howald Moor and Others v. Switzerland, nos. 52067/10 and 41072/11, 11 March 2014

—I—

Iera Moni Profitou Iliou Thiras v. Greece, no. 32259/02, 22 December 2005
Istanbullu and Ayden v. Turkey (dec.), nos. 20793/07 and 29240/07, 29 September 2015
Ivan Atanasov v. Bulgaria, no. 12853/03, 2 December 2010
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no. 46577/15, 21 April 2016

—J—

Jugheli and Others v. Georgia, no. 38342/05, 13 July 2017

—K—

Kaminskas v. Lithuania, no. 44817/18, 4 August 2020
Kapsalis and autre v. Greece (dec.), no. 20937/03, 23 September 2004
Kapa and Others v. Poland, nos. 75031/13 and 3 Others, 14 October 2021
Karin Andersson and Others v. Sweden, no. 29878/09, 25 September 2014
Keçeli and Başpınar v. Turkey, no. 21426/03, 26 January 2010
Kılıçdaroğlu v. Turkey, no. 16558/18, 27 October 2020
Kök and Others v. Turkey, no. 20868/04, 24 November 2009
Köktepe v. Turkey, no. 35785/03, 22 July 2008
Kolyadenko and Others v. Russia, nos. 17423/05 and 5 others, 28 February 2012
Kožul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no. 38695/13, 22 October 2019
Kotov and Others v. Russia, nos. 6142/18 and 13 others, 11 October 2022
Kreynmlin and Others v. Russia, no. 33470/18, 31 January 2023

Kristiana Ltd. v. Lithuania, no. 36184/13, 6 February 2018
Kurşun v. Turkey, no. 22677/10, 30 October 2018
Kyrtatos v. Greece, no. 41666/98, ECHR 2003-VI
Kyrtatou and Kyrtatos v. Greece (dec.), no. 41666/98, 13 September 2001

—L—

L.C.B. v. United Kingdom (dec.), no. 23413/94, 9 June 1998
Lam and Others v. United Kingdom (dec.), no. 41671/98, 5 July 2001
Lambert and Others v. France [GC], no. 46043/14, ECHR 2015
Laterza and D’Errico v. Italy, no. 30336/22, 27 March 2025
Lazaridi v. Greece, no. 31282/04, 13 July 2006
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dec.), nos. 53157/99 and 3 others, 16 September 2004
Ledy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53157/99 and 3 others, 26 October 2006
Lemke v. Turkey, no. 17381/02, 5 June 2007
Leon and Agnieszka Kania v. Poland, no. 12605/03, 21 July 2009
L’Erablière A.S.B.L. v. Belgium, no. 49230/07, ECHR 2009
Locascia and Others v. Italy, no. 35648/10, 19 October 2023
Longobardi and Others v. Italy (dec.), no. 7670/03, 26 June 2007
López Ostra v. Spain,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3-C
Lorentzatou v. Greece (dec.), no. 2947/08, 25 February 2010
Luginbühl v. Switzerland (dec.), no. 42756/02, 17 January 2006

—M—

M. Özel and Others v. Turkey, nos. 14350/05 and 2 others, 17 November 2015
Maatschap Smits and Others v. Netherlands (dec.), nos. 39032/97 and 5 others, 3 May 2001
Magomedov and Others v. Russia, nos. 33636/09 and 9 others, 28 March 2017
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no. 18030/11, 8 November 2016
Makhmoudov v. Russia, no. 35082/04, 26 July 2007
Malfatto and Mieille v. France, nos. 40886/06 and 51946/07, 6 October 2016
Mamère v. France, no. 12697/03, ECHR 2006-XIII
Marchiş and Others v. Romania (dec.), no. 38197/03, 28 June 2011
Margulev v. Russia, no. 15449/09, 8 October 2019
Mastelica and Others v. Serbia (dec.), no. 14901/15, 17 November 2020
Matczyński v. Poland, no. 32794/07, 15 December 2015
Matos e Silva, Lda., and Others v. Portugal,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Martínez Martínez and Pino Manzano v. Spain, no. 61654/08, 3 July 2012
McGinley and Egan v. United Kingdom, 9 June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Mileva and Others v. Bulgaria, nos. 43449/02 and 21475/04, 25 November 2010
Moe and Others v. Norway (dec.), no. 30966/96, 14 December 1999
Moore v. United Kingdom (dec.), no. 40425/98, 15 June 1999
Moreno Gómez v. Spain, no. 4143/02, ECHR 2004-X
Mučibabić v. Serbia, no. 34661/07, 12 July 2016
Murillo-Saldias and Others v. Spain (dec.), no. 76973/01, 28 November 2006

—N—

Nane and Others v. Turkey, no. 41192/04, 24 November 2009

—O—

Ocak v. Turkey, no. 33675/04, 19 January 2010

Öçkan and Others v. Turkey, no. 46771/99, 28 March 2006
Orfanos and Orfanou v. Greece (dec.), no. 36188/03, 14 February 2006
Okyay and Others v. Turkey, no. 36220/97, ECHR 2005-VII
Oluić v. Croatia, no. 61260/08, 20 May 2010
Öneryıldız v. Turkey [GC], no. 48939/99, ECHR 2004-XII
Österreichische Vereinigung zur Erhaltung, Stärkung und Schaffung v. Austria, no. 39534/07, 28 November 2013
O’Sullivan McCarthy Mussel Development Ltd v. Ireland, no. 44460/16, 7 June 2018
Otgon v. Republic of Moldova, no. 22743/07, 25 October 2016
Ouzounoglou v. Greece, no. 32730/03, 24 November 2005

—P—

Pavalache v. Romania, no. 38746/03, 18 October 2011
Pavlov and Others v. Russia, no. 31612/09, 11 October 2022
Płachta and Others v. Poland (dec.), no. 25194/08, 25 November 2014
Plathey v. France, no. 48337/09, 10 November 2011
Peradze and Others v. Georgia, no. 5631/16, 15 December 2022
PETA Deutschland v. Germany, no. 43481/09, 8 November 2012
Petar Matas v. Croatia, no. 40581/12, 4 October 2016
Perinelli and Others v. Italy (dec.), no. 7718/03, 26 June 2007
Pindstrup Mosebrug A/S v. Denmark (dec.), no. 34943/06, 3 June 2008
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eland, 29 November 1991, Series A no. 222
Podelean v. Romania (dec.), no. 19295/12, 26 February 2019
Posti and Rahko v. Finland, no. 27824/95, ECHR 2002-VII
Powell and Rayner v.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90, Series A no. 172

—R—

Roche v. United Kingdom [GC], no. 32555/96, ECHR 2005-X
Ruano Morcuende v. Spain (dec.), no. 75287/01, 6 September 2005

—S—

S.A. Bio d’Ardennes v. Belgium, no. 44457/11, 12 November 2019
S.C. Fiercolect Impex S.R.L. v. Romania, no. 26429/07, 13 December 2016
Saarenpään Loma ky v. Finland (dec.), no. 54508/00, 9 May 2006
Šabanović v. Montenegro and Serbia, no. 5995/06, 31 May 2011
Sakskoburggotski and Chrobok v. Bulgaria, nos. 38948/10 and 8954/17, 7 September 2021
Saliba v. Malta, no. 4251/02, 8 November 2005
Sapundzhiev v. Bulgaria, no. 30460/08, 6 September 2018
SCEA Ferme de Fresnoy v. France (dec.), no. 61093/00, ECHR 2005-XIII
Schneider v. Luxembourg, no. 2113/04, 10 July 2007
Sciavilla v. Italy (dec.), no. 36735/97, 14 November 2000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Czech Republic (dec.), no. 19101/03, 10 July 2006
Silahyürekli v. Turkey, no. 16150/06, 26 November 2013
Smaltini v. Italy (dec.), no. 43961/09, 24 March 2015
Solyanik v. Russia, no. 47987/15, 10 May 2022
Steel and Others v. United Kingdom, 23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
Steel and Morris v. United Kingdom, no. 68416/01, ECHR 2005-II
Stichting Landgoed Steenbergen and Others v. Netherlands, no. 19732/17, 16 February 2021
Sylla and Nollomont v. Belgium, nos. 37768/13 and 36467/14, 16 May 2017

—T—

Tănăsoaica v. Romania, no. 3490/03, 19 June 2012
Tarim v. Turkey (dec.) no. 54948/07, 9 March 2010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no. 46117/99, ECHR 2004-X
Taşkın and Others v. Turkey (dec.), no. 46117/99, 29 January 2004
Tătar v. Romania, no. 67021/01, 27 January 2009
Tebieti Mühafize Cemiyeti and Israfilov v. Azerbaijan, no. 37083/03, ECHR 2009
Temel Conta Sanayi Ve Ticaret A.Ş. v. Turkey, no. 45651/04, 10 March 2009
Thibaut v. France (dec.), nos. 41892/19 and 41893/19, 14 June 2022
Tierbefreier e.V. v. Germany, no. 45192/09, 16 January 2014
TMMOB and Karakuş Candan v. Türkiye (dec.), no. 46514/15, 11 June 2024
Tőkés v. Romania, nos. 15976/16 and 50461/17, 27 April 2021
Tolić and Others v. Croatia (dec.), no. 13482/15, 4 June 2019
Tumeliai v. Lithuania, no. 25545/14, 9 January 2018
Turgut and Others v. Turkey, no. 1411/03, 8 July 2008

—U—

Udovičić v. Croatia, no. 27310/09, 24 April 2014
Ünver v. Turkey (dec.), no. 36209/97, 26 September 2000

—V—

Valico S.r.l. v. Italy (dec.), no. 70074/01, 21 March 2006
Valle Pierimpiè Società Agricola S.P.A. v. Italy, no. 46154/11, 23 September 2014
Vasilescu v. Belgium, no. 64682/12, 25 November 2014
Vecbaštika and Others v. Latvia (dec.), no. 52499/11, 19 November 2019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dec.), no. 48703/03, 20 September 2011
Verein gegen Tierfabriken Schweiz (VgT) v. Switzerland (n° 2) [GC], no. 32772/02, ECHR 2009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 and Others v. Switzerland [GC], no. 53600/20, 9 April 2024
VgT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no. 24699/94, ECHR 2001-VI
Vides Aizsardzības Klubs v. Latvia, no. 57829/00, 27 May 2004
Vladimirov v. Bulgaria (dec.), no. 58043/10, 25 September 2018

—W—

Wałkuska v. Poland (dec.), no. 6817/04, 29 April 2008
Ward v. United Kingdom (dec.), no. 31888/03, 9 November 2004
Wells v. United Kingdom (dec.) no. 63477/00, 16 January 2007
Winterstein and Others v. France, no. 27013/07, 17 October 2013

—Y—

Yaşar v. Romania, no. 64863/13, 26 November 2019
Yevgeniy Dmitriyev v. Russia, no. 17840/06, 1 December 2020
Yıldırım v. Turkey, no. 21482/03, 24 November 2009
Yusufeli İlçesini Güzelleştirme Yaşatma Kültür Varlıklarını Koruma Derneği v. Turkey (dec.), no. 37857/14, 7 December 2021

—Z—

Z.A.N.T.E. – Marathonisi A.E. v. Greece, no. 14216/03, 6 December 2007
Zammit Maempel v. Malta, no. 24202/10, 22 November 2011
Zander v. Sweden, 25 November 1993, Series A no. 279-B

[Zapletal v. Czech Republic](#) (dec.), no. 12720/06, 30 November 2010

[Zeynep Ahunbay and Others v. Turkey, Austria and Germany](#) (dec.), no. 6080/06, 21 June 2016

[Zeynep Ahunbay and Others v. Turkey](#) (dec.), no. 6080/06, 29 January 2019